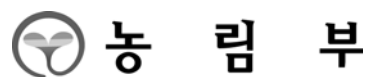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2007. 4.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위원회



목 차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3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5
1-1-3-0. 농작업 재해보상지원	7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9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11
1-2-1-1.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13
1-2-1-2. 농산어촌 공공기관 기반확충	15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18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20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22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24
1-2-3-3.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26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28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	30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지원	32
1-3-2-0.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36
1-3-3-1. 농어가 도우미 지원확대	38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	40
1-3-5-1.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42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44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46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48
1-4-2-3.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50
1-4-2-4. 농촌 건강장수마을 조성	52
1-4-3-0.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54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2-1-1-1. 농산어촌 우수고 육성	59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 · 내실화	61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63
2-1-2-1. 학교군 구성 · 운영	66
2-1-2-6.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68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70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 보급	72
2-1-3-3.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74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76
2-1-3-5. 도시문화 체험학습(방학캠프) 운영 지원	78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 · 증설	81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82
2-2-1-0.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	84

2-2-2-1.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용자지원	86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88
2-2-3-1. 초·중·고학생 급식비 지원	90
2-2-3-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	92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94
2-2-4-2.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96
2-3-1-1. 교육감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98
2-3-1-2.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100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102
2-3-2-2. 교원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104
2-3-3-2. 학교도서관 및 장서확충	105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108
2-3-6-0.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운영	110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3-1-1-0. 농촌 지역개발 전문인재 육성 및 저변확대	113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116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119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121
3-2-2-1. 소도읍 육성사업	123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125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128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131
3-3-2-1.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134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135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137
3-3-2-4. 소하천 정비사업	139
3-3-2-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142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144
3-3-3-2. 교통서비스 강화	146

3-3-3-3. 국고여객선 건조	148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150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152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154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6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건립	158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160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162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165
3-3-5-7. 산림박물관 건립	167
3-3-6-1. 정보화마을 조성	168
3-3-6-2. 초고속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170
3-3-6-3.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172
3-3-6-4. 디지털어촌 구축사업	174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176
3-3-7-2.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178
3-3-7-3.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	180

제4절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185
4-1-1-2.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187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189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191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193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195
4-2-1-3. 문화역사마을 조성	197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199
4-2-1-5. 어촌관광활성화 사업	202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205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208
4-2-2-1.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211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212
4-2-3-0.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214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216

4-3-1-0. 경관보전 직불제	218
4-3-2-2. 농촌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221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223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225
4-3-5-0.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기반 구축	227
4-3-6-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229
4-4-1-0. 1사1촌운동	231
4-4-2-0. 전원마을 조성사업	234
4-4-3-1.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확대	236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238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241

< 참고자료 >

-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제1절 농산어촌 복지기반 확충

1-1-1-0(계속)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의료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지역 거주 농어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계속
- 사업비 : 6,594억원('05~'09 1차 계획기간중), 국고 100%
- 사업규모 : 521천명 지원('06년)
- 시행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사업추진
- 추진내용
 - 농어촌거주 농어민을 대상으로 28%의 보험료를 경감지원
 - 경감율 : ('04) 8% → ('05) 18% → ('06 이후) 28% (총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향후 5개년 계획

(단위 : 천명, 억원, %)

연 도		'06	'07	'08	'09	'10	합계 ('06~'10)	비고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지원 대상	521	532	524	516	508	2,601	
	사업비 (국비)	1,340	1,272	1,352	1,437	1,623	7,024	
경감율 (%, 농림부 소관)		28	28	28	28	28	-	

○ 산출근거

연 도	산 출 근 거
2006년	521,060세대×19,363원×12월(28% 추가지원)
2007년	532,423세대×19,905원×12월(28% 추가지원)
2008년	524,020세대×21,497원×12월(28% 추가지원)
2009년	515,740세대×23,217원×12월(28% 추가지원)
2010년	507,591세대×25,080원×12월(28% 추가지원)

* 2006년은 실적치, 2007년 이후는 '07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계획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06년 경감율 목표달성도 :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358	1,340	99
	경감률	경감률	%	28	28	100

(보건복지부 / 연금정책팀)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농어가 소득의 감소 및 농어촌 고령화의 급격한 진행에 따른 연금 보험료 지원을 통한 고령 농어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하기 위함

○ 사업추진방향

-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 농어업인의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제2항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5 ~ 2014년

○ 사 업 비 (국비 100%)

- '06년도 예산 : 67,300백만원

○ 사업규모 : 농어민가입자 272천명 ('06년)

-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지역(당연적용·임의계속·특례)가입자

○ 시행방법

- 국고보조금 대상자 선정(지원대상농어민 본인보험료 납부시 1/2 지원) ⇒ 공단의 국고보조금 배정 요청 ⇒ 복지부가 공단에 배정
- 지원방법 : 농어민 개인별 지원

○ 사업추진내용

- 표준소득월액 13등급을 기준으로 동 등급 이하인 농어민에게는 연금보험료의 50%를 정률지원하며, 13등급을 초과한 농어민에 대해서는 13등급 연금보험료의 50%를 정액(21,600원)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어민연금가입자 지원기준 변경

- 농어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 위하여 2009년까지 지원기준 등급을 농어민가입자 중위수까지 점진적으로 향상

○ 향후 5개년 지원(안)

구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이후
예산액	60,540	67,300	69,300	76,800	81,900	
기준 등급	12등급	13등급	14등급	16등급	18등급	19등급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 '06년도(표준소득월액의 13등급), '10년도(표준소득월액의 19등급)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100% 달성) → “정상적 추진”

- 농어민 연금보험료 연차별 확대지원 방침에 의거 '06년도 지원기준인 “표준소득월액 13등급” 적용은 관계부처와 합의를 거쳐 정상적으로 적용되었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어업인 국민 연금보험제도개선	표준소득월액등급	지원된 표준소득월액등급기준	등급	13	13	100

1-1-3-0(계속)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농작업과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재해를 당하는 경우 신체나 농기계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업경영여건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6년 ~ 계속
- 사업비 : 1,379억원 ('05~'09 1차 계획기간중)
- 사업규모 : 75만건 지원 ('06년)
- 시행방법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해 사업추진
- 추진내용 : 농업인안전공제와 농기계공제로 구분
 - 농업인안전공제 :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15세~84세)의 농업 관련활동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상해 등 손해를 보상
 - 농기계종합공제 : 농기계 파손 및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
 - 세부목표 (농업인안전공제의 경우)
 - * 사망보장(공통) : ('06) 25 → ('07) 35 → ('09) 60백만원
 - * 가 입 율 : ('06) 37 → ('07) 51 → ('09) 66%
 - * 1인당 공제료 : ('06) 46,140 → ('07) 53,930 → ('09) 86,000원/년
 - 지원조건 : 국고 50%, 자부담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향후 5개년 계획

(단위 : 천명, 억원)

연도		'06	'07	'08	'09	'10	합계 (‘06~‘10)	비고
농업인 안전공제	지원 대상	653	818	907	972	1044	4,394	
	사업비 (국비)	165	221	286	358	449	1,479	
농기계공제	지원 대상	10	12.5	15.0	17.5	20.0	75.0	
	사업비 (국비)	6	6	7	9	11	39	
보장수준 (사망시 보장,백만원)		25	35	45	60	65	230	
사업비총계		171	227	293	367	460	1,518	

○ 산출근거

연 도	농업인안전공제	농기계종합공제
2006년	653천건×46,140원×1/2	10천건×92,400원×1/2
2007년	818천건×53,930원×1/2	12.5천건×97,000원×1/2
2008년	907천건×63,000원×1/2	15.0천건×101,800원×1/2
2009년	972천건×73,600원×1/2	17.5천건×106,800원×1/2
2010년	1044천건×86,000원×1/2	20.2천건×112,100원×1/2

* 2006년은 실적치, 2007년 이후는 '07 중기재정운용계획상 계획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사망보장(공통) 등 보상수준 : 100% 달성 (25백만원)

○ 가입율 : 80% 달성 (37%)

○ 공제료 지원 : 100% 달성 (23,070원/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작업 재해 보상지원	보상수준 재해공제가입률	(사망시)보상금액 (재해공제가입인원수/ 가입대상수)×100	백만원	25	25	90
			%	46	37	

1-1-4-0(계속)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	----------------------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과)

1. 사업목표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을 통하여 소득수준이 낮고 조업여건이 열악하여 어업이탈 현상이 심화되어가는 어선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지원
- 사업추진 근거 :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04.1.1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78년 ~ 계속
- 사업규모 : 연근해 어선원(137천명)에 대한 보험료의 일부를 어선 규모에 따라 국가에서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100톤미만의 연근해 어선원 및 어선
 - 지원조건 : 10톤미만 60%, 30톤미만 50%, 50톤미만 20%, 100톤미만 10% 보험료 지원(운영사업비는 부가보험료의 70% 보조)
- 시행방법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장하는 사회보장 성격의 비영리 정책보험으로 수협중앙회에 위탁·운영하고 회원조합이 업무를 대행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5결산	'06실적	'07계획	'08	'09	'10
가 입 률(%)	70	74	76	78	80	82
사업비(억원)	150	180	201	302	336	4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재해보상보험에 대한 홍보강화, 신속·공정한 보험금 지급체제 구축, 현지실태조사 결과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험가입률 목표를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당해연도말 보험가입 신고척수 / 전년도말 보험가입 대상척수)×100	%	74	76	103%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팀)

1. 사업목표

-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노령인구 증가 등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및 농어민 가구의 선정기준 특례 운영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강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1 ~ 12
- 사업비 : 별도예산 없음 (기초생활급여 예산으로 운영)
- 사업규모 : 전체수급자 중 농어민가구 특례수급자
- 시행방법 : 해당구구 신청 → 조사 → 결정 → 급여실시
- 추진내용 :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 ('06.7)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은 '실제소득이 부양의무자가구의 최저생계비의 120%→130%미만'으로 완화
 -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 산정시 농어민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 인정 ('04.6)
 -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를 1ha미만 소유자(임차한자 포함)가 지급받은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논농업소득보조금
 -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의 금액
 - 농어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의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이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
- 농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중 직접 생산되고 있는 농지의 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동산의 재산가액을 합한 금액 중 500만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로 차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 2006년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기준 완화('06.7), 농어민 가구 선정기준 특례 적용('06.1~12), 농어민 가구 선정기준 특례 적용현황 파악
- 2007~2010년 : 부양의무자 범위 축소('07.1), 농어민가구의 선정 기준 특례 확대 적용여부 검토

4. 성과목표 달성도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라는 성과목표치를 달성함

- '06.7월 완화된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기준이 차질없이 시행되었고, 농어민가구의 선정기준 특례는 변동사항 없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제도개선 사항	농어촌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 특례운영 등		-	-	계량불가

(보건복지부 / 의료자원팀)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의 응급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농어촌 주민의 응급의료 접근성 제고 및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보장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군지역 의료기관의 24시간 응급진료를 위한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시설·장비 인프라 구축비 지원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촌 응급의료전달체계 확립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지원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 시설·장비 개선 용자 지원
- 추진근거
 -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응급의료체계의 구축) :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대국민 응급의료제공 의무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지원) :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제1차 농어촌보건복지 기본계획('05~'09)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 사업규모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 응급의료 취약 27개 군지역 의료기관
 - 지원내용 : 응급실 시설·장비 및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 지원형태 : 자치단체 보조, 국고보조 100%

○ 사업비('06년) : 3,667백만원

- 지원기준 및 지원형태

지원내용	지원내역	금 액
응급 의료인력 인건비(경상보조)	67백만원×28개기관	1,890백만원
응급의료 시설·장비 보강비(자본보조)	63백만원×28개기관	1,777백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내용	2005	2006	2007	2008	2009
○ 농어촌 군 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47억원	45억원	58억원	64억원
-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군지역(40개군)		28개군	40개군	40개군	40개군
응급실 의사 인건비 지원		28개소	40개소	40개소	40개소
응급실 시설장비 지원		28개소	12개소		
- 농어촌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30개소	30개소	60개소	60개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응급의료 취약지 해소율 100%를 목표로 응급의료 취약 28개 군지역 중 28개 군지역 응급실 시설장비 개선 및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 지원하여 목표 대비(계획 28개소/지원 28개소)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산어촌지역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인프라확충 지원개소	개소	28	28	100

1-2-1-2(계속)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	-------------------------

(보건복지부 / 보건정책팀)

1. 사업목표

-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자 증가, 농가소득 정체 등의 농어촌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른 농어촌지역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사업을 통해 도서벽지 의료취약지역의 농어촌 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국민건강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근거 :
 - 지역보건법 제19조,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제3조 2항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2항
 -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15조

2. 사업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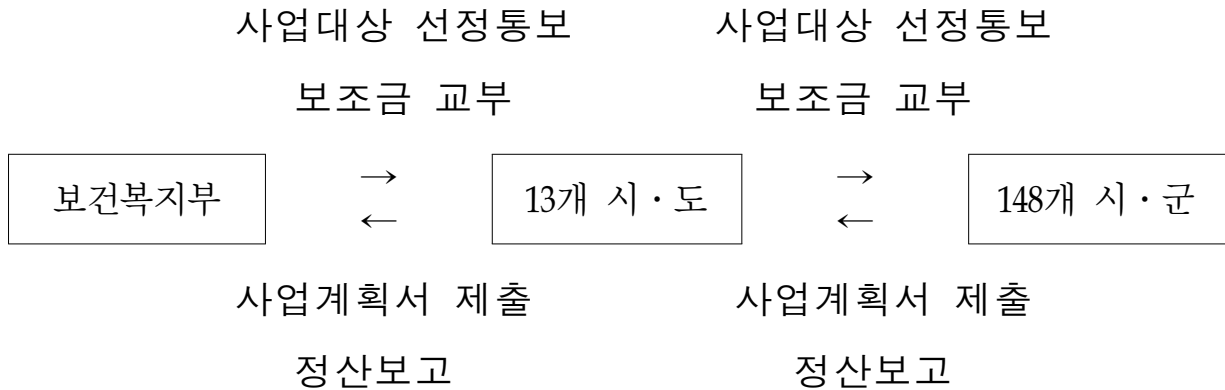
- 사업기간 : 1994 ~ 2014년 (국고 2/3, 지방비 1/3)
- 사업비 : 569억원
- 추진 현황

< 농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능개선 지원현황('94~'06) >

(단위 : 개소)

기관유형	대상기관수	시설개선	의료장비	방문보건세트	전산장비	방문보건차량	진료소 PC
합 계	3,327	1,103	497	734	153	166	137
보건소	144	138	134	93	144	146	-
보건지소	1,273	588	359	246	-	20	-
보건진료소	1,901	376	-	395	-	-	137
기타(시도)	9	1	4	-	9	-	-

- 사업추진주체 : 시·도, 시·군·구
- 사업절차 :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계획 제출
→ 중앙평가위원회에서 대상기관 선정(현지실사) →
농특자금 지원 → 각 지자체에서 기능보강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농어촌지역의 지역보건기관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시설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하여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도모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기관유형	'07	'08	'09	'10	'11	'12	'13
보건소(신·증축)	16	17	17	25	25	25	25
보건지소	100	135	135	140	140	140	140
보건진료소	125	100	100	100	100	100	100
의료장비(개소수)	83	203	203	115	115	115	115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억원)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금 액	621	695	695	710	710	710	71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기반확충						
○ 보건기관 신증축	시설개선율	시설개선율	%	35	40	114
○ 장비 개선	장비개선율	장비개선율	%	50	45	90
○ 차량 지원	지원차량수	총 지원차량수	개수	25	20	80

(보건복지부 / 공공의료팀)

1. 사업목표

-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거점공공병원의 노후시설·장비의 현대화와 기능개편을 통해 동 병원 경쟁력 확보 및 포괄적·지속적인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사업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계속사업
- 사업비 : '06년 319억원 ('05년까지 기 투자액 : 454억원)
- 사업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병상 확충, 리모델링 및 시설·장비 보강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시설·장비 보강
 - 지역거점병원 직원 혁신 및 서비스 교육 및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 의료서비스, 재정상태 등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평가
- 지원대상 : 지역거점병원 40개소 (지방의료원 34, 적십자병원 6)

○ 지원형태

구 분	지원형태	지원조건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자치단체 자본보조	기금:지방비=50:50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민간자본보조	기금 100%
- 혁신 및 서비스 교육 지원	민간경상보조	기금 100%
- 공공보건프로그램 사업비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기금 100%
- 운영평가	직접수행	기금 100%

○ 사업시행 주체 :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역거점병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내용

-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 '09년까지 5개 의료원의 이전·신축비 지원 포함한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적십자병원 기능보강 : 매년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
- 혁신 및 서비스 교육 지원 : 직원의 혁신 및 서비스 마인드 고취

○ '06~'1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05년까지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이후
454	319	238	230	230	226	-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 지방의료원 등의 이용자 및 직원 만족도 (60)

○ 실적 : 64.3 (목표달성비율 : 107.2)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이용자 및 직원 만족도	만족도	점수	60	64.3	107

1-2-2-0(계속)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 확충
--------------------	-----------------------------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과)

1. 사업목표

-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농작업 환경으로 인한 농업인의 농작업 피로 회복 및 건강 증진
- 농촌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
- 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 제42조1항(지역농업 균형발전 추진), 농림어업인의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에관한특별법 제14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6 ~ 2007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1,342개소 647억원 (국비·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96~'06) : 1,150개소 551억원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96~'02	2003	2004	2005	2006
사업량		1,150	604	140	140	108	158
사업비	계	551	278	70	70	54	79
	국 비	276	139	35	35	27	40
	지방비	275	139	35	35	27	39

* 개소당 사업비 : ('96~'97) 35백만원, ('98~'06) 50백만원, 국비·지방비 각 50%
 - 농작업 피로해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건강기구실, 찜질방 등) 설치

- 피로회복 및 건강관리 기구(벨트 마사지, 헬스자전거 등) 설치
- 농업인 건강관리 프로그램 확대운영 및 지역인프라 구축
 - 외부 체육지도자 등을 초빙 피로회복 마사지, 단전호흡 등 실시
 - 보건소, 한의원, 병원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무료 의료지원 확대
- 사업 지원 체계 구축 및 사후관리 강화
 - 건강관리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워크숍, 세미나 등 개최
 - 지방비 운영예산 확보 지원 : 275개소 평균 1,778천원 ('06. 9. 1. 현재)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7년까지 1,342개소 설치

- 2006년 현재 1,150개소 완료, 2007년도까지 국비사업은 설치후 종료하고 이후는 지방 자율적으로 사업 권장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예산
사업량		1,425	992	158	192
사업비	계	688	472	79	96
	국 비	345	236	40	48
	지방비	343	236	39	48

4. 성과목표 달성도

- 연간활용일수는 평균 260일로 성과목표치 250일을 100%이상 초과 달성함
- 만족도는 매우 좋아짐이 55%로 성과목표치 50%를 100% 초과 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연간 활용일수	총 활용일수	일	250	260	104

1-2-3-1(신규)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	--------------------------

(농촌진흥청 / 농업인복지과)

1. 사업목표

- 농업활동 건강유해요인 증가에 따라 농부중 등 농업인 직업성 질환 발생이 증가하므로 장기 추적연구를 통하여 그 원인을 구명하고 적합한 예방관리 기술 개발 지원
- 향후 농업인 안전공제 등 농업인 재해보상보험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직업성 질환, 사고에 대한 재해통계 및 재해판정 기준 등을 마련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 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1 ~ 2006. 12
- 사 업 비 : 4억 (국비 100%)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업인 건강 장기(長期)평가를 위한 연구마을 조성(9개소) 및 농작업 보조장비 개발 등 5개 과제
- 사업 시행방법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 (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 편성 →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추진내용

- 농업인 건강·안전 장기추적연구를 위한 코호트 구축 ('06~'09)
-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재해 진단기준 개발 ('06~'09)
- 유해 작업환경 평가 및 농작업 안전기준 확립 ('06~'09)
- 인간공학적 작업시스템 및 보조도구 개발 지원 60종 (~'09)
 - ※ 의학(산업의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환경보건, 산업공학 등 관련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공동연구 수행 중
 - ※ 농작업안전보건 중장기 연구계획 수립 및 연구사업단 구성 중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6	'07	'08	'09	'10 ~
사업량(과제수)	75	5	5	10	15	40
사업비(억원)	118	4	4	20	20	70

※ '06~'07 : 연구과제비만 일반회계로 지원했으나 '08년 이후에는 코호트 운영(10천명)을 위한 농특세 편성 필요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작업재해 경감방안 개발 건수 : 5건
 - '06 영농활용 제안이 총 8건으로 당해연도 목표달성 가능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작업재해 원인구명 및 농작업 환경개선	농부증저감방안건	결과활용심의회 채택건수	건	5	8	160

1-2-3-2(신규)	농작업재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

(농촌진흥청 / 농업인복지과)

1. 사업목표

- 농업인 업무상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므로 예방·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개인의료비 및 손해를 최소화함
 - 산업재해로 인한 직·간접적 손실액 : 근로자 1,000만명, 약 10조
 - 농작업재해로 인한 손실액 추정 : 농업취업인구 200만명, 약 2조
- 농작업재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재해통계 마련 및 농업인 재해예방 및 보상 정책·제도 마련 등에 기여함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4조, 1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1 ~ 2006. 12
- 사업비 : 3억 (국비 100%)
- 사업지원대상 : 관련 연구과제 추진을 위한 해당 연구부서
- 사업규모 :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구축·운영 등 4개 과제
- 사업 시행방법
 - 분야별 사전연구협의회(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 과제계획 심의(해당 과, 외부전문가) → 연구과제 계획보고회(기관장) → 예산편성 → 중간 진도관리 및 현장평가(해당 과) → 연구과제 평가 및 보고회(기관장) → 결과활용심의회(연구개발국)

- 추진내용 · T/F 팀 : 농기계, 농약, 농작업 건강 연구 · 지도 부서로 구성
 - 자문단 : 의학(산업의학, 예방의학, 재활의학), 산업공학 등
- 농작업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정책 지원 연구
 - 농작업 안전모델 농가 인증, 전문 조직화 방안 등
- 인터넷을 통한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및 원격 상담코너 구축
 - 건강 · 안전부문 전문가 원격 상담 실시 ('07~'09)
 - 농작업사고 감시체계 구축 · 운영 : ('06) 9개소 → ('09) 165개소
- 농작업 안전교육 프로그램 및 안전관리자 육성 체계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6	'07	'08	'09	'10 ~
사업량(과제수)	75	4	3	5 27개소 (중앙·지역센터)	15 50	40 165개소
사업비(억원)	118	3	2	31	40	100

※ '06~'07 : 일반회계 예산으로는 '07년까지 감시체계 및 전문가 상담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지만, '08년 이후에는 농특세를 활용하여 중앙안전보건 센터 및 지역 감시체계 운영, 전문가 상담코너 운영 등의 사업확대 및 실용화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농작업 재해예방건	결과활용심의회 채택건수	건	4	8	200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과)

1. 사업목표

- 작목 및 마을별 특성에 따른 농작업 및 건강상의 문제점 진단을 바탕으로 개선활동을 실행하여 농업인의 농작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향상하고자 함
- 마을단위 농작업 안전관리의 모델을 정립하여 확산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함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12조(농림어업인등의 복지증진), 14조(농림어업인 질환의 예방, 치료 등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14 (9년간)
- 사업량 및 사업비 : 330마을, 660억원 (국비·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민간자본(경상)보조 (보조율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6) : 9마을 10.8억원 (국비·지방비 각 50%)
 - 사업대상 마을 : 시설원예, 노지채소, 과수, 축산 등 주산단지 마을 (리)로서 농작업 여건, 사업참여도, 사업기반 등의 조건이 충족되는 마을

- 종합 지원할 전문가로 구성된 농작업 안전사업 추진단 구성 운영
- 농작업 안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찬회, 워크숍, 현장교육 등 개최
- 농작업 환경 개선, 농작업보호장구 보급, 농기계 안전 장치 보완, 근골격계 질환 관리 프로그램 운영, 농약 및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등 개선방안 실행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총 330개 마을 대상 (3년 지원/1마을)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계	2006	2007	2008	2009	2010이후
사업량	1년차	330	9	8	40	40	233
	2, 3년차	660	-	9	17	48	586
사업비		660	10.8	13.2	54.8	67.2	514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작업 안전에 대한 농업인인식 증가율 20% 이상 : 사업초반에 농작업 안전 관련 지식 15개 문항에 대한 인지도를 평가하고 그 이후 교육, 워크숍, 회의 등을 통해 인지도 향상 기회를 제공한 후 재평가 하여 향상된 정도를 평가한 결과 20%가 향상되어 목표를 달성함
-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대책 실천 증가율 20% 이상 : 초반에 농약 안전보관, 농약방제보호구 착용 등 실천율을 조사하였고, 개선과제를 실행한 후 46%가 향상되어 목표를 초과달성함.
- '06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안전영농구역 조정 지원사업	인식 증가율	설문조사	%	20	20	100

1-3-1-1(계속)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	---------------------

(여성가족부 / 보육지원팀)

1. 사업목표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육여건 개선
 - 농산어촌 지역 보육시설 확충을 통해 농림어업인에 대해 저렴하고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 ~ '10년 (총5년)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국고 50%
- 사업시행주체 :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에 보육시설 확충 (27개소)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06년 ~ '10년 (총5년)
- 재원형태 : 국비 50%, 지방비 50%
- 추진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10계획
보육시설 확충	27	37	50	50	50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산어촌지역 보육시설 신축시설 수 목표 : 27개소

○ '06년도 보육시설 확충 수 : 45개소 (달성율 : 167%)

- 국공립시설 신축 42개소,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신축 3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신축시설수	총 신축시설수	개소	27	45	167

(여성가족부 / 보육재정팀)

1. 사업목표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규정의 의거 취학전 만5세아에 대한 균등한 보육기회 제공을 통해 아동의 학업준비를 돕고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경감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대상을 연차적으로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내용 : 초등학교 취학전 만5세아동에게 1년간 무상보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소득층부터 무상지원 확대
- 지원대상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이 100% 수준 (도시지역은 90%)이하인 가구(농어촌지역 우선 확대)
 - 월평균 소득인정액이 4인가구 기준 353만원 (도시지역은 318만원) 이하인 가구
- 지원단가 : 158천원
- 지원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5조
- 추진형태 : 지자체 보조
- 사업추진절차 : 여성가족부→시도→시군구→보육시설 (아동)
- 사 업 비 및 지원인원 : 3억원 (보조율 50%), 34,029명

3. 연차별 추진계획

- '06년부터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수준 이하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353만원)까지 농어촌 지역 지원 우선 확대
- 정부지원단가의 지속적 인상
 - '05년 158천원 → '06년 158천원 → '07년 162천원 → '08년 167천원 → '09년 172천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말 집행실적 추정은 36,037명으로 당초 설정한 목표치 34,029명보다 5.9% 초과 달성
- ※ '06년도 집행실적 보고기한은 지침상 2월말까지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만 5세아 무상보육지원	지원 아동수	총 지원아동수	명	34,029	36,037	106

(농림부 / 여성정책과)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농림어업인의 영유아 보육비 지원) 및 제22조(농산어촌 유치원 유아 교육·보호)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1조(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농어촌의 과소화·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어업인의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생산성 제고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어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 지역사회 활력유지

2. 사업내용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비('06) : 444억원 (국비 222, 지방비 222)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 영유아(0~5세)중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
 ※ 타부처(여성부, 교육부)의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은 제외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33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

- 보육료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이용 아동
 - 월지급액 : 0세 175천원, 1세 154, 2세 127, 3~4세 79, 5세 158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50% 수준 (5세아는 100%)
- 교육비 :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취원아
 - 월지급액 : (국공립) 3-4세 28천원, 5세 56 (사립) 3-4세 79, 5세 158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비('06) : 192억원 (국비 96, 지방비 96)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 거주, 농지소유면적 5.0ha미만 농어가의 농어업인으로서 영유아(0~5세) 자녀가 보육시설 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규모 : 농어업인의 만 0-5세 자녀 28천명/월
- 지원형태 : 자치단체 경상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지원금액
 - 월지급액 : 0세 87.5천원, 1세 77.0, 2세 63.5, 3~4세 39.5, 5세 79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법정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연령별 보육료의 25% 수준 (5세아는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대상 확대 : ('07) 5ha 미만 → ('08이후) 전농가

- 지원단가 인상 : ('07)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 ('08이후) 75%이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사업비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사업규모	32	29	27	25	23	136
사업비	536	520	492	466	440	2,454
· 국비	268	260	246	233	220	1,227
· 지방비	268	260	246	233	220	1,227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지원대상 확대 : ('07) 5ha 미만 → ('08이후) 전농가
- 지원단가 인상 : ('07) 법정저소득층에 대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35% → ('08이후) 50%이상 단계적 확대 추진

○ 사업비

(단위 : 천명,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합계
사업규모	46	25	23	21	19	134
사업비	480	460	436	412	390	2,178
· 국비	240	230	218	206	195	1,089
· 지방비	240	230	218	206	195	1,089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 농어가 총영유아수 대비 지원비율 57%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2%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25%
- 달성정도 : 농어가 총영유아수 대비 지원비율 61%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36%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25%

○ 산출근거

-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 월평균 지원인원 33천명/농어가 총영유아수 92천명 × 100
- 여성농업인 일손돕기 지원 : 월평균 지원인원 23천명/농어가 총영유아수 92천명 × 100

* 농어가 총영유아수 : 2000년 농업총조사 자료에서 연도별 감소율(6.1%)적용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의 영유아 보육지원	양육비 지원율	(양육비지원 아동수/ 농어가 총영유아수)×100	%	57	61	107

(농림부 / 여성정책과)

1. 사업목표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및 자녀에 대한 영유아 보육지원 등으로 여성농업인의 안정적 영농활동 보장 및 농촌정착 유도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 여성농어업인육성법 제13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계속
- 사업비('06) : 42억원 (지방비 36, 자부담 6)
- 지원대상 : 각 도별로 지원신청자의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운영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사업규모 : 전국 38개소
- 지원형태 : 민간 경상보조
- 지원조건 : 지방비 85% (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 15%
- 지원내용 : 센터 운영자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
- 센터의 주요사업 내용
 - 필수사업 :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교육·문화활동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
 - 임의사업 : 농업·농촌 체험과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도농 교류사업, 농촌 소득증대 프로그램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운영 기본방향

-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 영유아 보육 및 방과후 자녀 학습지도 등 종합복지기능을 수행하는 여성농업인센터 설치를 연차적으로 확대
-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등 여성농업인의 역할증대에 상응한 운영의 내실화 도모

○ 사업비

(단위 :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사업량(개소)	99	163	163	163	163	사업량은 연도별 누계 기준
사업비	114	187	181	181	181	
· 지방비	97	159	154	154	154	분권교부세 포함
· 자부담	17	28	27	27	27	

* 지방이양전의 농업·농촌종합대책상의 연차별 계획으로 자치단체별 분권교부세 및 지방비 확보정도에 따라 사업목표 수정 불가피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 전국 여성농업인센터 운영개소수 73개소
- 달성정도 : 전국 38개소 운영으로 목표대비 52% 성과 달성
- 달성을 산출근거 : 각 도별 센터 운영개소수를 합산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여성농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운영개소수	총 운영개소수	개소	73	38	52

1-3-3-1(계속)	농가 도우미 지원 확대
-------------	--------------

(농림부 / 여성정책과)

1. 사업목표

-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 ~ 계속
- 사업비 : '06년 3,540백만원 (지방비 80%(분권교부세 포함), 자부담20%)
- 사업규모 : 3,505명
- 시행방법 : 매년 지자체 계획에 의거 농업인의 신청에 따라 지원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30,000원의 80%인 24,000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20%는 자부담
 - 지원인원 : 4,276명
 - 지원예산 : 총 5,675백만원 (지방비, 분권교부세, 자부담)
 - 사업내용
 - 지원단가 인상 : 30천원 → 대구 35천원, 울산38, 충북 35, 충남 35, 경북(영양 35), 경남 35
 - 지원일수 확대 : 30일 → 인천 45일, 경기 60, 충북 45, 충남 45, 전북 50, 경북(안동 90, 영주 60)경남 60, 제주 45
 - 자부담 비율 경감 : 20% → 대전 10%, 전북 10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5개년 계획						비고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사업량(백명)	170	34	34	34	34	34	
- 사업비(억원)	405.5	30.6	71.4	89.3	107.1	107.1	

* 5개년 계획의 사업량과 내용은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융자 계획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원인원은 109%, 지원액은 106%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
 - 인 원 : 109% (계획 3,505명 대비 실적 3,811명)
 - 지원액 : 106% (계획 3,540백만원 대비 실적 3,741백만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 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가도우미 지원확대	도우미 지원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3,505	3,811	106

1-3-3-2(계속)	취약농가 인력지원
-------------	-----------

(농림부 / 여성정책과)

1. 사업목표

- 사고농가 영농지원,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지원으로 농업생산성 제고 및 농촌 고령농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계속
- 사업비 : 2,934백만원 (국고 70%, 기타 30%)
- 사업규모 : 영농도우미 4천명, 가사도우미 12천명
- 시행주체 : 농협중앙회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사고농가 영농지원 : 농지소유면적 3ha미만 농가의 65세 미만 농업인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 65세이상 농촌 고령단독농가,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지원액
 - 사고농가 영농지원 : 사고농가당 농촌평균임금의 70% 지원, 남 39,900원/일, 여 26,000원/일 지원, 10일 이내, 민간보조
 - 고령·취약농가 가사지원 : 자원봉사자 10천원/일, 민간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5개년 계획						비고
	소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 사업량							
· 사고농가 영농지원(천명)	47		4	8	15	20	
· 고령가구 가사지원(천명)	72		12	15	20	25	
- 사업비(억원)	318		21	39	110	148	

4. 성과목표 달성도

- 사업예산 : 2,054백만원 중 1,470백만원 집행, 71.4% 예산집행
 - 영농도우미 : 예산 1,344백만원, 집행 760백만원 (56.5%)
 - 가사도우미 : 예산 710백만원, 집행 710백만원 (100%)
- 지원인원 : 계획 16,000명 중 88.6% 달성
 - 영농도우미 : 계획 4,000명, 실적 2,180명 (54.5%)
 - 가사도우미 : 계획 12,000명, 실적 12,000명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 위	'06목표 (A)	실적 (B)	B/A
취약농가 인력지원	도우미 지원원수	총 지원인원수	명	16,000	14,180	89

1-3-5-1(신규)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	-------------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1. 사업목표

- 국내 생산원료 및 자원을 활용한 여성농업인 대상 소규모 농산물 가공 사업 활성화로 여성농업인의 생산적 복지 향상
- 농산물 생산에만 의존한 농가소득증대의 한계 극복으로 농가경제 활력화 도모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산어촌 여성의 복지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2014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180개소 80억원 (국·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자치단체자본보조 (보조율 50%)
- 추진내용
 - 사업대상 : 우리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가공, 생산, 판매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마을, 영농조합법인 등 대상
 - 여성의 보유기술 발굴 및 지역 부존자원의 가공, 상품화
 - 지역여건을 고려한 품목선정, 작업장 확보 및 가공장비 설치, 원료 확보
 - 포장용기 및 디자인 개발, 기술력 향상 교육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시군당 1~2개소씩 총 180개소 육성, 신규사업 투입
3차년도부터는 사후관리에 중점

구 분	5개년('05~'09) 계획						'10~'14
	'05	'06	'07	'08	'09	소계(B)	
사업량	-	9	9	20	22	60	120
단 가	-	45	45	45	45	-	50
사업비	-	405	405	900	990	2,700	6,000
- 국비							
· 보조	-	202.5	202.5	450	495	1,350	3,000
- 지방비	-	202.5	202.5	450	495	1,350	3,000
- 자부담	-	-	-	-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 성과목표 달성현황

- 계획물량(9개소) 모두 여성농업인들의 소규모 농산물가공사업 기반 조성 완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여성농업인 창업지원	창업지원 추진율	창업지원추진율	건	9	9	100

1-3-5-2(계속)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	--------------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1. 사업목표

- 생산과 판매의 일관성 있는 포장개선기술 시범지원, 브랜드화 추진으로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농가 수취가격을 제고시키고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 농촌진흥법 제2조2항(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농촌진흥법 제13조1항(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 ~ 2014
- 사업량 및 사업비 : 210개소, 1,046천만원
- 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 대상 보조사업 추진
 - 기술지도 및 현장교육 병행 추진
- 추진내용
 - 공동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지원
 - 사업장 시설 및 기구보완, 브랜드 개발, 홍보지원 등
 - 상품성 유지와 소비자 기호를 고려한 포장재질개선, 포장방법개선 등 포장/디자인 개선 (소형화·고급화·다양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총 210개소 지원 계획
- 총사업비('07~'14) : 797천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재 원 : 국비 50%, 지방비 50%

(단위 : 천만원)

재원	'02~'06 (A)	5개년('07~'11) 계획						'12~'14
		'07	'08	'09	'10	'11	소계(B)	
사업량	83	15	16	16	16	16	79	48
단 가	3	3	5	5	5	5	-	-
사업비	249	45	128	128	128	128	557	240
국비	124.5	22.5	64	64	64	64	278.5	120
지방비	124.5	22.5	64	64	64	64	278.5	12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매출 증가율	(금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	%	50	68.4	136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1. 사업목표

- 안정적 운영체계와 고객 접근성이 높은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업장 대표자의 전자 마케팅 능력 향상시키고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경영 마인드를 제고 시켜 농촌여성의 농가 소득 증대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8조 (농촌지역산업의 진흥 및 개발)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법률 제 35조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2014
- 사업량·사업비 : 1억원 (국비 100%)
 - 우먼팜 메인 시스템 개선 및 30개소 홈페이지 재구축 등,
- 시행방법 : 자체집행
- '06 추진내용
 - 농촌여성일감맞기 사업장 홈페이지 보완 개발 : 30개소
 - 사업장 홈페이지 기반시스템의 전반적 기능개선
 - 우먼팜 사이트 개편(www.womanfarm.com) : 상품 진열기능 개발 및 농가 소개코너 개선, 디자인 개선

- 지속 참여 농가 홈페이지의 기능개선 적용 : 64개소
- 주문/결제, 게시판 등의 기능개선 적용
- 농가별 부여되는 관리자 시스템의 일괄적 기능개선
- 1년간 시스템 위탁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2014년까지 전체 시스템 안정적 구축과 연도별 수요조사를 통한 기존 홈페이지 보완 및 신규 홈페이지 구축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계	2006까지	2007 예산	2008	2009
사업량	-	1	1	1	1
사업비	6	1	1	2	2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구축건수	전자상거래메인시스템 및 재구축건수	개소	30	30	100

(보건복지부 / 노인요양운영팀)

1. 사업목표

- 고령사회로 접어든 농어촌 지역의 노인가구 문제 및 장기요양보호 욕구를 해소하고자 가정중심으로 노인을 보호함으로써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복지혜택의 지역편재 해소
- 농산어촌 거주 등으로 인해 보건소, 복지회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이 곤란한 재가노인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사 업 비 : '06년 55억 (국비 27.5억, 지방비 27.5억)
- 사업내용
 - '06년 농어촌 재가노인복지시설 16개소 신설
 - '09년까지 농어촌 종합재가노인복지센터 (주간, 단기, 가파시설이 복합된 다기능시설) 128개소 확충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시·군·구) → 사업대상 선정(복지부) → 예산신청(시·군·구) → 예산지원(복지부) → 사업시행(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억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신축 개소수	56	16	14	27	42
신축 예산	30	55	51	100	162

※ 예산액 중 국고 비율은 '05년 40%, '06년 이후 50%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 16개소 설치 완료 (목표 달성도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센터설치수	총 센터설치수	개소	16	16	100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농업인복지과)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의 다양한 노인보호자원을 발굴하고 이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노인수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촌노인 인력활용 및 복지욕구 충족
- 지리적 조건, 인구밀도에 의한 복지서비스의 접근성, 효율성 등의 문제로 재가서비스가 발달하기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사회중심의 자생적인 노인보호체계 구축 기반 조성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19조(농산어촌 노인복지 증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2008년
- 사업비 : 3억원 (국비 10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6~'08) : 4종, 3억원
 - 마을내 이용가능한 노인보호자원의 발굴·양성 및 자발적 참여, 노인보호체계의 자생적 운영 등 다차원적 접근방식의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 마을중심의 자생적인 노인보호활동의 효과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위하여 마을주민들과 사업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 하도록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현장설명회 병행

-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 검증 작업을 통하여 완성도 향상
-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지도사업으로 연계하여 농촌 노인의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을 강화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사업비 및 사업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국 비					지방비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6	2종	-	-	100	-	100	-	100
2007	2종	-	-	100	-	100	-	100
2008	2마을(현장적용)	-	-	100	-	100	-	100
계	4종, 2마을	-	-	300	-	300	-	300

○ 연차별 추진내용

- 지역사회중심 자생적 노인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마을단위 老老 돌봄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수립 ('06~'08)
 - 老老돌봄 운영체계에 대한 한·일 사례를 비교분석, 우리나라 농촌마을 노인돌봄 적용을 위한 문제점 및 운영방안 도출
 - 노인보호활동 사례분석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 1종
- 노인보호자원 역할 수행을 위한 노인봉사원 프로그램 개발 ('06~'08)
 - 노인수발을 위한 농촌 마을단위 노인/주민별 활동서비스의 범위를 설정하여 대상자별 전문화된 노인수발 기술 프로그램 개발 : 2종
- 농촌지역 노인복지수준 진단지표 개발 지원 ('06~'08)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노인봉사원 활동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개발건수	프로그램 개발 후 사업에 반영된 건수	건	2	2	100

(농촌진흥청 / 농촌생활과)

1. 사업목표

- 농촌노인에게 농업·전통문화 영역에서 알맞는 일거리를 발굴하고 생활환경 정비, 건강관리, 사회활동 참여 등 지원으로 건강하고 보람 있는 새로운 노년기 생활문화 정립하고 농촌노인의 생활의 질 향상
- 사업추진 근거
 - 농촌진흥법(제13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제4, 제5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4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11
- 사업량 : 800개소
- 사업비 : 총 1,160억
 - 국비·지방비 각 50%, 개소당 3년간, 총 137~150백만원
- 시행방법 : 민간자본보조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5 ~ '06) : 300개소 237.6억원
 - 사업내용 : 소득활동, 건강생활, 평생학습·사회활동, 환경정비 등 농촌노인의 생산적 여가활동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이후
물량 (누계)		800 (2,400)	100 (100)	200 (300)	50 (350)	200 (450)	250 (500)	- (600)
사업비	국 비	583.2	22.3	76	80	113.9	126.5	164.5
	지방비	577	21	75	80	112.5	125.0	163.5
	합 계	1,160.2	43.3	151	160	226.4	251.5	328

* 2011년까지 800개소(개소당 42 ~ 50백만원), 3년간 지원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57% 대비 57.6%로 다소 향상 ('05년 55.6%)

- 객관적 지표의 생활만족도 : 58.2 (남 59.97, 여 57.17)

- 주관적 지표의 생활만족도 : 56.2 (남 58.57, 여 55.69)

- 평 균 : 57.64 (남 59.70, 여 56.44)

* 지대별 평균 : 도시근교(58.1), 산간지역(52.1), 평야지역 : (62.1)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간 개인과 마을의 활력도 및 삶의 질 향상 증가 비율	%	57	57.6	101

1-4-3-0(계속)	경영이양직불제 추진
-------------	------------

(농림부 / 농산경영과)

1. 사업목표

-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 및 영농규모화 촉진
 -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까지 48.2천ha를 집중적으로 경영이양 추진
- 사업추진 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5호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및 시행규칙

2. 사업내용

- 목 적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 전업농의 영농규모화를 통한 쌀산업의 구조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1997년 ~ 2013년
- 총사업비 : 3,451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1,412억원)
- 사업규모 : 81,558ha ('06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49,076ha)
- 지원형태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지원조건
 - 10년이상 영농경력이 있는 63~69세의 고령농이 3년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소유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쌀전업농에게 매도하거나 5년이상 장기임대하는 경우 ha당 일정금액을 지급

- 지원 단가

- 매도하는 경우 :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지급
- 임대하는 경우 :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지급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시행 : 한국농촌공사)

○ 추진절차

- 대상자 선정신청(농업인→농촌공사) → 현지조사(농촌공사) → 대상자선정·심의(농촌공사) → 대상자 통보(농촌공사→신청 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약정체결(농촌공사↔농업인)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농촌공사→농업인) → 사후관리(농촌공사)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투융자 계획

(단위 : ha, 억원)

구분	합계 (A+B+C)	'04 (A)	5개년('05~'09) 계획						'10~'13 (C)
			'05	'06	'07	'08	'09	소계(B)	
사업량	48,247	4,789	7,267	3,709	2,000	4,000	4,000	20,976	22,482
사업비	2,545	141	221	144	113	193	211	882	1,522

* 예산반영 : 농업·농촌종합대책 ('04.12, '06.12)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목표 : 경영이양율 22%

구분	'04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성과지표(%)	18% (57천명)	21 (68)	22 (71)	23 (73)	24 (76)	25 (80)	26 (83)	27 (87)	28 (91)	30 (97)
경영이양자 (천명)	57천명	68	72	-	-	-	-	-	-	-

- '06년 성과 : 고령농업인 5,214명에게 14,391백만원의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원하여 3,709ha의 농지를 경영이양
 - 경영이양율 22% (경영이양자 72천명/전체 경영이양대상자 322천호)
 - * 2013년 사업목표 48.2천ha 중 15.7천ha ('04년 4,789ha, '05년 7,267ha, '06년 3,709ha)이양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경영이양 직불제 확대	경영이양률	(경영이양자/전체경영이양대상자) ×100	%	22	22	100

제2절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농산어촌에 우수 고등학교를 집중 육성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우수 인재의 도시유출을 막고 교육여건의 개선을 통해 농산어촌에서도 안심하고 자녀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반 조성

○ 사업 방향

- 농어촌 1군에 1고등학교를 선정하여 농어촌지역 실정에 적합한 특색화된 우수고등학교 모델 육성

○ 사업추진근거

- 「농어촌교육 살리기 대책」 대통령 보고 ('04.2.23.)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04.3)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05.4.)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비 : 239.2억원 ('06년, 농특 168억원, 특교 71.2억원)

- 재원 : 국고 (농특회계, 특교) 50%, 지자체 대응투자 50%

○ 사업규모

- 농어촌 군소재지 30개 고등학교

○ 시행방법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단위학교

- 사업집행절차 : 사업지원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추진 계획 수립 및 지원 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 →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단위학교)

○ 주요내용

- 농어촌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생선발, 교육과정 운영 등의 자율권 부여 및 교장 초빙·공모제 우선 적용
- 기숙사, 다목적 설치, 특별교실 리모델링 등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육시설 현대화 지원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등 교육력 제고
- 저소득층 자녀, 성적우수자 등을 위한 장학금 수혜 확대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연차별 추진 계획 (단위: 억원)					비고	
	'04	'05	'06	'07	소계		
사업량	7	7	30	44	88		
사업비	국비	23.68	60.65	239.2	240	563.53	국비:지방비 (50%:50%)
	지방비	23.68	60.65	239.2	240	563.53	
	계	47.36	121.30	478.4	480	1,127.06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 우수교 30개를 선정 지정하여 계획 대비 100% 성과목표 달성
- * '04년 7교 → '05년 7교(14교) → '06년 30교(44교) → '07년 44교(88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산어촌 우수교교 집중육성	우수교교지정수	총 우수교교지정수	개교	30	30	100

(교육인적자원부 / 과학실업교육정책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의 실업계고교를 지역특성에 맞게 특성화하여 지역 사회 및 산업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인력 양성
- 농산어촌 실업계고교의 교육 경쟁력 강화로 농산어촌 교육복지에 기여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21조(농산어촌 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05.5.12, 교육혁신위원회)
 - ‘직업교육체제 혁신방안 세부시행계획’ (‘05.12.6, 부총리 결재)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시·도 교육감 및 교장
 - 사업추진절차
 - 교육인적자원부 : 실업계고 혁신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교원 연수 등
 - 시·도 교육감 및 학교장 :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전환 승인요청 (학교장) → 검토 후 승인(시·도 교육감) → 행·재정적 지원 (시·도 교육감) → 사업수행(학교장)
 - 사업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의 실업계고교

- 사업규모
 - 학과개편 및 특성화고 지원 : 10개학과 (학교)
 - 통합형고 개편·운영 : 5개교

○ 예산 : 지방비 100%

○ 추진 내용

- 학과개편, 특성화고 및 통합형고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기자재 구비
- 변경된 학과에 맞게 교원들에 대한 연수 실시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기간 : '05년 ~ '06년 (2년)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 비					지방비	기타 (자부담포함)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 계			
2005						18,925		18,925
2006						12,500		12,500
(증△감)						△6,425		△6,425

4. 성과목표 달성도

- 특성화고 지정 (목표 10개교/실적 10개교 100% 달성)
 - 동래원예고, 대구자연과학고, 광주자연과학고, 춘천농공고, 강릉농공고, 한국경마축산고, 함평골프고, 호남원예고, 김해생명과학고, 제주관광산업고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실업계고특성화·내실화	특성화·내실화지정 고교수	특성화고 지정(신설)학교수+통합형고로 개편한 학교수	개교	10	10	100

(농촌진흥청 / 한국농업전문학교)

1. 사업목표

- 농업인구의 급속한 감소 및 노령화와 DDA/FTA 체결 등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우리농업을 이끌어 갈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강화하여 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력 양성
 - 고령화 및 젊은층의 탈농으로 피폐한 농촌에 농촌정착형 차세대 우수 농업CEO 양성교육을 통하여 농업소득 증대와 농촌 삶의 질 향상 및 국가의 균형발전을 주도할 농촌사회 리더 육성
 - 농업여건 변화와 농산물 자유무역 시대에 대응하는 우리나라 기술 농업을 주도할 경쟁력 있는 차세대 정예농업인력 육성
- 추진 근거
 - 한국농업전문학교 · 한국임업전문학교 및 한국수산전문학교 설치령 (대통령령 제17910호)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09
- 사업량 · 사업비 : 720명(240명×3학년) + a(직업훈련과정), 683억원
- 시행방법 : 자체집행
- 추진내용
 - 농업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학제 개편 및 교명변경

- 국내외 장기현장실습교육 강화를 위한 순회지도·교내 소집 중간 점검·실습비 지원강화 및 학점부여 방법 개선, 실습 농장주에 대한 교육 실시
- 국제경쟁력 배양을 위한 해외현장실습지역 확대
- 현장실습교육 지원비 인상 및 성적 장학금 지원
- 신규 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창업농 직업훈련과정 시범 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학제 개편 및 교명변경 추진('06년~'07년) : 학제를 3(학교교육)+3(영농)+1년(추가교육)제로 개편하고 학교명칭을 한국농업대학으로 변경
- 학과 계열화 및 농산업계열학과 신설('07년~'08년) : 농촌관광 및 농산물 가공산업의 발달 등 농업·농촌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학과 개편
- 현장실습교육 지원비 인상('05년~'09년) : 영농종사 의무이행조건으로 재학기간 중 수업료, 입학금 및 숙식비 등 교육비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2학년 정규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현장실습교육비는 숙식에 필요한 기본비용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어 농림부에서 추진하는 농업인턴십제 수준으로 증액 지원
- 직업훈련과정 신설('05년~'09년) : 3개월~1년 과정의 창업농 및 귀농자 직업훈련과정 활성화
 - 장기현장실습교육생 현장실습교육비 지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지원인원	240명	240명	240명	240명	240명	1,200명
소요예산	600	600	600	600	600	3,000

- 성적장학금('06년~'09년) : 우수학생 유치 및 면학여건 조성을 위하여 성적 차등에 따른 장학금 지원 신설
- 졸업생 상사업비 지원('05년~'09년) : 영농종사 의무를 이행중인 졸업생의 영농 경영성과에 따른 상사업비 지원(졸업생의 상위 10%)으로 졸업생의 사기 진작

○ 연차별 투자계획 ('05~'09)

(단위 : 억원)

구 분	'04까지 (A)	5개년('05~'09) 계획					소계(B)
		'05	'06	'07	'08	'09	
□ 사업량	1	1	1	1	1	1	1
□ 단 가	528	62	64	68	71	79	343
□ 사업비	528	62	64	68	71	78	343
○ 국비	528	62	64	68	71	78	343
- 보조	528	62	64	68	71	78	343
- 용자	-	-	-	-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당초 제시한 성과목표치 95.0%를 달성하였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운영	졸업생 영농정착율	매년 졸업생들이 시군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한 보고서	%	95	95	100

2-1-2-1(계속)	학교군 구성·운영
--------------------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1. 사업목표

- 소규모학교를 인근학교와 학교군(school complex)으로 구성하여 교육과정 협력 운영 및 시설 공동이용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20조(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의 책무), 제 21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 사업규모 및 지원대상 : 20개 학교군, 농산어촌 초·중학교
- 지원액 : 30억원(20개학교군×3억원×50%),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 주요내용
 - 학교군내 중심학교의 기본시설 현대화 및 공동 활용시설 구비
 - 다양한 협동학습 프로그램운영(외국어 및 특기적성교육, 문화체험 등)
 - 이동수업 편의를 위해 통학버스 제공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50	30	30	30	30	30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사업대비 실적

구 분	계획	실적
학교군 구성·운영	20	20

○ 만족도 향상

- '06년 학교군 운영·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학부모, 학생 375명을 표집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중심학교에서는 77.6%, 협력학교에서는 57.5%의 만족도를 보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학교군 구성·운영	지원학교수	총 지원학교수	%	20	20	100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 학생수의 지속적인 감소로 대다수 학교가 지나치게 과소규모화 되어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과 다양한 특기적성교육 실시 등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에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작용
- 농산어촌 지역 과소규모학교의 적정규모화를 통해 교육과정 운영을 정상화 함으로써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호
-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통해 농산어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 제공

2. 사업내용

- 전남곡성군 적정규모학교 육성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 될 수 있도록 후속지원 ('05~'09)
 - 학습력 제고를 위한 교과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고등학생 기숙사비 지원
 - 냉난방비 및 인터넷 사용료 지원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전라남도교육감·곡성교육장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부) → 추진계획수립(도교육청) → 세부추진계획수립 및 운영(지역교육청·단위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원조건
 - 학교재배치 : 15원, 26교, 2분교장 → 8원, 14교

- 규모 : 전남곡성 관내 초·중·고등학교 14교
- 지원금액 및 형태 : 특별교부금

(단위 : 억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원금액	6.14	5	4	3	2

- 교육청 자체 재원과 지자체재정을 점진적으로 추가확보 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정부 지원 축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타지역 출신 중학교 졸업자중 곡성지역 고교 입학 지원자 급증
- 6학급 이하 소규모학교 감소, 복식학급 완전해소
- 통폐합에 따른 예산절감 (연간 63억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설문조사	%			측정 불가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정정책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
- 복식학급의 수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
- 개발된 교재의 적용 프로그램 개발
- 지역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농산어촌 학생들의 교육적 삶의 질 제고
 - ※ 복식수업 : 상학년, 하학년의 2개 학년 또는, 그 이상의 학년이 한 학급으로 편성되어서 교육을 영위하는 복식학급에서 이루어지는 수업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09년
- 총사업비 : 10억원 ('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단위 : 억원) : 2억원 ('06년 투자액)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추진 내용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2006. 2)
 - 사업추진 도교육청과 연구학교 선정 (2006. 2)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년도	사업비	추진 계획
2006년	200	-복식수업교재 개발 : 37.5×4과목 = 150 -복식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 10×2과정 = 20 -연구학교 운영 : 10 × 3개교 = 30
2007년	200	-복식수업교재 개발 : 20×6과목 = 120 -복식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 40×2과정 = 80
2008년	300	-복식수업교재 개발 : 20×7과목 = 140 -복식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 40×2과정 = 80 -연구학교 운영 : 20×4개교 = 80
2009년	300	-복식수업교재 개발 : 0.2×7과목 = 140 -복식수업 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 40×2과정 = 80 -연구학교 운영 : 20×4개교 = 80

4. 성과목표 달성도

○ 복식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 2억

- 복식수업교재개발(6종),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2과제), 연구학교 운영 (3개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복식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개발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수	종	8	8	100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과정정책과)

1. 사업목표

- 본 사업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농산어촌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진된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대한 「중기(‘05~’09)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됨
- 특성화된 전문계열의 교과 내용을 원격 콘텐츠로 개발하여 농산어촌의 소규모학교에서 교사와 학생이 공동 이용함으로써 농산어촌 교육의 다양성을 꾀하여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써 교육적 삶의 질을 제고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종결)
- 총사업비 : 3억원 (‘05년까지 기투자액 : 없음)
- 사업규모 : 3억원 (‘06년 투자액)
- 지원형태 : 지자체 보조,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추진 내용
 - 사업 기본 계획 수립 (‘06.2), 사업추진 도교육청 선정 (‘06.2)
 - 연구학교 선정 (‘06.2)
 - 세부사업 추진 협의회 실시 (‘06.4, ‘06.8, ‘06.12, ‘07.1)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추진년도	사업비	추진 계획
2006년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용 e-러닝 콘텐츠 3개 교과 5종 개발 ○ 실업계 고교 계열별 원격교육 콘텐츠 5개 계열 5개 교과 개발 ○ 원격교육 콘텐츠 적용 기초연구 ○ 실업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 ○ 실업계 특성화 프로그램 연구학교 운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3억
 - 원격교육컨텐츠개발 (10종), 기초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2과제), 연구학교 운영 (3개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콘텐츠 개발	콘텐츠개발 및 프로그램개발수	종	10	10	100

(교육인적자원부 / 영어교육혁신팀)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지역 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확대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 초·중등 학생 및 교사의 영어 의사소통능력과 영어교육 수준 제고
 - 농산어촌 원어민 배치를 통하여 도시와의 원어민 접근도 격차 해소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사업비 : 340억 (지방비 100%)
- 사업규모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680명 초청·활용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 주요 내용
 - 초청 인원의 확대 : 시·도 자체 계획에 의거
 - 영어교육활성화 5개년 종합대책에서 계획한 인원을 확보하여 자율적으로 추진
 - 중학교 및 농·산·어촌(도서벽지) 등 교육여건 낙후 지역 우선 배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재원 : 지방비 100%

※ 2010년까지 전 중학교에 원어민 1인 배치 목표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1인당 예산 : 연간 5,000만원 소요

4. 성과목표 달성도

○ 중학생 응답자(1272명)의 66.9%가 만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학생만족도	목표 만족도	점	60	67	112

(교육인적자원부 / 방과후학교기획팀)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의 질 향상
 - 농산어촌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소질·적성 개발 등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
 - 방과 후 보육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부모의 근로활동을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 ~
- 사업비 : 16,950백만원 (지방비 100%)
- 사업규모 : 농산어촌 19개군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시·도교육청
- 사업 주요내용
 - 농산어촌 학생이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하도록 지원
 - 지자체와 협력하여 초등보육 시설, 프로그램 운영, 외부강사비, 이동수단 등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사업비 : '07년 994억원, '08년 1,429억원, '09년 1,348억원, '10년 1,348억원, '11년 1,348억원 (지방비포함)

○ 사업규모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지원 : 88개시·군('07) → 51개 도농복합시 추가, 총 139개 시·군 ('08~)

4. 성과목표 달성도

○ 방과후학교 만족도 68.6% (목표치 : 65%)

* 리서치앤리서치, 전국 학부모 7,465명 대상, '06.11)

사 업 명	성 과 지 표	측 정 기 준	단 위	'06목 표 (A)	실 적 (B)	B/A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학부모 만족도	목표 만족도	%	65	69	106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폭력대책팀)

1. 사업목표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의 체험학습 기회 확대 및 내실화로 교육 복지 증진
- 문화소외지역 학생들의 도시문화체험학습으로 문화적 지체 현상 완화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21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 대통령 공약사항 : “농어촌교육진흥특별법” 제정, 농어촌 교육 살리기 대책 보고 (‘04.2.23)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4 ~ 2007. 1
- 사업규모
 - 사업 시행대상 : 면지역이하(도서벽지) 초등학교
 - 사업규모 : 초등학교 2,070개교 지원
 - 사업 주요내용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학생)의 도시체험학습 운영 및 예산 지원
 - 총사업비 : 국고 10.35억원, 지방비 10.35억원, 총 20.70억원
 - 지원형태 : 국고 50%, 지방비 50%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 ※ 2009년 이후에는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영

○ 사업추진실적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1,669개교/119,356명 실시
- 시·도교육청별 도시체험학습 우수 사례 조사 및 홍보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도시문화체험학습 실시로 교육효과를 높임
- 도시문화체험학습 장소 : 문화유적(사찰, 성터, 궁궐 등 유적지 및 문화재), 공공기관(시청, 소방서, 교육청 등), 문화시설(각종 전시회, 영화관, 도서관), 산업시설(산업체, 공장, 백화점 등), 체육 시설(운동장, 경기관람 등)

○ 사업 추진방법

- 지원형태 : 면지역 이하 초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시·도교육청별 신청을 받아 추진
- 사업수행주체 : 시·도교육감
- 사업집행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인적자원부)→예산지원(교육인적 자원부→시·도교육청)→세부계획수립(시·도교육청)→도시문화 체험 운영계획 수립 및 제출(해당학교)→계획 검토 및 선정·지원 (시·도교육청)→도시체험학습 운영(해당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 추진기간 및 일정

- 추진기간 : 2005년 ~ 2008년
- 추진일정

주요업무	5개년('05~'09) 계획					비고
	'05	'06	'07	'08	'09	
○ 도시문화 체험학습 (방학캠프) 운영	10.35	10.35	11.00	10.00	-	'09이후 시도 이양

○ 연도별 사업비

(단위: 억원)

연도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비	10.35	10.35	11.00	10.00	-
향후추진계획	2009년 이후는 시·도이양 사업으로 지방비로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성과 목표	달성도	비고
만족도 85%	만족도 90%	목표 초과 달성

○ 방학캠프 운영의 성과 목표 달성도는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를 설문지를 통해 분석 평가하였으며 설문지 분석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방학캠프 운영 지원	만족도	학생, 학부모, 교사 만족도 설문조사	%	85	90	106

2-1-4-1(계속)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신·증설
--------------------	--------------------------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지원과)

1. 사업목표

- 유치원 부족지역 중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 교실 개·보수비 지원을 통하여 공립 병설유치원을 신·증설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유아들에게 유아교육 기회 확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사업내용
 - 사업규모 및 지원 : '06년도 150학급, 지자체 보조 (보조율 50%)
 - 지원대상 : 농산어촌 지역 공립 병설유치원
 - 사업시행 주체 :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 시행방법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교육인적자원부) → 예산 교부(교육인적자원부) → 예산 배정 및 집행(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 결산 보고 및 정산(시·도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사 업 명	'07	'08	'09	'10	'11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30학급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달성비율 (4분기까지) : 목표 150학급수, 실적 121학급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공립 병설유치원 신·증설	신증설학급수	신증설학급수	학급	150	121	81

(교육인적자원부 / 유아교육지원과)

1. 사업목표

- 저소득층의 유아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복지 구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3. ~ 2007. 2. (1년간)
- 지원인원 : 307,734명 (도시지역 포함)
 - 만5세아(142,476명), 만3·4세아 차등교육비 (155,258명)
 - 두자녀 이상 교육비 : 10,000명
- 소요예산 : 197,195백만원 (도시지역 포함)
 - 만5세아 무상교육비(116,835백만원), 두자녀 이상 교육비 : 2,820백만원
 - 만3·4세아 차등 교육비 : 77,540백만원
- 시행방법
 - 매년초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유아교육비 지원계획 수립
 - 사업비는 국고 50%, 지방비 50%으로 지원
 - 사업시행주체는 시·도교육감 및 교육장

3. 연차별 추진계획

- 중장기 계획 ('07~'11)

구 분		'07	'08	'09	'10	'11
지원계층		평균소득 100%이하	평균소득 10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평균소득 130%이하
전 체 아 동수	만5세아	512	476	475	472	472
	만3,4세아	954	949	942	933	933
지 원 아 동 수	만5세아	152	183	209	208	208
	만3,4세아	168	262	314	326	326
지 원 비 율	만5세아	29.7%	38.5%	44%	44%	44%
	만3,4세아	17.6%	27.6%	33.3%	34.9%	34.9%
소예예산 (지방비포함)	만5세	1,282 (2,564)	- (3,316)	- (3,874)	- (3,956)	- (3,956)
	만3,4세아	751 (2,564)	- (2,350)	- (2,614)	- (2,714)	- (2,714)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달성비율 (4분기까지)

성과지표명	목표치	실적치	목표달성도
만5세아 중 무상교육비 지원율	신청인원 대비 지원인원(95% 이상)	118천명 신청, 전원 지원	100%
만3·4세아 중 차등교육비 지원율	신청인원 대비 지원인원(95% 이상)	74천명 신청, 전원 지원	100%
목표달성도 평균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수혜율(만5세아)	(지원인원/만5세아수) ×100	%	95	100	105
	수혜율(만3,4세아)	(지원인원/만3,4세아수) ×100	%	95	100	

(농림부 / 농촌사회과, 지방자치단체)

1. 사업목표

- 지리적·경제적으로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가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도농간 교육격차 및 교육기회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 (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계속
-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
- 지원금액 : 당해학교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 사업규모('06) : 864억원, 100천명
- 사업비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2005년부터 지원대상 확대 : 소유경지 면적 1.5ha → 전 농어가
 - 개발제한구역해제 등으로 학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기 지원받고 있는 학자금을 대해서는 당해 학생의 고교졸업시까지 지원
-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천명, 억원)

연도 \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 원	98	100	99	84	77
금 액	828	864	920	700	663

* '05~'06 : 실적, '07~'09 : 삶의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에 의함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농업인 고교생자녀 전원에게 지원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874	864	100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98	100	

2-2-2-1(계속)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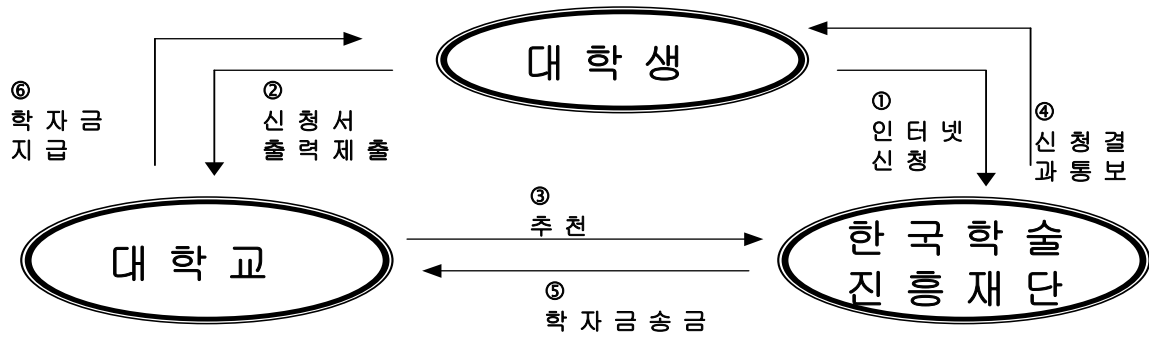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 줌으로써 농산어촌 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과 농산어촌출신 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등 교육기회 균등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계속
- 총사업비 : 6,840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2,326억원)
- 사업규모('06) : 677억원, 25천명
- 지원대상 : 농산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의 대학생 자녀
- 사업시행주체 : 한국학술진흥재단
- 지원형태 : 정부 출연
- 지원조건 : 등록금 한도 내에서 신청한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 졸업 후 1년 거치, 1학기 융자금을 1년 단위로 상환
- 신청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사업추진절차



3. 연차별 추진계획

	'05	'06	'07	'08	'09
용자금액(억원)	637	677	747	857	979
지원인원(천명)	25	25	26	28	3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인 지원금액은 출연금 및 회수금 등으로 조성되며 수혜자 전원의 매학기별 등록금등 신청금액 전액이 지원되고 있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산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700	677	97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26	25	

(농림부 / 여성정책과)

1. 사업목표

-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어갈 젊고 우수한 후계 농업인 양성과 농어업인의 교육비 경감

2. 사업내용(제도개편 내용)

- 사업기간 : 2004. 8월 ~ 계속
- 사업비 : 60억 ('06)
- 사업규모 : 6,000명
- 시행방법 : 매년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지침 마련
- 지원재원 :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 시행기관 : 「KRA와 함께하는 농촌희망재단」
- 추진내용
 - 영농희망장학금 : 농과계대 2학년 이상 자 중 영농희망자에게 매 학기마다 장학금 지원(연 240만원/1인), 영농희망 장학금은 수혜기간 만큼 영농종사 의무
 - 성적우수장학금 : 전국대학 1학년 2학기 이상 재학중인 농어업인의 자녀 중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 선발 지원 (연 200만원/1인)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6,000명 장학금 지속 지원

사업명	5개년 계획					비고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대학생 장학금 지원						
-지원인원(명)	6,000	6,000	6,000	6,000	6,000	
-지원금액(억원)	60	60	60	60	60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원인원은 95.1%, 지원액은 92.3% 달성

- 인 원 : 95.1% (계획 6,000명 대비 실적 5,706명)

- 지원액 : 92.3% (계획 6,000백만원 대비 실적 5,537백만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6,000	5,706	95

(교육인적자원부 / 학교체육보건급식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지역 학생에게 급식비를 지원하여 학생건강 증진과 학부모부담을 경감하고 나아가 농산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근거 :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시행령 제10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1 ~ 계속
 - 사 업 비 : 737억원, 지방비 100%
 - 사업규모 : 779천명에게 급식비 일부 및 전액지원
 - 추진내용 : 학기중 연간 180일 지원
 - 지원형태
 - 도서벽지 : 전액 지원 (850~1,700원 정도)
 - 농 촌 형 : 일부 지원 (50~770원 정도)
- ※ 시·도교육청 재정여건 등에 따라 학교별 지원액이 다르나, 일부 시도에서는 무상급식 실시, 또한 저소득층 학생은 급식비 전액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08년도부터 농특세 재원으로 중·고등학교 까지 점차 확대

- ('05) 466억원 → ('06) 626억원 → ('07) 660억원 → ('08) 660억원 → ('09) 660억원

○ 연차별 투자 사업비

(단위 : 명, 억원)

주요업무	5개년 계획				
	'05	'06	'07	'08	'09
<input type="checkbox"/> 사업량	750,537	783,000	724,497	724,497	724,497
<input type="checkbox"/> 단 가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도서벽지 (850~1,700원) 농촌형 (50~770원)
<input type="checkbox"/> 사업비	466	626	660	660	660
<input type="checkbox"/> 국 비					
<input type="checkbox"/> 지방비	466	626	660	660	660

※ 시도교육비특별회계(지방비)에서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

4. 성과목표 달성도

성과지표(626억원) 대비 737억원 지원 (목표대비 118% 달성)

○ 시·도교육청의 사업추진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로 성과지표
보다 118% 향상된 성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초·중·고학생 급식비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626	737	118

2-2-3-2(계속)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지방자치단체)

1. 사업목표

- 자영농과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으로 영세농업인의 부담경감을 도모하고, 농업을 합리적·과학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인 후계자를 육성하여 젊고 유능한 농업전문 인력의 농촌정착을 유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특별법 제23조(농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6 ~ 계속
- 사업비 : 교부세(국비) 및 지방비에서 지원 (지자체에서 사업시행)
- 추진내용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 사업규모('06) : 1,844백만원, 2,474명
- 지원대상 : 전국 11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농과 재학생
 ※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국고보조금 정비방안('04.7.6)에 의거 '05년부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사업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억원)

연도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인원	2,466	2,474	2,610	2,600	2,600
금액	15	18	21	17	19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인 지원금액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있으며, 자영
농과생 전원에게 급식비가 지원되고 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자영농과계고 급식비	농과계고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8	18	100
	농과계고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천명	24	24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과)

1. 사업목표

- 자영수산과 학생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통하여 어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수산계고등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으로 젊고 유능한 어촌 후계인력 육성 및 어촌정착을 유도
- 사업추진 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 대통령 지시사항('84.11.3) 및 수산계학교 육성방안('86. 교육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86년 ~ 계속
- 사업비
 - 지원금액 : '05년까지 2,080백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도비(교부세 포함) 50%, 자담(교육인적자원부 포함) 50%
- * '05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된 사업임
- 사업규모('06) : 220백만원 (432명)
- 지원대상 : 수산계고등학교에 설치된 자영수산과(4개교) 재학생
 - 충남해양과학고, 완도수산고·신안압해종합고, 포항해양과학고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5까지	'06실적	'07계획	'08	'09	'10
사업량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4개소
사 업 비	계	1,860	220	228	228	228
	국비	452				
	도비	478	110	114	114	114
	자담	930	110	114	114	114

4.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달성도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06년 실적치	목표달성도
지원학생수(명)	432	432	100%
지원금액(백만원)	249	220	88%

* 지원금액의 목표치 대비 실적치가 88%인 것은 3학년 학생의 현장실습 등으로 29백만원이 미집행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수산계고 지원학생수	총 지원학생수	명	432	432	100

2-2-4-2(계속)	농산어촌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	---------------------------

(교육인적자원부 / 특수교육정책과)

1. 사업목표

- 특수교육 여건이 열악한 농산어촌의 장애아에 대한 순회교육 제공, 특수교육 관련 상담, 홍보 및 진단·평가 지원 등을 통하여 특수교육 지원 확대
-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 대책 수립·실시
 - 특수교육진흥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특수교육 내용, 방법 개선,
 -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순회교육)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3. ~ 2007. 2.
- 사 업 비 : 3,000백만원
- 사업규모 : 11개 시·도의 농산어촌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특수교육 지원센터 60개소 운영 지원 (센터당 1억원 지원)
 - ※ 산출내역 : 담당강사 인건비 2인, 특수교육용 교재·교구비, 운영비
- 시행방법 : 시도교육감이 지정·운영
- 추진내용
 - 농산어촌 지역교육청에 설치한 60개소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장애아 순회교육 전담 담당강사 120명(특수교사 자격 소지자) 특수교육 지원센터 배치
 - 담당자의 업무 및 센터 운영 내용

- 가정과 시설,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특수교육 및 치료교육 순회지도
- 장애학생 가족 및 지역 장애인 교육상담
-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단·평가지원
- 일반교원 특수교육 이해 및 연수지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명, 백만원)

연 도	'05	'06	'07	'08	'09	'10
운영 지원 센터수	18	60	60	90	90	90
담당강사 배치수	36	120	120	180	180	180
예 산	900	3,000	3,000	4,500	4,500	4,500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 100% (120명 배치)

○ 전체 성과 목표의 67% 달성

(단위 : 개소, 명)

연도	'05 실적	'06계획	'07계획	'08계획	'09계획	비고
지원 센터수	18	60	60	90	90	
배치인원	36	120	120	180	180	
예산(국고)	900	3,000	3,000	4,500	4,500	보조율50%
성과목표(%)	20	67	67	100	100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순회강사 확보수	총 순회강사확보수	명	120	120	100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양성연수과)

1. 사업목표

-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를 확대하여 부족한 농어촌 지역 초등교사의 안정적 확보기반 마련
- 농어촌지역의 초등교원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추진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확보·배치)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2(장학금 지급 및 의무복무)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입학·편입학), 제31조(학생의 선발), 제33조(대학입학전형계획의 수립 등) 및 제34조제2항(특별전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 사 업 비 : 선발된 학생 1인당 연간 100만원~200만원 지급 (지방비 100%)
- 사업추진체계
 - 사업추진주체 : 도 단위 시·도교육청과 관내 교육대학
 - 사업추진절차 : 교육감과 교대총장간 협약 체결 → 교육감 시·군별로 일정 인원 추천 → 교대 신입생 선발 → 합격자에게 장학금 지급 → 졸업후 의무복무 부과
- 사업 내용

-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를 당해 지역 교육대학에서 별도전형으로 선발하여, 졸업후 당해 교육청 임용시험에 응시, 임용 후 당해 지역에서 일정기간(2~4년) 의무 복무 추진
- 임용시험 응시 제한 및 복무 의무
 - 교육감 추천 신(편)입생은 졸업 후 반드시 당해 교육청의 임용 시험에 응시
 - 임용 후 2~4년간 의무복무 (추천대상자 선발 및 입학모집요강에 명시)
- 위반 시 제재 : 장학금 환수, 타 지역 임용시험 응시기회 제한 (2~4년간)
 - 추천자와 피추천자의 사적계약(각서 등)에 의해 실효성 확보
 - 시·도 초등교사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 협의를 통한 응시기회 제한

3. 연차별 추진계획

- 동 과제는 부족한 농어촌지역 초등교사의 안정적 확보 기반을 마련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이제는 농어촌 지역에서도 초등교원 지원자가 넘쳐나고 있어 '08학년도부터 사업 중단 예정
-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
 - '01년 41.7% → '02년 84.5% → '03년 74.4% → '04년 93.4% → '05년 97.3% → '06년 100% → '07년 100%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어촌지역 초등교원 임용시험 충원율 : '06년 100%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임용시험충원율	당해연도 임용시험충원율	%	100	100	100

(교육인적자원부 / 교원정책혁신추진팀)

1. 사업목표

- 유능한 교장을 농어촌 학교에 초빙함으로써 해당 학교의 교육력 제고를 통해 농산어촌 지역교육의 내실화 도모
- 사업 추진 방향
 - 초빙교장 임용비율의 점진적 확대 및 임용추천 심사 강화 등 초빙교장제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제도 활성화 도모
 - 농어촌 1군 1우수고 등 혁신의 필요성이 시급한 학교에 유능한 교장을 영입하기 위해 '06년 9월부터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주체 :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 사업내용(기존 사업)
 - 시·도 내 농산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초빙교장제 실시 확대
 - 시·도교육감은 지역실정, 학교여건 등을 고려하여 당해 교육청 소속 전체 학교의 10% 이내에서 초빙교장 실시학교를 지정
 - 시·도교육감이 농산어촌 학교를 초빙교장제 실시학교로 지정하여 해당 학교에 유능한 교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추진
 - 초빙교장제 제도 개선 추진
 - '교원정책혁신기획팀'을 구성하여 교원승진임용제도 개선방안(시안)을 마련, '초빙교장제 점진적 확대와 제도 개선' 추진

- 우리부 시안을 교육혁신위원회에 송부하여 최종안 수립을 요청, 최종 개선안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 추진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06.9~)
 - 농어촌 1군 1우수고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학교, 특성화학교 등 150여개를 대상으로 단계적('06년 50개교)인 시범 운영
 - 특성화중·고 약 20개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갖춘 교육공무원, 대학교수, 경영인(CEO) 등에게 공모기회 부여
 -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교장 임용추천 심사 강화 및 2년 주기의 정기적인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 교장의 학교경영 책무성 담보

○ 예산 : 비예산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 교장초빙·공모제 시범운영 실시

구분	'06.9 ~ '08.8	'07.3 ~ '09.2	'07.9 ~ '09.8	합계
시범학교 수	48개	52개	50개	150개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구분	'04	'05	'06	'07	'08	'09
성과지표(목표)	-	5%	6%	7%	8%	9%
성과지표(결과)	3.94%	3.96%	4.2%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교원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초빙교장제 실시율	(초빙교장제 실시 학교수/전체 학교수)×100	%	6	4.2	70

2-3-2-1(계속)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단체지원과)

1. 사업목표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6조(농산어촌학교 교직원의 우대) 및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1조(농산어촌 학교 교원의 수당)에 의거 농산어촌 소속 교원 중에서도 특히 업무가 가중되는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하여 농산어촌 교육의 질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2014
- 사업규모 : 54,722명 (2006년도 연인원)
- 지원 금액 및 형태 : 2,409백만원, 교사 1인당 월 50천원지급(단,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의하여 도서벽지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경우에는 30천원)
- 지원조건 (지원 대상)
 - 순회교사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겸임근무를 명받아 2개(교육청 소속은 1개) 이상의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교사
 - 복식수업수당 : 농산어촌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소규모 학교에서 학년별 학급편성이 곤란하여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1개 학급으로 편성하여 수업하는 복식학급 담당교사 (복식수업이 아닌 수업도 담당하는 교과전담교사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2007년도 추가지급대상 교원 : 근무처 구분 없이 겸임근무를 명받아
 농산어촌에서 실제로 순회근무를 하거나 복식수업을 하는 교원
 (예 : 소속 학교가 도시지역인 교원의 순회근무, 교육청 소속 교원의
 순회근무, 교감의 복식수업 등)

○ 사업 주요내용

- 시·도별 농산어촌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소속 순회교사
 및 복식수업담당교사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시·도교육청에 분기별로
 예산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연말에 정산 후 잔액 반납

3. 연차별 추진계획

연 도	2007	2008	2009	2010	2011
금액(억원)	30.83	30.83	30.83	30.83	30.83

4. 성과목표 달성도

- 대상교원 54,722명(연인원) / 지원한 교원 54,722명(연인원)으로
 대상교원에 대해 100% 지원함으로써 교원 사기 진작에 기여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지원교원수	총 지원교원수	천명	55	55	100

2-3-2-2(계속)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	--------------------------

(교육인적자원부 / 교육복지정책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 도서벽지 교직원 사택 신축 및 개·보수비 지원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교직원에게 주거 편의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시행 및 사업비 : 시·도교육청, 60억원
- 사업규모 : 182개동의 사택 신축 및 개보수
- 지원대상 : 농산어촌 초, 중, 고등학교
- 사업추진절차
 - 사업지원 기본계획 수립(교육인적자원부) →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학교 선정(시·도교육청)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300	60	60	60	60	60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사택신축 및 개보수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교원사택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사택 신축,보수	총 사택 신축,개보수	개소	182	255	140

(교육인적자원부 / 지식정보기반과)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지역 학교도서관의 기본환경 개선
 - 자료·탐구 중심의 교수-학습 활동이 가능케하여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함양 및 방과 후 문화공간으로도 활용
- 사업추진방향
 - 농산어촌 지역에 적합한 학교도서관 모델을 개발하여 사업 효율성 제고
 - 학교가 사업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 형성과 역량을 갖추고 추진
- 사업 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농산어촌학교의 시설·설비 등 지원)
 -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 (‘05.4.)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6년 ~ ‘13년 (총8년)
- 사업비 : 126억원 (국고 63억원, 지방비 63억원)
- 사업규모 : 252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 및 리모델링
- 사업지원대상
 - 학생수 300명 이하를 기준으로 하되, 100명 이하 과소규모학교 통폐합 대상학교 제외 (군지역, 도·농 복합시의 읍·면 이하 지역)

- 지원금액 및 형태 : 학교당 5천만원, 국고 50% : 지방비 50%
- 사업 지원조건 : 학교기본운영비의 3%이상을 자료구입비로 확보
- 사업 내용
 - 교육·문화시설이 열악한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설치·리모델링 사업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기본 장서 확충 지원
 - 농산어촌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 (교수·학습 프로그램 개발 보급)
- 사업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교육청, 단위학교
 - 사업절차 : 기본계획수립(교육부) → 세부계획수립·공모(도교육청) → 신청(학교) → 심사·선정(도교육청) → 사업 준비(해당학교) → 예산지원(교육부, 도(지역)교육청) → 사업시행(해당학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물량 (학교수)	국 비					지방비	합계
		농특세	균특	기타회계	기금	소계		
2005	-	-	-	-	-	-	-	-
2006	252	6,300	-	-	-	6,300	6,300	12,600
2007	248	6,200				6,200	6,200	12,400
2008	248	6,200				6,200	6,200	12,400
2009	248	6,200				6,200	6,200	12,400
계	996	24,900	-	-	-	24,900	24,900	49,8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 목표를 달성함

- 학교도서관 리모델링 수 110% 달성 (목표 252개교, 실적 277개교)
- 학생 1인당 장서수 100% 달성 (1인당 목표 9.5권, 실적 9.5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학교 도서관 및 장서확충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수	개교	252	277	110
		학생 1인당 장서수	권	9.5	9.5	100

(교육인적자원부 / 지식정보정책과)

1. 사업목표

- 사업 추진 근거
 - 교육기본법 제23조 (교육의정보화)
 - 정보통신기술교육운영지침 (모든 교과교육에서 10%이상 ICT 활용)
- 교육정보화 인프라 고도화 지속 추진
 - PC 1대당 학생 5명 수준으로 고도화
 - 모든 학교의 인터넷 통신 속도를 2Mbps 이상으로 증속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7. ~ 계속
- 사업비(연평균) 및 규모 : 18,305백만원, 1만여개 초·중등학교
- 시행방법 : 전액 지방비 추진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 자체 계획에 의해 예산 확보 및 추진
- 추진내용 : PC 보급 및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 계획

구 분	'05(실적)	'06	'07-'08	'09-'10
PC 1대당 학생 수	6.3명	5명	5명	5명
인터넷속도 (Mbps)	2M이상 (96.3%)	2M이상 (100%)	5M이상 (100%)	10M이상 (100%)

4. 성과목표 달성도

○ PC 보급 및 인터넷 통신 속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PC 1대당 학생수	PC 1대당 학생수	명	5	5.6	107
	인터넷 통신속도	인터넷 통신속도 2Mbps이상	%	100	96.4	

(농림부 / 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시·군지역내 주민교육관련 기관·단체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종합 관리하여 농산어촌 주민들에게 다양한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
- 교육·문화·복지를 결합한 평생학습 기회제공 등으로 농산어촌 주민의 정주 여건을 조성
- 사업추진근거 :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 사업비 : 비 예산사업
- 추진내용 : 『농산어촌지역 커뮤니티 센터의 운영방안』 연구용역
- 사업규모 : 24,895천원 ('06 연구용역비)
- 지원대상 : 연구결과 각시·도 및 시·군에 배포
- 사업추진절차 : 사회교육관련 실태조사(시·도) → 운영계획수립(농림부) → 운영계획 통보(시·도) → 운영계획 통보(시·군)

3. 성과목표 달성도

- 2006년 연구용역 기간으로 사업 미실시

제3절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

3-1-1-0(계속)	농촌지역개발 전문인재 육성 및 저변확대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농촌지역개발리더, 참여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의 사업추진능력 배양 등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역량 강화
 -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 ~
- 사업비('06) : 830백만원 (국고)
- 사업규모 :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 시행 및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마련
- 사업추진절차 : 기본계획 수립(농림부) → 시행계획 수립(한국농촌공사 등) 및 승인(농림부) → 세부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한국농촌공사 등) → 사업비 정산(농림부)
- 사업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37조 및 제38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 및 제38조
- 사업주요내용
 - 지역리더, 주민,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적자원 유형별 역량을 배양하도록 체계적인 전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동기화 과정(순회교육), 특별과정 등

- 체계적인 교육 관리·지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농촌지역개발 교육수료자 사후관리방안 마련, 농촌지역개발 학적 관리 및 인재뱅크시스템개발,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재 개발,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컨테스트 개최,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추진내용	1단계(2005)	2단계(2006~2008)	3단계(2009)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시행	○교육프로그램 마련 및 시범운영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 운영	○교육 프로그램 지속 운영
○지원시스템 마련	○교육수료자 사후관리 방안 마련 ○농촌지역개발 관련 전문가 DB 구축 ○인력육성과 지역개발 사업 연계 방안 마련 등	○농촌지역개발 인재뱅크·학적관리 시스템 개발·운영 ○농촌지역개발 관련 교재 개발·보급 ○내고향 잠재자원개발 컨테스트 개최 ○농촌지역개발 현장전문가(농촌마을CEO) 제도 시행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 지원 등	

○ 연차별 투융자계획(국고)

(단위 : 억원)

구 분	5개년('06~'10) 계획				
	'06	'07	'08	'09	'10
합 계	15	17	20	20	21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 시행	4	4	5	5	6
○지원시스템 마련	11	13	15	15	15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촌지역개발 전문교육인원은 '06년에 2,000명을 목표로 하여 '06.12월까지 2,258명 교육을 실시, 당초 목표의 112.9%를 달성 (목표 대비 12.9%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지역개발전문인력육성 및 저변 확대	전문교육인원수	총 수료인원수	명	2,000	2,258	113

3-2-1-1(계속)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고취함으로써 농촌사회 유지 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동일한 생활권·영농권이 같은 1개 법정리 이상의 발전 잠재력이 있는 마을들을 상호 연계하여 소권역 단위로 개발
 - 지역주민과 지역내 관련전문가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농촌지역을 전원생활·여가휴양·자연환경보전공간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원적 기능을 확충
 - 지역의 잠재자원을 특성화하여 소득증대를 통한 자립기반 구축
 - 지역별 특성을 살려 여건에 따라 다양한 유형으로 특성화 개발
 - 농촌다움을 유지·보전하는 친환경적인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2017
- 총사업비 : 57,918억원 (국고 48,819, 지방비 9,099)
 - 농촌지역발전에 선도적역할을 할 1,000개권역을 우선 추진
 - 권역당 5년간 40~70억원 범위내 지원 (국고80%, 지방비20%)
 - ※ 권역의 크기, 가구수 등 권역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 추진현황 : '06까지 56개 권역 착수, 40개권역 기본계획 완료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작성(주민)→사업신청신청(주민, 시·군, 시·도)→타당성조사(농림부)→기본계획안 작성(시·군,농촌공사)→기본계획수립(시·군,시·도)→시행계획수립(시·군,시·도)→사업시행(시·군)→ 준공(시·도)
- 사업내용 : 지역실정에 따라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 및 기초생활환경정비시설 지원과 함께 지역혁신을 위한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관련사업 지원
 - 마을경관개선 : 마을소공원, 담장정비, 마을숲 정비, 빈집 철거 등
 - 기초생활시설 : 마을내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신·개축 등
 - 소득기반시설 : 농산물가공시설, 공동집하시설 등
 - S/W관련사업 : 컨설팅, 마케팅, 주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당초 '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착수하고, '05~'09기간중에는 276개 권역을 착수할 목표로 추진하였으나,
 -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고, 주민참여형 상향식 종합개발사업 이어서 현재로서는 연간 40개 권역이 적정 수준으로, 현재의 사업 추진속도로는 목표달성이 어려운 실정임
- 중장기 추진목표 달성을 위해 무리하게 확대 추진할 경우, 사업 자체가 부실화 될 우려가 있어 1,000개 권역 착수 목표를 '17년으로 4년 연장하고, '05~'09기간 중에는 176개 권역을 착수할 목표로 연차별 추진계획을 조정

- '05년도에 착수한 36개 권역의 1단계 사업('05-'07) 완료 후 '08년도에 중간평가를 실시할 계획임

<당 초> : 삶의질향상 5개년('05~'09) 계획

(단위 : 억원)

	계	'05	'06	'07	'08	'09
사업량(권역)	276	36	20	50	70	100
사업비	10,896	752	1,119	1,819	2,877	4,329
-국 고	9,176	645	949	1,517	2,442	3,617
· 보 조(80%)	7,416	489	755	1,283	1,892	2,997
· 용 자	1,754	156	194	234	550	620
-지방비(20%)	1,726	107	170	302	435	712

<조 정> : 농업·농촌종합대책 투자계획(변경)

(단위 : 억원)

	계	'05	'06	'07	'08	'09
사업량(권역)	160	36	20	40	40	40
사업비	6,813	752	726	898	1,669	2,768
-국 고(80%)	5,630	645	617	731	1,349	2,288
-지방비(20%)	1,183	107	109	167	320	480

* 농촌주택정비 용자금은 '06이후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까지 56개 권역('05 : 36, '06 : 20)을 착수하여 목표를 100% 달성
- 산출근거 : $56/1,000 \times 100 = 5.6$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사업착수율	(누계 착수권역수 / 1,000(목표권역수))×100	%	5.6	5.6	100

3-2-1-2(계속)	어촌종합개발사업
--------------------	-----------------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1. 사업목표

- 낙후어촌의 정주생활환경 개선 및 수산업 생산·소득기반시설 지원 등으로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 사업추진근거 : 어촌어항법 제9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2013년
- 총사업비 : 8,795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5,265억원)
- 사업규모 : 225개 권역 (1단계 : 160개 권역, 2단계 : 65개 권역)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 지원조건 : 국비 80%, 지방비 15%, 자담 5%
- 사업집행주체 : 시·도지사(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5까지	'06실적	'07계획	'08년	'09년	'10년	'11이후
사업량(권역수)		225	152	(17)	24	(24)	11(16)	12(11)	26(12)
사업비	계	879,531	487,885	38,646	35,750	48,250	51,500	57,500	160,000
	국비	568,254	254,937	30,917	28,600	38,600	41,200	46,000	128,000
	지방비	268,648	209,901	7,315	6,718	7,238	7,725	8,625	21,126
	자부담	42,629	23,047	414	432	2,412	2,575	2,875	10,874

4. 성과목표 달성도

- 1단계('04~08) 160개 권역중 152권역 완공 (권역당 35억원 규모)
- '06년 계속사업 17개 권역('05~'06) 중 17개 권역 완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어촌종합개발사업(균특회계)	사업권역수	누계 사업권역수	권역	152	152	100

3-2-1-3(계속)	산촌종합개발사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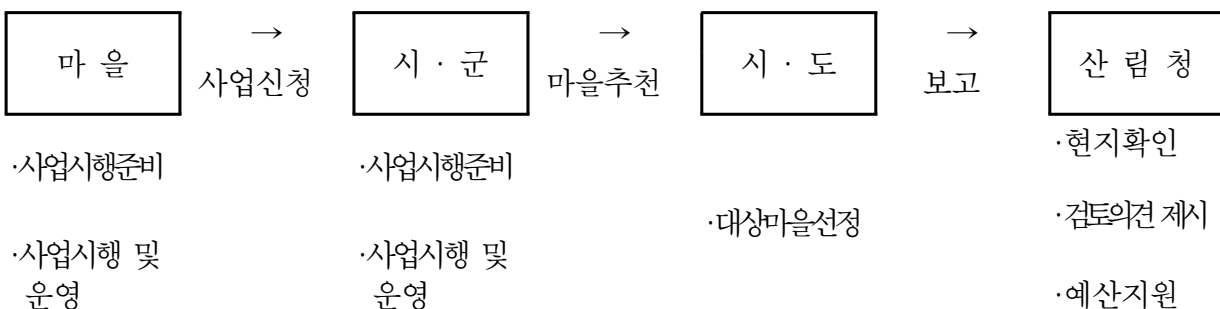
(산림청 / 산촌소득팀)

1. 사업목표

- 전국토의 46%를 차지하고 있는 산촌의 진흥과 활성화
- 산촌지역의 풍부한 산림 및 휴양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낙후된 산촌을 살기좋은 마을로 조성
-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고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지역으로 육성
- 사업추진 근거
 - 산림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제29조
 -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산어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3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1년, 마을조성 2년)
- 사업비 : 25,629백만원
- 사업규모 : 53개소 마을 (신규마을 18개소, 조성마을 35개소)
- 시행방법



○ 추진내용

- 소득기반조성 (지역특산물 소득사업)
- 생활환경개선 (취락구조개선,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마을안길 및 진입로정비)
- 임산소득원 개발, 산촌휴양기반조성 사업, 기타 S/W 관련사업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구 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45	53	66	71	73	60
신 규	15	18	33	20	20	20
조 성	30	35	33	51	53	40

4. 성과목표 달성도

- 2000(2005)년도 완료한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를 실시한 결과 81%로 성과목표를 달성함 (외부기관 용역 의뢰 결과)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산촌종합개발사업	산촌주민 만족도	$\{\sum \text{취득점수} / (100 \times \text{설문대상자수})\} \times 100$	%	76	81	107

3-2-2-1(계속)	소도읍육성사업
--------------------	----------------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팀)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사람을 모으게 하는 우수지로서의 도심지역 역할을 할 수 있는 읍지역 육성
 - 읍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
 - 특성화·전문화를 통한 읍지역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지역 거점지역으로 육성,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원근거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제11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3 ~ 2012년 (10년간)
- 총사업비 : 12조원 (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 국비·민자 등 8조)
- 대상지역 : 전국 194개 읍지역 ('01. 11. 9 지정·고시)

계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4	1	2	1	4	23	24	13	22	14	30	34	19	7

3. 연차별 추진계획

- '03년도 : 14개소도읍, 962억원 투자 ('03. 14개)
 - 재원 : 증액교부금 150, 특별교부세 150, 지방비 453, 기타209

- '04년도 : 36개 소도읍, 2,976억원 투자 ('03.14개+'04.22개)
 - 재원 : 증액교부금 300, 특별교부세 300, 지방비 1,237, 기타1,139
- '05년도 : 43개 소도읍, 3,245억원 투자 ('03.14개+'04.22개+'05.7개)
 - 재원 : 균특회계 437, 보통교부세 437, 지방비 1,303, 기타1,068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선정추진 66읍 4,012억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소도읍육성사업	사업소도읍수	총 사업 소도읍수(누계)	%	66	66	100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면소재지의 생활편의·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함으로써 농어촌주민들의 정주서비스기능의 충족과 농어촌지역의 중심공간으로 육성도모
- 사업추진 기본방향
 -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지역특색을 살린 발전 추구
 - 지역특성을 살린 핵심 테마 발굴로 명소화 추진
 - 면소재지 발전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효과 조기 구현
 - 타 부문에서 지원되는 관련 연관사업을 발굴하여 연계추진
 - 지자체의 능동적 조정을 통해 분산 추진되는 각 부처 사업·시책을 종합적·유기적 연계체계 구축
 - 중앙정부는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컨설팅 기능을 수행
 - 중앙정부, 지자체, 주민, 전문가 등의 협력적 파트너쉽 중시
 - 지역이 주체가 되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상향식 개발
 - 공모를 통하여 성공모델을 창출·확산할 수 있는 지역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 2017
- 총사업비 : 14,200억원 (국고 11,400, 지방비 2,800)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을 대상으로 200개권역 우선 추진 (투자계획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포함)
 - 권역당 3년간 70억원 범위내 지원 (국고80%, 지방비 20%)
- 추진현황 : 06년도 '07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침 결정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8조 및 농어촌정비법 제29조 내지 제42조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추진절차 : 예비계획서작성→ 사업신청(시·군, 시·도)→ 타당성조사(농림부)→ 사업대상지 선정(농림부)→ 기본계획안작성(시·군, 농촌공사)→ 기본계획수립(시·군, 시·도)→ 시행계획수립(시·군, 시·도)→ 시행시행(시·군)→ 준공(시·도)
 - 사업내용
 - 생활편익, 문화·복지, 경관개선, 상권활성화 등 거점지역으로 면소재지의 서비스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시설위주로 지원
 - 생활편익시설 : 가로정비, 공동주차시설, 승강장시설, 공공화장실정비 등
 - 문화·복지시설 : 다목적 복지회관, 건강관리시설, 보육시설, 운동·휴양시설 등
 - 경관개선시설 : 마을숲 및 녹지정비, 가로경관정비, 경관저해시설정비, 불량간판정비, 경관조형물 등
 - 지역상권시설 : 재래시장정비, 특산품홍보, 지역축제활성화 등
 - 기획운영S/W : 주민문화활동, 지역홍보, 시설물운영프로그램개발, 추진위원회 및 마을개발협의회 활성화지원 등

- 신규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 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리모델링 등 주민편익증진에 역점

3. 연차별 추진계획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계획의 일환으로 거점면소재지 중심마을개발 사업으로 '07~'17까지 200개소 착수 계획
 - 우선 사업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07~'10까지 시범사업을 실시 하고,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사업량을 확대

구 분	계	'05	'06	'07	'08	'09	'10이후
사업량(권역)	200	0	0	0	4	4	192
사업비	14,200	0	0	4	19	150	14,031
-국 고(80%)	11,400	0	0	4	16	120	11,264
-지방비(20%)	2,800	0	0	0	3	30	2,767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도에는 '07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획단계로 '06 년도에 기획을 완료하고 '07년부터 기본계획수립, '08년도부터 사업 시행 등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비예산과제에 해당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측정 불가

3-3-1-1(계속)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	---------------------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정책팀)

1. 사업목표

- 쾌적한 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생동하는 농어촌마을 조성
- 주거문화를 향상시켜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주의욕 고취
 - ※ 1976년부터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불량주택개량사업이 '95.12.29일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정으로 농어촌마을의 종합적인 주거환경개선 사업기반을 조성되어 본격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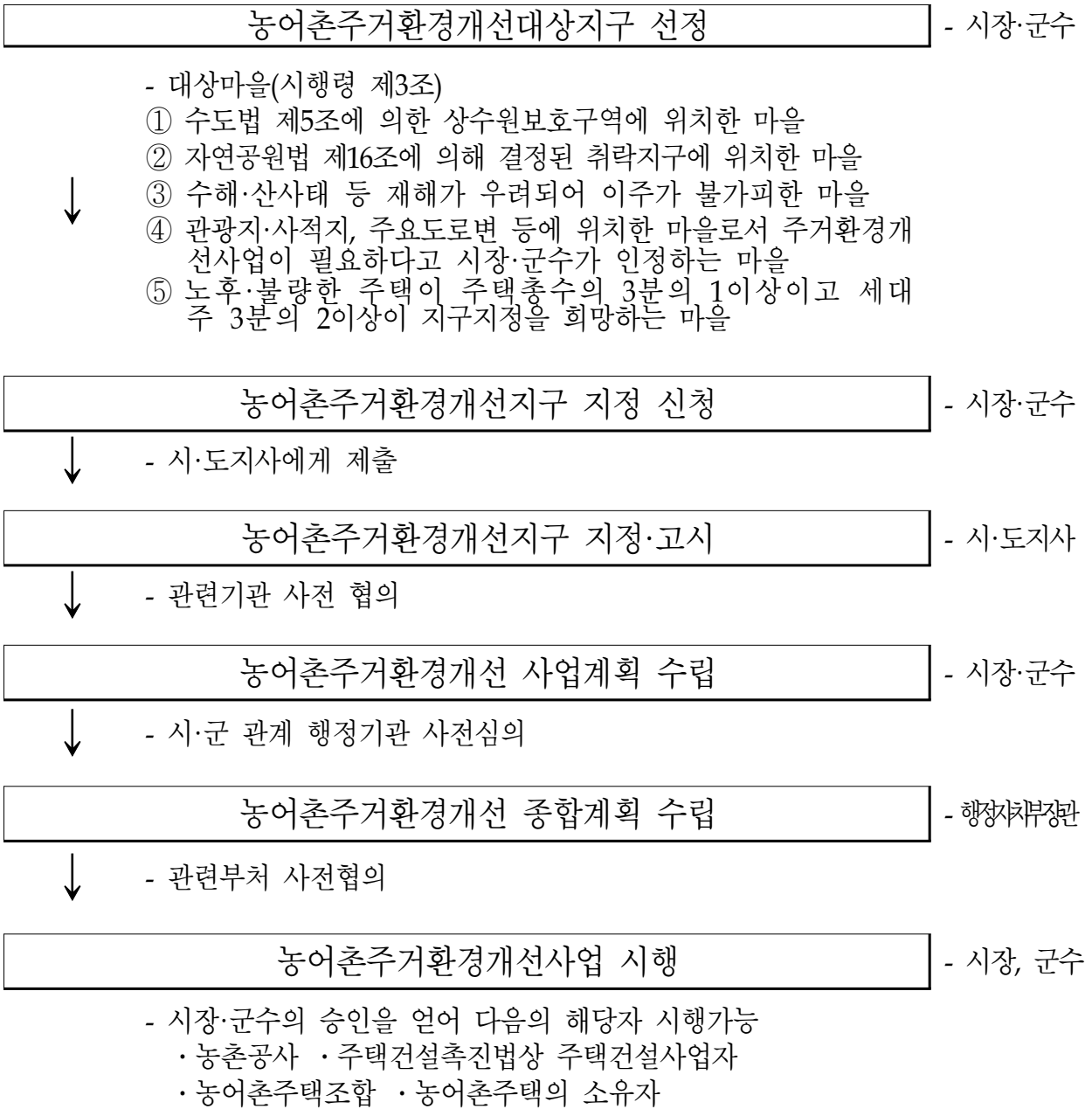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76 ~ 2014 (농특세 지원기한까지)
-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1976~2005 실적			2006 계획		비고 (지원기준)
	사업량	/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366,216		345,842	
주택개량	386,203	동	4,158,029	4,519	180,000	세대당 4천만원 용자
마을정비	6,664	마을	1,186,942	127	161,932	마을당 14억원 지원
빈집정비	59,128	동	21,245	6,617	3,910	동당 50~100만원 지원

○ 시행방법(사업지구 지정 및 추진절차)



○ 사 업 비 : 13조 3,437억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	비 고
주택개량	520,393 동	9,524,869	
마을정비	8,498 마을	3,780,674	
빈집경비	78,808 동	38,218	

○ 추진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1976~2005 실적		2006 계획		비 고 (지원기준)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5,366,216		345,842	
주택개량	386,203	동 4,158,029	4,519	180,000	세대당 4천만원 용자
마을정비	6,664	마을 1,186,942	127	161,932	마을당 14억원 지원
빈집정비	59,128	동 21,245	6,617	3,910	동당 50~100만원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2010년 이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0,308		512,000		512,000		512,000		5,745,395
주택개량	4,500	180,000	6,000	300,000	6,000	300,000	6,000	300,000	107,152	4,106,840
마을정비	315	165,461	150	210,000	150	210,000	150	210,000	942	1,636,339
빈집정비	6,596	4,847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467	2,216

4. 성과목표 달성도

- 5년 단위의 중기계획 및 2014년까지 장기계획에 따라 매년 예산을 확보하고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설정하여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주거환경개선						
○ 농어촌 주택개량 (농특세 10%)	주택개량수	총 주택개량수	천동	4.5	4.5	100
○ 농어촌 마을정비 (마을하수도 정비)	정비마을수	총 정비마을수	마을	127	127	
○ 농어촌 빈집정비	빈집정비수	총 빈집정비수	천동	6.6	6.6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1. 사업목표

- 자연친화적인 설계요소를 도입하여 농촌고유의 전통성과 주거공간의 합리성 및 쾌적성을 살린 농촌주택모델을 제시·보급함
- 농촌주민의 주생활수준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관광 증가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농촌진흥법 (제2조 2항, 농촌지도사업은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 농어촌 복합 생활공간 조성방안(농특위 대통령 보고자료, 2005. 12)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2020년 (총 17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5마을(마을당 5농가 이상), 350백만원(국비·지방비 각 50%)
- 시행방법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 추진내용
 - 농촌전통테마마을의 민박 가능 농가 또는 공동활용 체험장, 도·농교류가 활발한 일반마을 민박가능 농가 대상

- 환경친화적인 주거공간 구성요소를 적용한 농촌주택 리모델링
 - 도배, 장판 등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주택 내부 개선
 - 텃밭, 화단, 장독대, 정원, 생울타리, 건물외벽 녹화 등 옥외 공간 조성
- 최적의 평면형태, 벽체, 단열, 채광, 통풍 방법 및 기술 등 환경에 적합한 신기술 도입
- 부엌·방의 연결, 다용도 공간 설치 등 편리한 수납공간 배치
- 문화생활, 휴식공간, 손님맞이공간 설치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4~2006 : 농촌전통테마마을 민박 농가 중심으로 추진
- 2007~ : 농산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에 의거하여 농촌관광을 추진하는 농산어촌체험마을의 민박가능 농가까지 확대 적용
- 연차별 투자계획 ('05 ~'09)

(단위 : 백만원)

구 분	5개년(□□05 ~□□09) 계획					
	'05	'06	'07	'08	'09	소계
사업량	5	5	10	10	20	50
사업비	350	350	700	700	1,400	3,500
- 국 비	175	175	350	350	700	1,750
- 지방비	175	175	350	350	700	1,75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정도
 - 사업보급 목표치 100% 달성 (5개 마을 사업 완료)

- 사업 전 대비 마을당 민박소득 증가율이 669%로 169% 초과 달성됨
- 사업 시행부 반기별 민박소득 증가율

(단위 : 천원)

민박 수입	사업 전('05)	사업 후('06)		
		상반기	하반기	전 체
총 수입	19,960	41,020	112,374	153,394
마을당 평균	3,992	8,204	22,475	30,629
사업 전 대비 마을당 민박소득 증가율		106%	463%	669%

※ 산출근거 : {(사업 후 민박수입/사업 전 민박수입)×100} - 100

※ 순수민박농가(28호)만 대상으로 함(영농조합, 체험관은 제외)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민박 소득 증가율	{(사업 후 민박수입/사업전 민박수입)×100} - 100	%	500	669	134

3-3-2-1(계속)	면단위 생활용수개발사업
--------------------	---------------------

(환경부 / 수도권정책과)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근거 : 수도권법 제56조, 농어촌특별세사업 통합지침
- 사업목표 :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 '04년 35.2%에서 2007년 48.0%로 향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 2014
- 사업비 : 25,834억원 (국고 22,008억원), 국고 80% 지원
- 사업규모 : 면단위 농어촌지방상수도 553개소
- 추진내용 : 197개 시·군 면단위에 지방상수도 공급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까지	2006	2007	2006이후
사업량	553	197	29(113)	22(111)	305
총사업비	2,583,448	809,461	167,182	172,558	1,434,247
국고보조	2,200,818	781,628	133,586	138,038	1,147,566
지방비	382,630	27,833	33,596	34,520	286,681

4.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도 면단위 계획 상수도 보급률 37.7%을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면단위생활용수개발	상수도보급률	(당해연도 누계 수혜인원/면인구)×100	%	38	38	100

(농림부 / 농촌진흥과)

1. 사업목표

- 인구가 적고 분산되어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낙후지역에 수원공(암반관정)을 개발하고 이용시설(물탱크, 송·배수관로 등)을 설치하여 생활·농업용수 등 다목적용수를 공급

→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질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

※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 라목 및 사목에 근거하여 '94부터 시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4 ~ 2014 (21년간)
- 사업비 : 총 12,951억원 (국고 8,230, 지방비 4,721)
- 사업규모 : 전국 7,751개소 ('06까지 5,364개소 추진)
- 시행방법
 - 지원대상 : 면지역 자연마을중 자연수에 식수를 의존하거나, 간이(마을)상수도 시설지역으로 수질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부적정 하거나 식수가 부족한 마을
 - 지원조건 : 1개소당 170백만원 (균특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업대상지 선정절차 : 희망마을→ 면→ 시·군 → 시·도(확정)
 - 주요사업내용 : 수원공(암반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정수시설, 물탱크, 송·배수관로, 계량기, 소화전 등)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 추진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추진

- 제1차('93~'04) : 수혜가구 50호 이상의 마을 5,000개소를 대상으로 추진 (4,751개소 완료)

- 제2차('05~14) : 제1차 잔여사업량 및 제1차 사업대상에서 소외된 수혜가구 20~49호의 소규모 마을 3,000개소를 주대상으로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

구 분	목 표 (‘94~‘14)	‘04 까지	5개년계획(‘05~‘09)					‘10~‘14
			‘05	‘06	‘07	‘08	‘09	
○ 사 업 량	7,751개소	4,751	346	267	252	300	300	1,535
(급수인구)	1,330천명	1,032	47	34	27	27	27	136
○ 사 업 비 (억원)	12,651	7,851	589	441	428	510	510	2,322
- 국 비	8,230	4,150	471	353	342	408	408	2,098
- 지방비	4,721	3,701	118	88	86	102	102	524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촌 농업·생활용수공급 대책마을에 대한 용수공급율을 69.0%로 설정하였으며, 사업추진결과 용수공급율이 69.2%로 목표를 달성

- 사업추진 마을수 : 5,364개소 (사업대상 마을수 : 7,751개소)

- 용수공급율 = 사업추진 마을수/사업대상마을 수

$$= 5,364(\text{개소})/7,751(\text{개소}) \times 100(\%) = 69.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마을단위 생활용수개발	사업수혜인원수	당해연도 사업수혜인원수	%	69	69	100

3-3-2-3(계속)	면단위 하수도사업
-------------	-----------

(환경부 / 생활하수과)

1. 사업목표

- 면 지역에 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정비사업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수질오염방지는 물론 농어민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사업추진 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하수도법 제35조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등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 삶의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비 : '06년까지 3,722억원 (국고기준)
- 사업규모 : '05년까지 58개 처리장 건설지원 (완공 18개소)
- 시행방법 :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국고 70%, 지방비 30%)
 - '95년부터 농특세의 일부를 지방양여금으로 전입시켜 사업 추진
 -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05년부터 농특세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 추진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차집관거 설치

3. 연차별 추진계획

○ '06~'1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예산액(국고)	66,667	79,518	95,114	109,486	126,032

4. 성과목표 달성도

- '02년 : 목표/달성(24.5%/24.5%), 03년 : 목표/달성 (27.4%/27.4%),
- '04년 : 목표/달성(30.4%/31.9%), '05년 : 목표/달성 (34.5%/35.8%)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면단위 하수도	하수도보급률	(당해 누계 수혜인원 /면단위 인구수)×100	%	34.5	35.8	104

3-3-2-4(계속)	소 하 천 정 비 사 업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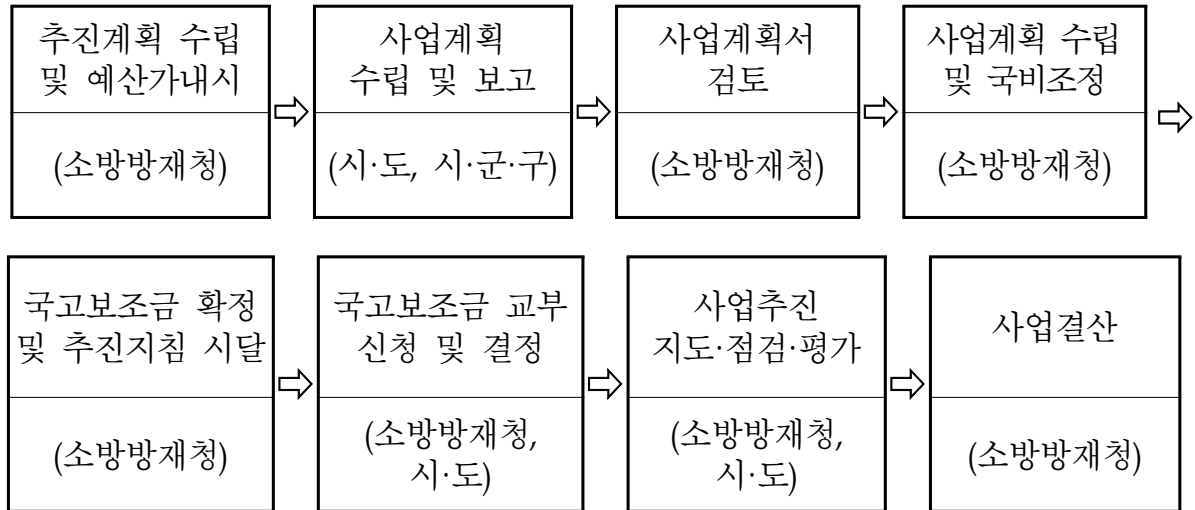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팀)

1. 사업목표

- 목표
 - 수해위험 소하천의 지속적인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 소득기반 조성과 생활환경개선
 - 치수·이수(治水·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정비로 친수환경조성
- 사업추진 근거
 - 소하천정비법 제6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소하천에 대한 정비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7조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소하천정비중기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8조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 시장·군수·구청장이 중기계획에 의거 매년 다음 연도의 소하천 정비시행계획 수립
 - 소하천정비법 제13조 (비용보조)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소하천의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음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11조 (재정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계획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하여야 함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5조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의 수립)

○ 사업추진 체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2016년
- 총사업비 : 11조 7,001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15,286억원)
- 사업규모 : 25,528km ('06년까지 정비연장 : 2,979km)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보조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Matching Fund)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 대상
 - 소하천의 미정비 연장 비율에 따라 군지역과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 주요 추진내용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경제성(B/C) 및 재해위험도 분석 등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를 정하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이 완료된 소하천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추진

- 호안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낮은 산과 접한 구간은 호안 미시공
- 소하천정비 구간내 수해원인이 되는 교량, 암거 등 시설물 정비
- 국가 정책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증·감액 조치 등의 인센티브제도 추진
- 원활한 사업추진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소하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km)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2009	2010	2011이후	비 고
계	117,001	15,286	1,186	1,418	1,632	1,878	95,601	
국비 및 양여금	57,262	6,405	593	709	816	939	47,800	
지방비	59,739	8,881	593	709	816	939	47,801	
정비량	35,815	13,266	237	283	326	375	21,328	

4. 성과목표 달성도

○ 소하천정비사업 계획 198km 정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소하천 정비사업	정비량	총 정비연장	km	198	311	157

(환경부 / 생활폐기물과)

1. 사업목표

- 농어촌지역의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군지역에 1개소 이상 설치
- 지원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제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52조)
 - ※ '94. 2 농림부 '농업정책심의회 농어촌생활여건개선분과위'에서 농어촌의 공업화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구 등으로 '95년부터 사업추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2014년 (20년)
- 총투자액 및 사업규모 : '06년까지 1,857억원 (130개소)
- 지원형태 : 지자체(郡) 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군)
- 지원조건 : 15억원 정액보조
 - 시설부지가 확보되고 기본설계 등이 완료되어 사업추진이 가능한 지역에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매립여유 용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지역을 선정·결정하고 2년 계속사업으로 추진
 - 매년 109억원씩 15개소에 지원 (신규사업 8, 계속사업 7개소)

4. 성과목표 달성도

- 지자체 자본보조 사업으로 1개소당 15억원씩 정액보조되며, 투입 예산에 대한 목표치 달성 (112개소 완공)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폐기물처리시설 지원	시설사업수	총 시설사업수(누계)	개소	112	112	100

3-3-2-6(계속)	폐비닐수거비 지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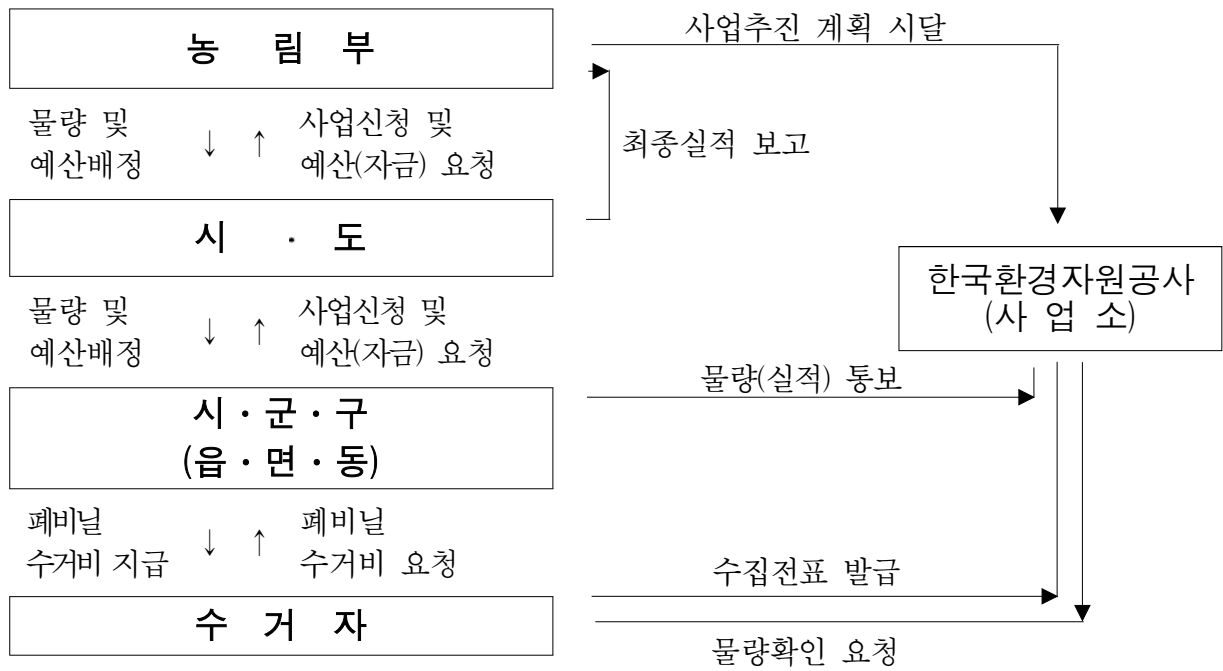
(농림부 / 친환경농업정책과)

1. 사업목표

- 목표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활성화를 통한 환경 오염방지 및 농촌환경 개선
 - 폐비닐 발생량을 줄이고 농업인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하여 '04년부터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원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 및 제39조
 - 제8조 : 국가 및 지자체는 농촌을 도시와 연계된 생활공간으로 발전시켜 농촌의 쾌적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 제39조 : 토양 등 환경의 보전을 위한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 주요내용 : 영농과정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폐비닐수거비 지원
 - 지자체의 폐비닐 수거 활성화 및 책임 강화 유도하기위해 지자체 에서 지원하는 『폐비닐 수거비』에 인센티브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사업기간 : 2004년 ~ 계속 (1년 단위사업)
- 총사업비 : '06년까지 기투자액 81억원 (270천톤)
 - '06 사업규모 : 100천톤, 3,000백만원 (30원/kg 정액지원, 국고 100%)
- 수행체계



3. 연차별 추진계획

- 폐비닐수거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자발적 수거 유도를 통한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개선 효과 제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과 제	사업량 (톤)	사 업 비					
		계	'06	'07	'08	'09	'10
○ 폐비닐수거비 지원	670	20,100	300	300	420	480	51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 '06년 목표치 : 폐비닐 수거율 63%
- '06년 사업성과('05년 기준) : (폐비닐 발생량 323천톤/수거량 214)×100 = 66%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촌폐비닐수거비지원	폐비닐수거율	(폐비닐수거량/폐비닐 발생량)×100	%	63	66	105

3-3-3-2(계속)	교통서비스 강화
-------------	----------

(건설교통부 / 대중교통팀)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농산어촌 지역버스 운행으로 인한 손실비용 지원,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으로 농산어촌 지역주민의 교통서비스 제고
- 추진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 제51조

2. 사업내용

-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체 : 시·도지사 (시장·군수에 재위임)
 - 사업절차 :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2에 의한 분권교부세 교부
- 사업 내용
 - 사업 시행대상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의거 벽지노선 등의 운행개선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 및 동법 제51조에의거 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
 - 사업 규모 : 전국 1,570여개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및 전국 1,423개 읍면 공영버스 구입 등 지원 (대당 1,800만원)
 - 사업기간
 - 벽지노선 손실보상 : '82년 ~ (국비지원은 '99년부터)
 - 공영버스 : '94년 ~
 - 시·도별 배분내역 ('06년)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부산	인천	광주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4,908	7	107	106	85	228	504	518	392	838	797	585	509	232
벽지보상	3,000	7	90	106	85	96	305	352	210	539	399	385	260	166
공영버스	1,908	-	17	-	-	132	199	166	182	299	398	200	249	66

3. 연차별 추진계획

- '04년 국비지원규모를 유지 ('05년부터 분권교부세로 지방이양)
- 연차별 목표

(단위 : 백만원)

구분	'04	'05	'06	'07	'08	'09
성과지표(목표)	4,908	4,908	4,908	4,908	4,908	4,908
성과지표(결과)	4,908	4,908	4,908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대비 100% ('05년과 동일 수준 분권교부금 배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교통서비스 강화						
○ 농산어촌버스운행노선 운영비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30	30	100
○ 농산어촌공영버스 구입 및 대폐차비 지원	지원금액	총 지원금액	억원	19	19	

3-3-3-3(계속)	국고여객선 건조
-------------	----------

(해양수산부 / 연안해운과)

1. 사업목표

- 낙도 보조항로에 여객선을 적기에 대체 투입하여 도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을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의 기초생활 여건을 개선
- 추진근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농어촌특별세 대상사업)
 -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 ~ 2014
- 사업비 : '06년까지 29척 대체, 323억원 (국고 100%)
- 사업규모 : 매년 낙도보조항로에 취항중인 국고여객선 1~2척 대체
- 시행방법 : 국고건조(지방청 수행)후 낙도보조항로 운영선사에 위탁관리
- 추진내용 : 전국 27개의 낙도 보조항로에 28척의 여객선이 운항중이며, 매년 1~2척의 노후선 또는 항로에 부적합한 여객선 대체 · 건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78 ~ '85 (새마을시리즈) : 총 21척 건조
 - '86 ~ '94 (수요발생시 수시건조) : 총 4척 건조

- '95 ~ 현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 총 29척 건조

(단위 : 백만원)

구분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예산	4,642	3,737	3,737	3,177	2,982	2,011	2,814	2,700	1,539	1,677	1,700	1,600
척수	5척	4척	3척	3척	3척	2척	2척	2척	1척	2척	1척	1척

<중기 재정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07예산	'08계획	'09계획	'10계획	'11계획	연평균 증가율 ('06-'10)
국고여객선 건조 (요구기준)	1,600 (증가율)	1,800 (12.0)	1,800 (0.0)	2,000 (11.1)	2,000 (0.0)	(5.7)

4. 성과목표 달성도

- 국고여객선 건조 계획 1척 대비 신조 여객선 취항 1척으로 성과 지표의 목표치 100%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국고여객선 건조	건조척수	당해연도 국고여객선 건조척수	척수	1	1	100

3-3-4-1(계속)	농촌 정주기반 확충사업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농촌지역(면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상·하수도, 주택정비, 문화복지 시설, 환경보전시설 등 기초생활시설을 종합 정비
 -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이주의향을 가진 도시민의 농촌 정주를 유도하여 농촌활력증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2013
- 사 업 비 : '05년 이후 19,000억원 (국고, '06년까지 기투자액 353,918)
 - ※ 지원조건 : 국고 100% ('07년 이후는 국고 80%, 지방비 20%로 추진)
- 사업규모
 - 정주권개발 대상 800개면(15개 자치구 포함)을 대상으로 매년 300개면(구)씩 추진
- 추진내용
 - '90~'04까지 1단계 770개면에 대한 지원을 완료 (지방양여금)
 - '05~'13까지 2단계 800개면을 대상으로 지원 (균특회계)
- 사업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5장(제29조 내지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5장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면, 억원)

구분	1단계	2단계			
		'05	'06	'07	'08~'13
기간	'09~'04				
사업량	(770)	338	300	300	(800)
사업비	23,350	1,639	1,900	1,921	13,540

4. 성과목표 달성도

- 본 사업의 주지표로 설정한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주민만족도 모두 당초 목표치를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사업시행수	총 사업시행 면수	면	300	300	100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정책팀)

1. 사업목표

- 추진근거 : 오지개발촉진법 ('88.12. 31 제정)
- 사업목표
 - 산업 및 생활기반시설 등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09 (5개년)
- 사 업 비 : 9,204억원 (국비 6,443, 지방비 2,761)
- 사업내용 : 3,382건
 - 소득 및 생산기반시설(영농단지 조성, 공동창고) : 1,461건
 - 생활환경개선 및 교통인프라(농로포장, 마을안길) : 1,611건
 - 문화복지시설(체육공원, 복지회관 등) : 310건
- 시행방법
 - 오지개발지구 지정고시 (시도지사 신청⇒행정자치부장관)
 - 사업계획수립 (시도지사 수립 ⇒ 행정자치부장관 제출 ⇒ 관계부처 협의 ⇒ 사업계획 확정)
 - 예산지원 (행정자치부)
 - 사업추진 (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 제2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사업 (2000~2004) 완료
-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계획 (2005~2009) 추진중

< 연도별 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건 수		7,614	1,124	1,363	1,392	1,359	1,223	1,153
사업비	계	10,485	1,471	1,852	1,913	2,090	1,588	1,571
	국 비	1,100	-	-	-	-	-	1,100
	양여금	5,983	1,037	1,313	1,347	1,462	824	-
	지방비	3,402	434	539	566	628	764	471

- 2006년도에는 1,083억원(국비)을 지원 486건의 사업을 추진 (행자부 소관)

4. 성과목표 달성도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오지개발촉진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건	486	486	100

3-3-4-3(계속)	도 서 종 합 개 발 사 업
-------------	-----------------

(행정자치부 / 지역발전정책팀)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지리적 여건으로 낙후된 도서지역에 대하여 주민 편의시설 및 소득증대 시설확충을 통한 도서민 정주여건 개선
- 추진근거 : 도서개발촉진법 (‘86.21.31 제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8 ~ 2007 (10개년)
- 사 업 비 : 10,717억원 (국비7,472, 지방비3,207, 민용자38)
- 사업내용 : 3,963건
 - 생활기반시설 (도로,급수,전기시설 등) : 1,819건
 - 생산기반시설 (소규모어항시설, 저장시설 등) : 1,879건
 - 문화·복지시설 등 (환경, 위생시설, 복지회관 등) : 265건
- 시행방법
 - 개발대상도서 지정고시 (시도지사 신청⇒행정자치부장관)
 - 사업계획수립 (시도지사 수립⇒행정자치부장관 제출⇒도서개발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총리보고후 확정)
 - 예산지원 (행정자치부)
 - 사업추진 (시·군·구)

3. 연차별 추진계획

○ '98~2006기간중 8,362억원 지원, 3,590건의 사업 추진

< 연도별 사업비 지원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사업비	계	8,362	445	496	686	834	901	1,214	1,214	1,286	1,286
	국비	5,884	309	346	484	584	631	850	850	900	900
	지방비	2,508	136	150	202	250	270	364	364	386	386
사업량	3,590	332	345	392	434	442	463	487	396	299	

4. 성과목표 달성도

○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되는 예산규모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 차질없이 추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도서종합개발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건	299	299	100

3-3-5-1(계속)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지원
--------------------	----------------------

(문화관광부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책과)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을 육성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국민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농어촌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목표
 - 2013년까지 농어촌공공도서관 총 260관 건립 목표
- 추진근거 및 배경
 -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등)
 - '새문화관광정책사업' ('98), 농어촌발전종합대책 ('94)
 - 「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2.8 / 문화관광부)
- 예산반영 추이

(단위 : 억원)

사업명	'02	'03	'04	'05	'06	'07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농어촌)	20	35	112	99	101	56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4년 ~ 2013년
- 총사업비 : 1,240억원 ('06년까지 지원예산액 102관 586억원)
- 사업규모 : 2013년까지 260개관 확충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총건립비의 80%, 최대 16억원)
- 지원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 방향 : 2013년까지 260개관 확충 ('06년말 현재 221개관 운영중)
- 매년 6개관, 96억원씩 국고 지원 계획
 - ※ 2005년도부터 균특회계로 편성됨에 따라, 지자체 실링내에서 자율 편성에 의해 대상사업 및 사업비 확정

(단위 : 억원, 관수)

구 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input type="checkbox"/> 도서관 확충 계획	221	227	233	239	245	251	257	260
<input type="checkbox"/> 국고 지원 계획								
- 지원 관수		11	6	6	6	6	3	
- 지원 액수		56	96	96	96	96	48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공공도서관건립지원	지원관 개소수	총 지원관개소수(누계)	개소	14	13	93

(문화관광부 / 생활체육팀)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전국 3,571 읍·면·동에 2개소씩 7,142개 조성
- 읍·면·동 소생활 단위에 주민이 원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전여가 선용과 건강을 증진하여 농어촌 등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및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0~
- 사업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 조건 : Matching Fund (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비 규모 : 개소당 40백만원 내외 (기금 50% 지원)
- 설치시설물 : 주민이 선호하는 간이 체육시설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 예산범위 내 지속적 추진
- 추진일정 : 연도별 120 ~ 150개소 설치

○ 사 업 비

(단위 : 억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2011	비고
개소	120	150	150	150	150	
금액	18	30	30	30	30	기금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 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체육시설 지원수	(당해연도 체육시설 지원수/최종목 표연도 체육시설 지원수)×100	%	72	72	100

(문화관광부 / 지역문화팀)

1. 사업목표

○ 사업목적

- 주민밀집지역 및 문화소외지역 주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문턱 낮은 생활공간을 조성해줌으로써 이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적 문화불균형 해소

○ 사업목표

- 도시저소득주민 및 농어민을 대상으로 소외된 지역의 문화향수 권을 제고하여 지방분권화 시대에 걸맞는 문화참여 유도
- 도농간 문화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의 유휴공간을 재활용하여 주민 맞춤형, 생활문화체험공간을 제공
- 기존의 문화공간과는 차별화된 참여자가 주인되는 소비자적 공간 조성으로 소외지역 문화활성화 도모

○ 추진근거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복권기금의 배분 및 용도) 제3항 4호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유산보존사업>
-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1항 (시책과 권장)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1 ~ 2006. 12

○ 사업비 : 10억원 (복권기금)

○ 사업규모 : 12개소 조성

- 사업형태 : 민간경상보조
- 사업수행주체 : 전국문화원연합회
- 사업 추진 내용
 - 유휴공간을 문화공간화로 리노베이션(90%) 및 프로그램 운영경비(1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간조성비(리모델링 및 장치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목표년도 기준 110여개 도달치

(단위 : 억원)

구분	'05년까지	'07년	'08년	'09년	계
개관공간수	28('04)+11('05)+12('06) =51개소	15개소	20개소	20개소	106개소
기금소요	50억+11억+10억=71억	20억	20억	20억	131억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생활친화적문화공간조성	공간 개관수	총 공간개관수	개소	10	12	120

(문화관광부 / 지역문화팀)

1. 사업목표

- 소외된 노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산적·가치지향적 실버문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자아실현 성취
 - 지방문화원을 실버문화거점센터로 정착
- 지역의 저소득층, 불우계층 등 문화소외 계층과 농어산촌 지역주민의 문화 향수권 확대를 위해 다양한 생활·문화체험 프로그램 개설 운영
 - 지역을 기반으로 한 우수 문화체험프로그램 지원 확대
-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사회에 대한 사회공감대 확대 및 지역 사회와의 연계 및 사회연착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 ~ 계속
- 사업주체 : 전국 224개 지방문화원 및 전국문화원연합회, 시·도지회
- 주요 프로그램
 - 실버프로그램 : 짬뽕 공예교실, 실버인형극단, 폐백음식 만들기 등
 - 문화체험 프로그램 : 향토생활문화 체험(향토음식 만들기 등), 전통 문화체험(템플스테이, 한옥체험 등), 예술체험
 - 결혼이주여성 : 지역문화 체험 및 언어교육 등
 - 새터민 : 전통혼례, 북한음식 체험 및 공연 등

- 사업대상
 - 땡땡땡! 실버문화학교 : 60세 이상 어르신
 - 향토문화체험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청소년, 복지시설 수용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
 -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 :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가족
 - 새터민 프로그램 : 새터민, 실향민, 지역민
- 사업비 : 12,096백만원 (04년 : 3,664백만원, 05년 : 3,432백만원, 06년 : 3,000백만원, 07년 : 2,000백만원)
- 시행절차 : 사업신청(문화관광부)→복권기금배정(문화예술위원회)→사업주관(전국문화원연합회)→사업시행 및 결과정산(지방문화원)→평가(복권위원회)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내용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7	2,000	200여개 프로그램 × 50명 × 200,0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10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100개
2008	3,000	400여개 프로그램 × 40명 × 187,5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15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250개
2009	3,500	500여개 프로그램 × 40명 × 175,0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300개
2010	3,500	500여개 프로그램 × 40명 × 175,0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300개
2011	3,500	500여개 프로그램 × 40명 × 175,000원 - 실버문화거점센터 특화 프로그램 200개 - 지역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 300개

4. 성과목표 달성도

- 총 155개 프로그램에 22,362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둠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기획의 방향 및 운영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지방문화체험프로그램운영	기획,실행,홍보, 네트워크					비계량 지표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문화과)

1. 사업목표

- 지자체가 추진하는 과학관 설립 등을 국가가 적극 지원하여 지방의 주민에게 과학문화 체험기회 확산
- 지역의 특성을 활용한 생활친화적인 과학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을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과학관육성법 제4조의 2 (과학관육성 기본계획 수립)
 - 과학관육성기본계획('03.12)에 의거 2012년까지 국·공·사립과학관 100개 육성 (지방테마과학관 26개 건립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년 ~ 계속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71,500백만원, 지방테마과학관 26개 건립 지원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지방과학관별 10억원 범위내에서 건립비용과 전시시설 비용의 50% 이내 지원
- 추진내용
 - 과학탐구관, 천체영상관, 생태체험관, 동식물 전시관 등 건립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지방 과학관이나 천문대가 없는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매년 4~5개 신규 테마과학관을 선정하여 지원

(단위 : 억원, 개)

구 분	'06	'07	'08	'09	'10
예 산	60	54	57	40	30
테마과학관	10개소 (신규7, 계속3)	10개소 (신규5, 계속5)	10개소 (신규5, 계속5)	8개소 (신규4, 계속4)	6개소 (신규3, 계속3)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건립수	건립지원	개소	5	5	100

3-3-5-7(계속)	산림박물관 건립
--------------------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팀)

1. 사업목표

- 산림사료의 영구적인 보존 및 전시와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인식제고 및 학술연구의 장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5년 ~ 계속
- 사업비 : 518억원 ('06년까지 447억원)
- 사업규모 : 10개소 ('08년까지 수목원 내 부대시설로 11개소 조성)
- 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 50%
- 추진내용
 - 산림사료·수목유전자원 표본 등 전시공간 확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산림박물관 건립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06예산	'07예산	'08계획	'09계획	'10계획	'11계획
산림박물관	31	43	28	-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 6개소 / 달성 6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산림박물관 건립	건립 개소수	총 건립개소수	개소	6	6	100

3-3-6-1(계속)	정보화마을 조성
-------------	----------

(행정자치부 / 서비스정보화팀)

1. 사업목표

- 초고속인터넷망 설치 등 정보이용환경 조성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 주민 정보화교육을 통한 정보생활화 및 지역 공동체 형성
- 지역 특산물 상거래 판매 지원을 통한 주민소득 증대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1년 ~ 2014년
- 총사업비 : 3,309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1,169억원)
- 사업규모 : 800여개 정보화마을 조성
- 시행방법 : Matching Fund(50% 자본보조)로 지자체와 공동으로 수행
- 조성현황 : 306개 정보화마을 조성
 - ※ 마을당 약 3억원 소요 (콘텐츠 구축 1억, 센터구축 1억, PC보급 1억)
- 사업 내용
 - 초고속인터넷망, 마을정보센터, 가구별 PC보급 등 정보이용환경 구축
 - 마을별 홈페이지 및 중앙 콘텐츠 구축·운영
 - 주민 정보화마인드 제고 및 정보화지도자 육성
 - 마을별 운영위원회 및 지원협의회 구성·운영
 - 언론매체, 홍보영상물 등을 통한 정보화마을 브랜드 구축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정보화마을 조성 계획 : 2014년까지 787개 정보화마을 조성

년 도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마을수	25 (6)	78 (3)	88 (11)	70	(19)	26 (15)	32 (21)	68 (34)	68 (34)	68 (34)	68 (34)	68 (34)	68 (30)	59 (30)

※ ()안은 시도자체에서 조성한 마을개수임.

4. 성과목표 달성도

○ 정보화마을 조성 실적 및 주민정보화교육 실적은 목표치 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정보화마을 조성	주민 정보화 교육실적	1년동안 전체교육시간/전체 PC보급 가구수	시간	6	6.5	108
	홈페이지 국민 참여도	정보화마을 전체 게시글수/전체마을수	건수	2,000	2,123	106

(정보통신부 / 정보문화팀)

1. 사업목표

- 농어촌 지역에 초고속인터넷망을 확대 구축하여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2. 사업내용

-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공동으로 '07년까지 50가구 미만 농어촌 지역 11만여 가구에 대해 유선 및 위성방식으로 초고속망 구축
 - 재원은 정부, 지자체, 통신사업자가 1:1:2 비율로 분담하고, 마을 규모, 이용희망 가구 수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구축
- 사업추진 근거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3. 연차별 추진계획

- '06년~'07년 2개년 사업으로 추진
 - '06년 총 354억원(정부예산 : 90억원)을 투입하여 유선망 구축
 - '07년 총 354억원(정부예산 : 90억원)을 투입하여 유선 및 위성망 구축

4. 성과목표 달성도

- 당초 '06년 53,000여 가구에 초고속망을 구축하여 홈 패스율 98%를 달성할 계획이었으나, 효율적 망 설계 및 장비 낙찰차액 활용등을 통해 75,990가구에 망을 구축하여 99%의 홈 패스율 달성

< 농어촌 초고속망 구축 추진 경과 >

구 분	구축 대상	전체 가구수	이용가능가구수	구축율	미구축가구
2002	전국 읍면지역	377만	308만	82%	69만
2003	100가구 이상 지역		323만	86%	54만
2004	50가구 이상 지역		330만	88%	47만
2005	50가구 이상 지역		358만	95%	19만
2006	50가구 이상 및 이하 지역		373만	99%	4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초고속인터넷이용환경 조성	초고속 인터넷 보급 율	초고속인터넷이용가구/ 전국농어촌지역가구	%	98	99	101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1. 사업목표

- 농업인의 홈페이지 운영능력 향상 및 농산물 전자상거래 기반 조성
- 농업경영체가 농가·생산관리, 자재구매관리, 판매·정산관리 등의 업무를 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함으로써 경영의 효율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사업비 : '06년 480백만원
- 사업규모 : (~'04) 1,706농가 홈페이지 구축,
('05~'06) 컨설팅 및 정보시스템구축(7개 법인), 컨설팅(14개 법인)
* 개별농가에서 농업경영체(농업법인 등) 중심 지원으로 체계 전환
- 지원형태 및 시행기관
 - 농업인홈페이지 운영활성화 지원(농림수산정보센터) : 국고 100%
 - 농업법인 정보시스템구축지원(시·군) : 국고40%, 지방비30%, 자부담30%
- 추진내용
 -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 개최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 농업법인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컨설팅 및 시스템개발, 워크샵개최, 우수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7	495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210(15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177, 위탁관리비 108
2008	620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300(20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12, 위탁관리비 108
2009	800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480(30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12, 위탁관리비 108
2010	960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640(40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12, 위탁관리비 108
2011	1,210	정보시스템 컨설팅 및 개발, 교육, 협의회 개최 등 890(45개소) 홈페이지 경진대회 및 운영관리, 홍보 등 212, 위탁관리비 108

4. 성과목표 달성도

- '06 농업법인 정보시스템 활용만족도 조사결과 (자체설문)
 - 사업 참여법인 84.2%, 지자체공무원 70.5%
 -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매출실적은 전년대비 감소했으나,
 - 전자상거래로 100% 상품매출을 올리는 홈페이지 농가도 존재
 - 관련 교육 확대로 농가의 운영능력 향상이 소득창출로 연결
- ※ 농업연수원의 농업경영정보화 리더육성과정 이수자는 교육을 통해 습득한 농업경영과 정보기술을 현장에 접목하여 교육이수전보다 농가 매출이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효과창출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업경영체 정보시스템 구축	만족도	자체 설문조사	점	65	77	118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과)

1. 사업목표

- 디지털 어촌구축 사업은 어촌의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정보화 어업인을 육성하여 어촌 정보격차 해소 및 수산업 발전 도모
- 사업추진 근거
 -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11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0년 ~ 계속
- 총사업비 : 200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106억원)
- 사업규모
 - 어업인 원격 영상교육 시스템 구축 및 유지 보수 : 31개소
 - 어업인 정보화 교육 : 100천명 ('10년까지)
 - 어촌 정보화 사랑방 개설·운영 : 50개소
 - 어업인 신기술 교육지원 시스템 개발 : 바다로21 구축
- 사업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및 지방청)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명, 개소)

구 분	'06까지	'07	'08	'09	'10	'11
· 어업인 정보화 교육	81천명	7	7	5	5	
· 원격영상시스템유지보수	31개소	31	33	33	33	33
· 신지식공유시스템 구축운영	92개소	92	92	92	92	92
· 어촌정보사랑방 개설	493개소	-	-	-	-	-
· 어업인 단문자서비스 제공	7,738명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정보사랑방 이용자 수 : 4,925명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디지털어촌구축사업	구축 개 소수	총 구축 개 소수	개소	50	50	100

3-3-7-1(계속)	농업인 정보화교육
-------------	-----------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1. 사업목표

- 정보화 취약계층인 농업인에 대하여 정보화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도·농간, 산업간 정보화격차 조기 해소
- 영농과 생활에 농업정보활용 및 경영정보화를 할 수 있는 농업인을 양성하여 정보화를 통한 효과적인 농업경영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경쟁력 제고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 ~ 계속
- 사업비 : '06년 2,501백만원
- 사업규모 : '06년까지 농업인 정보화교육 50만명 실시
- 시행방법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농협, 대학 등 교육전문기관
 - 지원방법 및 형태 : 국고 100% (단, 농협은 50%)
- 추진내용 : 기초·중급·전문교육 등 5개 집합교육 과정의 운영과 함께 현장방문 및 온라인교육 실시
 - 집합교육 : 컴퓨터·인터넷활용(단기), 농업정보활용(단기/중기), 농업경영정보화(중기/장기)
 - 방문교육 : 농업정보119요원, 이동버스
 - 온라인교육 : 각 단계별 교육에 상응하는 온라인콘텐츠 53개 구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근 거
2007	3,085	농업인 정보화교육(28천명) : 2,15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485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34천회) : 450
2008	3,7256	농업인 정보화교육(28천명) : 2,55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500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50천회) : 675
2009	3,990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2,70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520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57천회) : 770
2010	4,191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2,80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540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63천회) : 851
2011	4,211	농업인 정보화교육(30천명) : 2,800, 인건비 및 기관운영경비 등 : 540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등(65천회) : 871

※ 2007년부터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사업예산이 통합 편성됨

4. 성과목표 달성도

- 만족도(5점 척도) : (계획) 4.00 → (조사결과) 4.06
- '06년 농업인 정보화교육 56,882명 실시 (계획 대비 103.4%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업인정보화교육	정보화교육인원	총 교육인원	천명	55	56.8	103
	만족도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조사	점	4.0	4.06	

3-3-7-2(계속)	농업·농촌 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	-------------------------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1. 사업목표

- 정보화선도자로서 역량을 갖춘 정보화 우수자를 읍면지역에서 최소 1인 이상 지속 발굴·선정 (1,500명)
-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농촌에 거주하는 자를 정보화선도자로 지정하여, 상시적으로 인근 농업인에 대해 정보화교육 실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2 ~ 계속
- 사업비 : '06년 총 사업비 800백만원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규모
 - '06년 농가방문교육 30,400회
- 지원금액 및 형태 : 방문교육 활동비(2만원/회), 교육훈련비, 운영비 등
- 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각 도 및 시·군)
 - 정보화선도자 선정·관리·교육·홍보 등 사업추진 관리
- 사업수행 : 정보화선도자 (농업인)
 - 해당지역 농가방문 맞춤형교육 실시, 마을단위 정보화시설 운영담당 및 정보화리더 활동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년 도	금 액	산 출 내 역
2007	450	정보화선도자 312명, 농가방문교육 34,8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08	675	정보화선도자 350명, 농가방문교육 50,0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09	770	정보화선도자 385명, 농가방문교육 57,0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10	851	정보화선도자 420명, 농가방문교육 63,0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2011	871	정보화선도자 440명, 농가방문교육 65,000회 (국비 50%) - 정보화선도자 활동비, 운영비, 교재비, 교육훈련비

※ 2007년부터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예산으로 통합편성

4. 성과목표 달성도

- 정보화선도자 방문교육 만족도 94.5%
- '06년 계획 : 정보화선도자 261명, 방문교육 30,400회
→ 정보화선도자 265명 (4명 증가), 방문교육 29,858회 (98.2%)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업·농촌정보화선도자 선정 및 활용	정보화선도자 선정	선정인원	명	261	265	101

(농림부 / 정보화기획팀)

1. 사업목표

- 분산된 농업·농촌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가공하여 농업인이 영농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 농림정책·기술정보, 유통가격 등 농업정보와 건강관리, 농촌생활 등 농촌정보를 제공하여 농업인·소비자·학생 등의 이용률 제고
- 사업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28조 (농업 및 농촌지역 정보화)
 -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 제8조 3항 (농어민을 위한 정보내용물 제공 사업자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9 ~ 계속
- 사업비 : '06년 2,946백만원
- 사업규모 : 농업·농촌관련 모든 정보를 수집·생산·가공하여 제공
- 시행방법 : 민간경상보조, 국고 100%
- 추진내용
 - 농업정보서비스 및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연도	예산	추진내용
2007	2,946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정보자원 노후화에 따른 아웃소싱 추진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 시도 홈페이지 및 농업기술센터 등 유관기관 연계 확대
2008	4,5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2단계) 구축 및 운영비 · 이용자 편의위주의 기능개선 및 홍보강화
2009	5,0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3단계) 구축 및 운영비 · 지식정보이용 확대 및 농림유관기관 연계 지속 확대
2010	5,000	- 농업정보서비스 운영 및 농림 콘텐츠 개발 등 - 농림지식검색시스템 운영비
2011	5,000	· 지식정보이용 확대 및 농림유관기관 연계 지속 확대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에서 목표대비 성과를 평균 15% 이상 달성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어업 관련정보 제공 확대	아피스넷 일평균 이용자수	이용자수	명/일	8,800	11,364	129

※ 농림지식검색시스템은 1과 1혁신과제로 제출하여 우수사례로 선정

제4절 농산어촌형 복합산업 활성화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1. 사업목표

- 지역성과 전통성이 강하고 사업성이 있는 유무형의 향토자원을 조사·발굴 및 DB화하여 지역별 향토산업 육성에 활용
- 추진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1조(고유한 특산품, 문화, 기술을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 지원) 및 시행령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2009년 (4년간)
- 사업규모 및 사업비 : 매년 5개 시군, 11.3억 ('06년 3억원)
- 시행방법 : 시험연구비에 의한 자체 연구사업 수행
- 추진내용
 - 농어촌 지역별 향토자원 조사 : 매년 5개 시군
 - 지역 향토자원 중 산업화 유망자원 발굴 및 DB화
 - 지역적 여건에 정통한 향토·민속학자 등과 연계하여 향토자원 조사 및 평가
 - 향토자원 산업화 모델 개발 및 마케팅 전략 수립 등 향토산업 지원체계 구축
 - 조사대상 지자체의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 및 협조

3. 연차별 추진계획

- 매년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화 ('06~'09)
 - 지역 및 전통성이 강하고 부가가치성이 높은 자원 조사, 발굴

구 분	계	'06	'07	'08	'09	'10
사업량 (개소)	20	5	5	5	5	-
사업비 (단위:억원)	11.3	3	2.3	3	3	-

- 지역별 향토자원 우수사례 산업화·마케팅 전략 분석 ('06)
- 지역별 산업화 유망자원을 대상으로 산업화 지원모델 개발 ('07~'09)
 - 특성 있는 향토자원을 활용한 테마 발굴 및 상품 개발, 마케팅, 홍보 등 산업화 지원 모델 개발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향토자원의 조사 발굴 및 DB구축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자원 DB 구축수	농촌 어메니티 자원정보시스템에 등록된 DB수*	건	175	245	140

- 향토자원 조사·발굴 및 DB화 : 6지역 / 계획 5지역
 - 조사대상 지역 : 화천, 진천, 서천, 순창, 진도, 청도군
 - DB 구축 건수 : 향토자원 목록화(2,262종), 향토자원 유래, 가치, 특성 등 기본조사 : 464건, 향토자원 산업화 유망 자원 발굴 및 상세조사 : 245건

4-1-1-2(신규)**향토자원 소득화(향토산업육성) 사업**

(농림부 / 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지역사회의 향토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1차, 2차, 3차 산업을 육성하여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 ~ 2014년
- 사업비 : 1,000억원 (보조 1,000)
 - '07년 예산 미확보 사업추진이 안됨
- 사업규모 : 200개 향토자원 개발·연구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 사업 지원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3. 연차별 추진계획

- '07에는 19개 향토자원에 대한 향토산업육성(상품개발 및 연구), 그 이후 매년 30개씩 향토자원을 발굴 향토산업육성 추진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보조(균특)	19	30	30	30	30

○ 산출근거(보조금)

(단위 : 억원)

년 도	사업비	산 출 근 거
총사업비	1,000	
'07년	43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19개)
'08년	150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30개)
'09년	150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30개)
'10년	150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30개)
'11년	150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30개)
'10년이후	357	향토자원 상품개발·연구(500백만원*61개)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목표달성도 : 2006년도 19개 향토자원 발굴 및 사업준비를 기본계획서 수립 완료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향토 상품개발 및 연구	개발 연구된 총 향토 상품 수	개	19	19	100

4-1-2-0(계속)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	------------------------

(농림부 / 농촌사회과)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에 농공단지를 조성, 공장을 유치하여 농가소득증대와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84 ~ 2014년
- 사업비 : 10,094억원 (보조 6,770, 용자 3,324)
 - '06까지 6,620억원 (보조 3,962, 용자 2,658)지원
- 사업규모 : 400개소 ('06년까지 완료사업 물량 : 322개소)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용자 (사업시행 주체 : 시장·군수)
- 지원내용 : 농공단지 부지조성비등 지원
 - 지원조건 : 평당 정액지원

(단위 : 천원/평)

구 분	일 반 농어촌	추가지원 농 어 촌	우선지원 농 어 촌	전문단지 등	
				일 반 농어촌	추가·우선 농 어 촌
· 국비 보조	15	50	70	30	70
· 국비 용자	10	20	20	20	20
· 지방비 보조	5	10	10	10	10
합 계	30	80	100	50	100

* 용자 : 연리 5.0%(5년거치 10년균분상환), 잔여사업비는 지방비로 총당

3. 연차별 추진계획

○ '06~'10까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억원)

총사업비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10이후
계	6,620	314	400	500	500	1,760
-보조(균특)	3,962	314	350	400	400	1,344
-융자(농특)	2,658	-	50	100	100	416

○ 산출근거(보조금)

(단위 : 억원)

년도	조정액	산출근거
총사업비	10,094	
'06년까지	3,962	
2007	314	신규 10지구, 계속 12지구, 준공 6지구 보조소요액 반영(28지구)
2008	400	평당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2009	500	평당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2010	500	평당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2010이후	1,760	평당정액지원에 따른 보조소요액 반영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예산 100% 지원과 정부시책에 힘입어 사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
- '06년 목표달성도 : 99%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사업 조성 수	총 사업 조성 수	개소	10	8	80

(노동부 / 능력개발지원팀)

1. 사업목표

- 농·어업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전업지원을 위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취업능력 제고 및 생활안정 도모
 - ※ 필요성 및 기대효과
 - 경제위기 이후 구조적 실업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인 농·어업인에 대한 취업능력 제고 등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 1. 1 ~ 12. 31
- 사업비 및 규모 : 13억원, 864명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국고보조율 100%)
- 지원조건 : 훈련실시 과정에 대하여 훈련기관에는 훈련비 전액을,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을 출석한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	'07	'08	'09	'10
○ 훈련인원(명)	864	515	515	515	515
○ 예산(백만원)	1,344	1,190	1,300	1,300	1,3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2006.12월 현재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의 취업률은 40.6%(잠정치)로서 성과목표 35.7%를 4.9%p(13.7%) 초과 달성하였으며, 아울러 6개월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인 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고 판단됨.

※ 성과목표(취업률) : 35.7%

※ 사업실적(2006.12월 현재) : 40.6%(잠정치)로서 목표대비 113.7%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어업인 고용촉진훈련	취업률	$\frac{(\text{조기취업자 수} + \text{수료 후 취업자 수})}{(\text{조기취업자 수} + \text{수료인원})} \times 100$	%	35.7	40.6	114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친환경 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해 농업부가가치를 증진시키고, 농가의 소득향상 및 농촌지역의 공동체 형성·복원 등에 기여
-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에 맞는 휴양·체험공간으로 녹색농촌체험 마을을 조성하여 농촌체험관광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활용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2년 ~ 2017년
- 총사업비(국고) : 1,276억원 ('06년까지 기 투자액 : 190억원)
- 사업규모 및 조건 : 850개, 마을당 2억원 (국고 50%, 지방비 50%)
- 지원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5조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시장·군수 등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신청(마을) → 마을추천(시·군→시·도) → 대상 마을 선정(시·도) → 예산지원(농림부→시·도→시·군) → 사업시행(시·군) 및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마을)
- 지원내용 : 도시민 유치를 위해 필요한 마을공동의 농촌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 생활편의시설, 기타 S/W관련사업 등 조성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억원)

재원	'05까지	5개년('06~'10) 계획					
		'06	'07	'08	'09	'10	소 계
사업량	123	67	84	75	75	66	367
단가		-	-	-	-	-	
사업비	123	67	84	75	75	66	367
국비	123	67	84	75	75	66	367
- 보조	123	67	84	75	75	66	367
- 용자		-	-	-	-	-	-
지방비							
자부담 등							

4. 성과목표 달성도

-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방문객수 및 농촌관광매출액 '06년 목표치 대비 증가 달성
 - 마을 방문객수 ('06)목표치 1,266천명 대비 실측치 1,343천명
: 목표치 대비 106.0% 증가
 - 농촌관광매출액 ('06)목표치 140억원 대비 실측치 183억원
: 목표치 대비 130.7% 증가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총 방문객수	천명	1,266	1,343	118
	매출액	총 매출액	억원	140	183	

4-2-1-2(계속)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	--------------------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과)

1. 사업목표

- 농촌전통자원의 발굴 활용으로 도농간 상생적 교류를 촉진하여 농업인 소득 증대와 지역 활성화에 기여
-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 제13조 (농촌지도사업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비 보조),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제35조 (도시와농산어촌의교류확대)

2. 사업내용

- 연도별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비	지방비
'02	9	9	4.5	4.5
'03	18	27	13.5	13.5
'04	18	36	18	18
'05	21	40	20	20
'06	31	50	25.2	24.8
계	97마을	162	81.2	80.8

- ※ 개소 당 2억원(1억원씩 2년 지원), 국·지방비 각 50%
- 마을 고유의 테마 및 마을별 7거리 자원의 체계적 발굴
 - * 볼거리, 먹을거리, 쓸거리, 체험거리, 놀거리, 살거리, 알거리
- 하드웨어 측면 : 체험·학습시설, 편의시설, 마을환경 정비 등

- 소프트웨어 측면 : 마을 고유의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매뉴얼, 주민교육, 소득자원 개발, 홍보 및 마케팅

- 사업기간 : 2002 ~ 2009년
- 사업량 및 사업비 : 160마을 320억 (국·지방비 각 50%)
- 추진내용 : 사업비 지원('02~'06) : 97마을 162억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시군(센터) 당 1개소씩 160개 마을을 2009년까지 완료하고 사후관리에 중점

구 분	계	'06까지	'07예산	'08 이후
사업량	160	97	34	29
사업비	320	162	65	93

※ '07지원 : 65개소 ('06기존 31, '07신규 34개소) 65억원 (개소당 1억원)

- 지원마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개발 및 연계('07~'10)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 농촌체험지역네트워크, 농촌체험 교육농장 시범 등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촌전통 테마마을 조성	농외소득 증가율	사업지원 3년후 농외소득을 조사하여 사업전과 비교	%	300	387	129

- '02년도 농촌전통테마마을 사업이 시작된 이후 3년차 운영된 마을의 농외소득증가율을 조사한 결과 목표치를 초과달성함

(문화관광부 / 공간문화팀)

1. 사업목표

- 목적 및 기대효과
 - 마을의 문화·역사적 소재를 발굴·육성, 관광자원화 하여 문화와 환경이 아름답게 조화된 자생력 있고 지속가능한 마을을 조성하여 주민 소득 증대 등 정주민족도 제고
- 추진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4년~2009년 (1개 마을당 사업기간 : 2년)
- 사업비 : 총255억원 (관광기금 170억원, 지방비 85억원)
- 사업규모 : 총 12개 마을
- 시행방법 : 전국 9개도를 대상으로 각 도에 1개 마을 조성 원칙, 지자체 희망시도 단위 사업비(30억원)내에서 2개 마을 조성 허용
- 추진내용 : 12개 마을을 선정하여 문화역사마을 조성사업을 추진중
-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
- 보조사업자 : 전국문화원연합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문화원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3. 연차별 추진계획

○ 사업지원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사업지원(마을)		12	1	6	3	2	-	-
사업비	계	25,500	1,500	4,500	5,250	3,375	9,075	1,800
	기 금	17,000	1,000	3,000	3,500	2,250	6,050	1,200
	지방비	8,500	500	1,500	1,750	1,125	3,025	600

○ 추진계획 및 일정

연 도	추진계획 및 일정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지원(1월) • 안동 군자마을 준공(6월), 서귀포 법환마을 준공(12월)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광 효동마을, 원주 회촌마을, 강릉 학산마을, 서천 동자북마을, 통영 문어포마을 준공(6월) • 의령 입산마을, 정읍 원촌마을, 고창 사등마을 준공(12월)
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주 목계마을, 진천 보련마을 준공(1월)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문화역사마을 조성	주민만족도	리커트 5점척도 설문조사	%	50	60	120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1. 사업목표

- 사업추진 경위
 - WTO-DDA 출범 및 FTA협상 본격 개시 등 어업질서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촌을 활성화하고, 어촌의 자연경관, 전통문화, 독특한 생활환경을 관광 자원화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어업외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추진
- 사업추진 근거
 - 어촌·어항법 제49조 (사업비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지역개발사업계정의 세입·세출)
- 사업 목표
 - 어촌체험을 중심으로 어촌의 자연환경, 생활문화 등과 연계한 관광 기반 시설을 조성하여 어업인들의 어업외 소득 증대 및 어촌 경제 활성화 도모
 - 도시인들에게 어촌과의 교류확대 및 자연과 공생하는 휴식·여가 공간을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1)년 ~ ('13)년
- 사업비 : 703억원 ('06년까지 기투자액 : 497억원)
- 사업규모 : 112개마을 ('06년까지 완료 : 76개마을)

- 시행방법 : 지자체 보조 (국비50%, 지방비45%, 자담5%)
- 지원규모 : 개소당 500백만원(국비+지방비+자담)을 기준으로 증·감하되, 기본계획에 의한 투자금액 이내
- 추진내용 : 총사업비 703억원 중 '01년부터 '06년말까지 497억원 (국고 249억원)을 투자하여 112개마을 중 76개마을 지원
* '06년말까지 56개 어촌체험마을 조성 완료 (시범마을 9개 포함)
- 지원내용 : 관광안내소, 진입로, 주차장, 샤워장, 화장실 등 관광 기반시설 및 소프트웨어지원 (컨설팅, 실시설계비, 지도자교육훈련, 팸플릿 제작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어촌체험마을조성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부산	인천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001	9	1		2	1	1		1	1	1	1
2002	8	-	-	1	1	1	1	1	1	1	1
2003	11	1	1	1	1	-	1	2	1	2	1
2004	12	-	1	1	1	1	1	3	1	2	1
2005	18	-	1	2	1	3	1	5	2	2	1
2006	18		1	1	1	1		8	1	4	1
실적 소계	76	2	4	8	6	7	4	20	7	12	6
2007	11				1			6		4	
2008	12		1	1	1	2	1	2	1	1	2
2009	13			1	1	2	1	3	2	1	2
계획 소계	37	-	1	2	3	4	2	11	3	6	4
계	112	2	5	10	9	11	6	31	10	18	10

○ 년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추진실적							장래계획			
		'01시범 사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6까지	'07	'08	'09	
사업량	112	9	8	11	12	18	18	76	11	12	13	
사업비	계	70,322	9,422	4,000	5,500	6,000	11,000	13,800	49,722	8,100	6,000	6,500
	보 조	35,161	4,711	2,000	2,750	3,000	5,500	6,900	24,861	4,050	3,000	3,250
	지방비	31,645	4,240	1,800	2,475	2,700	4,950	6,210	22,375	3,645	2,700	5,925
	자부담	3,516	471	200	275	300	550	690	2,486	405	300	325

4. 성과목표 달성도

- '05년 마을당 평균방문객수는 149,828명으로 목표(96,525명)대비 155%달성 ('04년 대비 71%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어촌체험마을 조성	방문객수	방문객 총수/체험마을 수	천명	97	150	155

(해양수산부 / 어촌어항과)

1. 사업목표

- 주5일 근무제 실시 등으로 증가하는 어촌관광 수요에 대비하여 어업의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어촌관광 잠재력을 구비하고 있는 어촌에 대하여 환경을 재정비하여 도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어촌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어촌관광 대중화 유도
- 생산기반 위주의 소규모 지원에서 탈피, 고품격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 지역별 풍습과 전통문화 등을 연계 특성화된 어촌관광모델 제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 '09년
- 총사업비 : 4,372억원
- 사업규모 : 전국 24개소 (Ⅰ모델 7개소, Ⅱ모델 6개소, Ⅲ모델 11개소)
- 지원형태 및 조건 : 직접수행 또는 지자체 보조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추진주체 :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 (시·군·구)
- 사업내용 : 어촌어항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한 어촌관광 시설
 - 해양관광·레저용 선박 등의 계류시설, 바다낚시시설 및 부대시설
 - 어촌관광안내소, 주차장 등 관광객 편의시설
 - 지역특산품 판매장, 횃집 등 어업인들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소득시설
 - 그 밖에 어촌관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구분		사업 규모	연차별 투자계획(6개년)						비고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		473,176	835	14,296	26,600	63,705	151,461	207,863	24개소		
I 모델 (어촌어항 복합공간)	계	107,900	200	11,694	8,260	20,444	30,000	30,736	7개소		
	어항 (국가)	기본설계(국비) <어촌포함>	1,340	1 200	2 380	4 760				복합 공간	
		실시설계(국비) <어촌별도>	1,560	1	2 300	2 500	1 300			국가어 항(기본 설계 포함)	
		시 설 비 (국비)	70,000	1 -	(1) 11,014	2 6,000	1(2) 13,000	2(2) 20,000	(2) 19,986	국가어항	
	어촌 (지자체)	시 설 비	소계	35,000			1 1,000	3(1) 7,144	3(4) 16,106	(4) 10,750	
			국고	17,500			500	3,572	8,053	5,375	균특 회계
			지방비	17,500			500	3,572	8,053	5,375	
	계		295,691	500	2,000	11,500	25,500	100,000	153,691	6개소	
	II 모델 (다기능 종합어항)	어항 (국가)	기본설계(국비)	2,500	1 500	4 2,000					국가 어항
			실시설계(국비)	6,000			5 3,500				국가 어항
시설비(국비)			287,191			1 8,000	3(1) 25,500	(6) 100,000	(6) 153,691	국가 어항	
계		69,585	135	602	6,840	17,761	21,461	23,436	11개소		
III 모델 (어촌 관광단지)	어촌 (국가 + 지자체)	기본설계(국가)	1,035	2 135	2 200	4 400	3 300			관광 단지	
			홍보비(국가)	2,550		402	440	661	661	386	
		시 설 비 (지자 체)	소계	66,650			3 6,000	3(3) 16,800	5(4) 20,800	(5) 23,050	
			국고	33,325			3,000	8,400	10,400	11,525	균특회계
			지방비	33,325			3,000	8,400	10,400	11,525	

4. 성과목표 달성도

- 어촌관광통합모델 기본설계 7개소 완료
 - 제 I 모델(어촌어항복합공간) : 3개소(안목항, 맥전포항, 모슬포항)
 - 제Ⅲ모델(어촌관광단지) : 4개소(초지항, 방축항, 학림항, 법환항)
- 시설사업 7개항 175억원 추진 완료
 - I 모델 3개항(마량,정자,양포), II모델 1개항(대포항), III모델 3개항(대진,대송,방축)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어촌관광활성화사업	사업건수	총 사업건수	개소	7	7	100

(산림청 / 산림휴양정책팀, 산림환경보호팀)

1. 사업목표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사업목표

- '10년까지 자연휴양림 140개소 (국가 41, 지자체 79, 개인 20), 산림욕장 150개소(지자체) 조성

○ 추진근거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내지 제22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 「산림기본법」 제4조 및 제20조

< 수목원 조성 >

- 식물유전자원의 현지의 보전기능을 강화하고 식물유전자원의 수집·보전·증식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장으로 제공

2. 사업내용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사업기간 : 1988 ~ 2010
- 총사업비 : 5,656, 산림욕장 : 4억 (국가 50%, 지자체 50%)

< 수목원 조성 >

- 사업기간 : 1992년 ~ 계속
- 사 업 비 : 1,368억원 ('06년까지 686억원)

- 사업규모 : 22개소 (시·도별 1개소 이상 연차적으로 조성)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 추진내용
 - 식물유전자원의 수집·증식·보전·관리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목원조성 확대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연차별 추진내용

산림휴양시설	'06년까지	'07년	'08년	'09년	'10년
자연휴양림	107개소	115개소	124개소	133개소	140개소
국유 자연휴양림	34	2	2	2	1
공유 자연휴양림	55	6	6	6	6
사유 자연휴양림	18		1	1	-
산림욕장	108개소	14개소	10개소	9개소	9개소

- 사업비

(단위 : 억원)

산림휴양시설조성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책특)국유 자연휴양림조성	214	211	211	211	211
(균특)공유 자연휴양림조성	176	281	281	281	281

< 수목원 조성 >

구 분	'06예산	'07예산	'08계획	'09계획	'10계획	'11계획
공립수목원	125	122	140	140	140	140

4. 성과목표 달성도

< 산림휴양공간 조성 >

○ 자연휴양림 고객만족도 조사

- '04년 72점, '05년 75점 , '06년 88점 달성

< 수목원 조성 >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목표 20개소 / 달성 20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산림휴양 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 산림휴양 공간 조성	휴양만족도	· 취득점수10-50 · $\{\sum \text{취득점수} / (70 \times \text{설문대상자수})\}$ ×100	점	75	88	111
○ 수목원 조성	조성수	총 조성수	개소	20	20	100

(문화관광부 / 관광자원팀)

1. 사업목표

○ 사업목표('06년도)

- 문화관광 : 15개 시·도 문화관광자원개발 131개 사업 1,030억원 지원
- 생태녹색관광 : 7개 도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5개 사업 130억원 지원

○ 추진근거 및 배경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관광진흥법 제46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및 제71조(재정지원)
- 관광진흥5개년계획('99.1) :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 발굴
- 관광진흥5개년계획('04.3) : 지역밀착형 특화 관광개발 및 지역간 연계 개발 추진
- 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 (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국민관광수요 급증과 관광시장 다변화에 따라 1999년부터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 생태·녹색관광이 새로운 형태의 관광 유형으로 대두되고 관광수요가 증대됨에 따라 2003년부터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추진
-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18대과제('03.12) : 다양한 관광자원 및 프로그램 개발

2. 사업내용

- 사업지원대상 : 예산확정된 각 지자체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 사업기간 : 1999년(생태 2003년) ~ 단년도 계속사업

- 사업규모
 - 문화관광자원 : 15개 시·도 131개 사업 102,967백만원 지원
 - 생태녹색관광자원 : 7개 도 26개 사업 13,224백만원 지원
-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50% 매칭 정율보조)
- 지원조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사업타당성 검토,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한 사업
- 사업주요내용 : 진입로, 주차장, 관광시설 등 관광인프라 조성지원

3. 연차별 예산반영

(단위 : 억원)

사업명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222	276	514	651	1,004	1,031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	50	63	102	130	133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비고	현재지표 (2006)	1차목표 (2007)	2차목표 (2008)	최종목표 (2009)
○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건수(개소)	129개 사업	120개 사업	132개 사업	138개 사업
○ 비율	98%	98%	98%	98%
○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지원건수(개소)	25개 사업	25개 사업	28개 사업	32개 사업
○ 비율	96%	96%	93%	91%

○ '06년 사업 추진실적

- 문화관광자원 : 15개 시·도 129개 사업 100,384백만원 지원
- 생태녹색관광자원 : 7개 도 25개 사업 12,995백만원 지원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사업	개발건수	총 개발건수	건수	157	154	98

4-2-2-1(계속)	농산어촌 체험박람회 개최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관광박람회를 개최하여 도시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전개하여 농촌을 이해하고 찾아가는 사회적인 붐 조성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5년 ~ '09년
- 지원조건 : 행사당 10억원 (국고 100%), 개최주기 격년
 - * '05년 695백만원 (마사회기금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지원내용 : 전시기획, 농산어촌마을체험관 등 전시부스마련, 참가 마을 및 기관·업체 모집, 홍보·마케팅 등 행사진행·총괄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1회('05)	2회('06~'07)	3회('08~'09)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3	1	1	1
사업비	계	2,405	695	710	1,000
	보 조	1,630	-	630	1,000
	기금 등	775	695	80	-

4. 성과목표 달성도

- '2007 도농교류페스티벌'은 아직 미개최로 달성도는 평가할수 없음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의 지속적인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다양한 홍보·이벤트를 강화하여 농산어촌체험관광 수요 창출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 이후 (계속)
- 재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도농교류센터,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사후 보고(도농교류센터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사업내용
 - 신문, TV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농산어촌체험마을의 홍보·마케팅
 -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개최 및 1도1촌우수마을 지정
 - 그린맵 제작·배포,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 초등학교 교사·학생 농촌체험행사, 나의농촌문화체험기 등 공모전
 - 농촌관광포털사이트 운영, 농산어촌체험마을 보험가입 홍보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등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 등	소계		
2006	800	-	-	-	800	-	-
2007	1,090	-	-	-	1,090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녹색농촌체험마을 마을방문객수 및 농촌관광매출액 '06년 목표치 600천명 대비 실측치 1,343천명 (목표치 대비 223.8% 증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체험관광 홍보	방문객수	녹색농촌체험마을 총 방문객수	만명	60	134	224

4-2-3-0(계속)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중앙·지방·민간 부분과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 농촌체험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의 사후평가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운영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년 부터
- 재원형태 : 국고 100%
- 사업시행주체 : 농림부,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 추진내용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지자체장이 주도하는 그린포럼, 1인1촌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평가회 및 사후지원·관리
- 추진체계
 -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 운영(비예산) : 부처합동으로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통합지침('04.11)'을 마련, 농림부가 주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 및 실무협의회 운영
 - 기타 : 사업기본계획수립(농림부)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승인(도농교류센터, 농림부)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도농교류센터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3.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06	'07
그린포럼	18	20
1인1촌 전문가지원	160	197
사업 연찬회	20	20

* 관계부처 농산어촌체험마을지원사업 실무협의회 운영 : 비예산

4. 성과목표 달성도

- '전문가 컨설팅 횟수'는 '06년에 520회를 목표로 하여, '06.12월까지 540회를 실시하여 당초 목표의 103.8%를 달성 (3.8% 초과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중앙·지방·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사후평가·관리체계 구축	민간전문가 컨설팅 횟수	1인1촌 전문가지원시스템에 참여하는 전문가컨설팅 횟수	회	520	540	104

(문화관광부 / 관광산업팀)

1. 사업목표

- 지역축제 중 관광상품성이 있는 축제를 국제적인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친환경, 향토특산물 등을 활용한 관광축제 활성화를 통해 농어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한국을 상징하는 대표축제 집중 육성, 유망축제 발굴 지원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98 ~ 계속
- 사업비 : 3,500백만원 (2006년도)
- 사업규모 : 문화관광축제 52개 선정, 지원
- 시행방법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조건 : 정율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 50%, 지방비 50%)
 - 사업절차 : 문화관광축제 추진계획 수립 시달(문화부→시·도) → 사업계획수립(축제추진주체) → 사업신청(시·군·구) → 문화관광축제 추천(시·도→문화관광부) →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등급 결정(문화부) → 예산지원(문화부→시·도→시·군·구) → 사업시행 및 문화관광축제 개최(시·군·구) → 사업평가(문화부 등) → 평가결과 다음해 선정시 피드백

○ 추진내용

-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 총 52개 축제, 3,500백만원
 - 최우수 축제 : 5개축제, 각 300백만원
 - 우수축제 : 9개축제, 각 150백만원
 - 유망축제 : 13개축제, 각 50백만원
 - 예비축제 : 25개축제, 예산지원없이 행정지원
- 축제 테마 박람회 개최 지원 : 300백만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기본방향 : 관광상품성이 뛰어난 축제에 대한 문화관광축제 선정, 지원 및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제적인 축제 10개 집중 육성 지원
- 연차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07예산	'08요구	'09요구	'10요구	'11요구
4,000	6,350	8,600	8,600	8,60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목표 달성도 : 목표치 달성 (관광객 35.2백만명, 지역경제 파급 효과 1조 3천억원)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향토문화관광축제 육성	관람객수	1개축제당 관람객수×45개축제 (문화관광 축제)	백만명	35	35.2	101

(농림부 / 정주지원과)

1. 사업목표

-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공익적 기능을 증진함으로써 도농교류 및 지역사회의 활성화 도모
 - 지자체와 마을간 협약을 체결하고, 농지에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당해 농업인에게 소득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
 - 적극적인 농촌경관 형성시책을 통해 농촌의 공익적기능을 제고함으로써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고 농촌지역사회의 활성화를 도모 (그린투어리즘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거양)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 ~ 2013
 - 2005~2007기간중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추진방안 보완
- 총사업비 : 481억원 (국고 337, 지방비 144)
 - 7,000ha, 170만원/ha (국고 70%, 지방비 30%) 지원
- 추진현황 : '06년 시범사업으로 470ha 신규 착수
- 사업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 사업추진주체 : 시장·군수, 농업인
- 사업추진절차 : 대상지역 신청(주민→시·군→시·도→농림부)→ 대상지역 선정(농림부→시·도→시·군)→경관보전협약 체결(지자체와 마을간)→이행상황점검 및 보조금 지급(시·군)

○ 사업내용

- 대상지역 : 읍·면지역 및 자치구의 준농촌지역내의 농지로서, 경관작물을 식재할 면적이 최소 1ha이상 집단화되고 마을단위로 3ha 이상인 지역
- 사업내용 : 협약에 따라 경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직불금 지급
 - * 경관작물 : 농촌경관유지 및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작물(유채, 메밀,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 다년생작물, 곡물, 목본류, 사료 및 녹비작물은 원칙적으로 제외
 - 직 불 금 : 170천원/10a (국고 70%, 지방비 30%)

3. 연차별 추진계획

(금액 : 억원)

구 분		목 표	'05까지	'06	'07	'08~'13	비 고
사 업 량 (ha)		7,000	470	470	800	7,000	
사업비	계	481	8	8	14	451	
	국 고	337	6	6	10	315	
	지방비	144	2	2	4	135	

4. 성과목표 달성도

○ '06.11월 기간중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

-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은 효석문화제 기간('06.9.8~17)중 75만명 ('05 : 57만명) 방문, 축제기간 전후 1달간 100만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되어 1인당 1만원정도 소비했을 경우 100억원의 경제적 효과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는 등 효석문화제와 연계하여 지역축제를 통한 도농교류 증대에 기여함

- 고창군 공음면은 메밀축제 기간중 20만명 방문, 부안면은 국화꽃 축제 기간중 15만명이 방문, 총 35억원의 지역소득효과 발생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직천리는 11.6ha에 코스모스 및 메밀을 식재하여 꽃을 즐기러 온 방문객이 20만명에 달하고, 봉화군 소천면 임기리는 18ha에 메밀을 식재하여 전에는 방문객이 없었으나 '06년도에는 8,000명이 방문하는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기여
 - 마을공동으로 지역축제 등을 유치함으로써 지역공동체가 부활되는 등 긍정적인 점이 많음
- '06.12월~'07.1 기간중 실시한 농업인 설문조사 결과
- 소득효과에 대하여는 전체 응답자의 83%가, 농촌관광기여도를 묻는 질문에는 96%가, 경관향상효과에 대하여는 94%가 만족도를 표시하여 전체적인 만족도는 91%로 추정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경관보전 직불제	농업인 및 도시민 만족도	현지조사 및 설문조사	%	80	91	114

(농촌진흥청 / 농촌자원개발연구소 농촌환경자원과)

1. 사업목표

- 농촌의 생활권역 및 자원권역을 고려한 농촌지역종합개발 및 어메니티 자원을 농가소득과 연계한 자원화·소득화 기술 지원
 - 농촌어메니티 계획 모델 개발(9유형) 및 보급
- 사업추진 근거
 - 농업·농촌기본법 제 14조 및 제 8조(농촌지역개발 및 농촌복지 증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2009년 (4년간)
- 사업량 : 9개 계획모델 개발 ('06년 3유형)
- 사업비 : 19.8억원 ('06년 4억원)
- 시행방법 : 자체 수행
- 추진내용
 - 농촌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 9유형
 - 농촌어메니티 자원 기반형 공간정비시스템 개발
 - 개발 모델의 현장보급을 위한 컨설팅 체계 개발
 - 대국민 홍보 및 현장지원을 위한 자원의 시각화 기법 개발

3.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내용	'06년	'07년	'08년	'09년
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개발				
개발 모델의 현장보급				
공간정비시스템 개발				
컨설팅체계 개발				
홍보 및 3D시각화 기법 개발				
사업비(19.8억원)	4	3.4	6.2	6.2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사업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농촌어메니티 계획 모델 개발 및 보급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모델 개발 실적	농촌진흥청 결과활용심의 결과 성과물로 채택된 건수	건	3	3	100

○ 농촌어메니티 자원활용모델 개발 유형

- 공간계획, 경관계획, 자원활용프로그램 등 3유형

- 자연생태형 : 자연생태와 수려한 경관을 특성화 (화천군 동촌권역)
- 역사문화형 :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마케팅사업 전개 (강화 읍내권역)
- 농업문화형 : 농업문화의 가치(삶의 터전, 교육 등) 실현 (강화 외포권역)

(농림부 / 정주지원과)

1. 사업목표

- 농산어촌지역에 적합한 경관주택을 발굴·보급함으로써 농산어촌의 주택이 농산어촌 경관의 유지·개선에 기여하도록 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사업비용 : 1,650백만원
- 사업근거 : 삶의질향상법 제30조, 삶의질향상법시행령 제12조
- 사업추진주체 : 한국농촌공사
- 사업내용
 - 농산어촌 경관주택(전원마을) 모델하우스 건립·전시를 통한 농산어촌 경관주택의 홍보·보급 추진
 - 농어촌연구원내 3천평 규모의 농산어촌 경관주택 모델하우스 조성
- 2006 한국농촌건축대전을 통하여 농산어촌 경관주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은퇴도시민, 농산어촌지역 주민 등 수요자의 관심 제고
 - 국내외 건축가들의 지명초청전 및 작품설명회, 일반인대상 농산어촌 경관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농산어촌 경관주택관련 심포지움 실시

3. 연차별 추진계획

○ 2007 한국농촌건축대전

구 분	'07년도												'08년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	2/4	3/4	4/4
○ 운영위원회 구성, 주제 및 설계지침 확정	■															
○ 일반공모 공고, 초청건축가 선정 및 작품 의뢰				■												
○ 일반공모 작품 심사 및 입상작 발표 및 전시회									■							
○ 대전결과와 사업화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토론회											■					
○ 한국농촌건축대전 지속 시행													■			

○ 전원마을 모델하우스

구 분	'07년도												'08년도				'09~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4	2/4	3/4	4/4	
○ 추가 주택2동 건축 및 공동 화장실 설치	■																
○ 전원생활체험단 교육				■									■				■
○ 행사 및 유지관리	■												■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목표달성도 : 초청건축가 작품 5점, 일반공모 수상작 25점을 발굴하여 기본계획서 수립 완료 목표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초정불가

4-3-4-0(계속)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	------------------

(산림청 / 산림환경보호팀)

1. 사업목표

- 자생식물자원의 현지내 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숲 복원기법 개발 및 산림생태계에 대한 연구와 함께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공간으로 제공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99년 ~ 계속
- 사업비 : 1,280억원 ('06년까지 443억원)
- 사업규모 : 자생식물단지 조성 2개소, 생태숲 21개소
- 시행방법
 -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조건 : 국고보조 50%
- 추진내용
 - 지역별 특색있는 향토 자생식물 식재 및 자연림의 원식생 복원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 확대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06결산	'07예산	'08예산	'09계획	'10계획	'11계획
·자생식물식재 및 생태숲 조성	128	147	150	175	180	185

4. 성과목표 달성도

- 자생식물단지 : 목표 2개소 / 달성 2개소
- 자생식물단지 : 목표 21개소 / 달성 21개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조성개소	총 조성개소수	개소	23	23	100

4-3-5-0(계속)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	------------------------

(농림부 / 정주지원과)

1. 사업목표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정립 및 정책수단마련을 위한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 수립
 - 높은 국민적 관심, 농촌의 현황 및 국내외 정책동향 등을 고려할 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필요
- 경관법 제정(건교부) 추진관련 관계부처합동 경관계획수립기준 제정
 -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 필요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6년~
- 사업비용 : 비 예산사업
- 사업근거 : 삶의질향상법 제30조, 삶의질향상법시행령 제12조
- 사업추진주체 : 농림부, 농진청, 산림청, 농경연, 농촌공사 등
- 사업내용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 종합대책 및 로드맵 마련
 - 농촌경관관련 관계기관과 공동작업팀을 구성하여 각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 이를 종합하여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시안)」 마련
 -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시안)’은 관계기관 협의회, 전문가 협의회, 세미나 등을 통해 보완 후 확정
 - 경관법 제정(건교부) 추진관련 관계부처합동 경관계획수립기준 제정
 - 건교부 주관으로 추진중인 ‘경관계획수립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우리부(안)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건교부 주관 연구용역에 적극 참여, 우리부 검토의견 반영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업무	5개년 계획('06~'10)					비고
	'06	'07	'08	'09	'10	
○종합대책 및 로드맵 마련		■				
○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 연구 추진		■				
○건교부주관 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 연구 공동 추진		■				
○선농촌경관계획 체계 구축			■	■		
○후농촌지역개발사업 시행				■	■	

4. 성과목표 달성도

-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해 「농촌경관 종합대책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관계기관 공동으로 공동작업팀을 구성·운영하는 등 추진 체계, 추진일정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회, 세미나 등을 거쳐 의견 수렴 후 「농촌경관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건교부주관 관계부처합동 경관계획수립기준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은 현재 진행중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농산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측정 불가

(농림부 / 농지과)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및 필요성

- 농업생산 및 정주여건이 불리한 중산간 농촌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 소득보전 및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
- 농촌지역 특히, 조건불리지역 지원으로 국가균형발전 도모

○ 사업추진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
- 농업·농촌기본법 제39조 5호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40조
-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2. 사업내용

- 조건불리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경지율 22%미만+경사도 14%이상 면적이 50%이상 지역 및 도서개발 촉진법상 도서)내의 농지 및 초지 경작농업인이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 및 마을 활성화 실천 등 지원요건을 이행할 경우 보조금 지급
 - 마을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의 일부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 (사업비의 30% 이상)
 - 농업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농지관리의무 등을 부과하고, 마을협약 및 기금조성 등 마을중심으로 운영

- 조건불리지역 구분지표인 경지율(22%미만)과 경사도(14%이상 면적이 50%이상) 등을 적용하여 법정리를 선정
- 대상농지 : 밭, 과수원, 초지
- 지원단가 : 밭·과수원 400천원/ha, 초지 200천원/ha(국고 70%, 지방비 30%)
 - 지원요건 : 실경작자가 지급 대상지 해당 읍·면 및 연접 법정리에 거주
- 사업기간 : 2004년 ~
- 사업비('06) 및 규모 : 51,378백만원, 187천ha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	2009
사 업 량		31천ha	187천ha	187천ha	187천ha	187천ha
합 계		15,984	74,325	74,325	74,325	74,325
	소 계	12,400	73,397	73,397	73,397	73,397
사업비	보조금	8,680	51,378	51,378	51,378	51,378
	지방비	3,720	22,019	22,019	22,019	22,019
행 정 비(국고)		3,584	928	928	928	928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 농가당 평균지원금액 : 236천원 (32,151,421천원/136천농가)
 - 마을공동기금 평균조성비율 : 30%이상 전망
 - 30% 조성 1,281개마을, 30~50% : 115개, 51~80% : 19, 81~100% : 8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	농가당 평균지원액	농업인보조금지급실적/실지원농가수	천원	236	236	100
	마을공동기금 평균조성비율	평균조성비율	%	30	30	

4-4-1-0(계속)	1사1촌 운동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1사1촌운동을 내실 있게 지원하여 범국민적 운동으로 정착유도
- 1사1촌 자매결연이 기업체를 중심으로 사회각계로 확대되어 농업·농촌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 증진 및 도농간 교류 활성화 유도

2. 사업내용

- 사업시행시기 : 2004년 ~ 계속
- 주요추진 사항
 - 민간주도로 내실있게 추진
 - 관계기관 합동으로 T/F를 운영하여 1사1촌운동 발전전략 마련
 - 실태점검 강화 등 1사1촌 자매결연 내실화 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를 통한 범국민적 운동 추진
 -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사단법인화
- 홍보 및 마케팅, 유공자시상 등을 통한 도농상생 분위기 확산
 - 도농교류 활성화 및 참여를 위해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도농교류·우수마을 등 정부포상실시, 농촌체험행사·수기공모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우수사례집 제작·홍보로 국민적 참여 분위기 조성
- 다양한 형태의 자매결연 추진
 - 1사다촌, 다사1촌, 1학교1촌 등 다양한 교류 추진

- 도농교류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 확충
 - 농협주관으로 농촌마을 지도자 교육을 통한 지역역량강화
 - 농촌사랑지도자 교육원(농협대) 신설 운영
 - 농촌마을대표, 1사1촌 관련 기업·단체 및 도시소비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교육 (총 2만명, '06년도 1만명, '07년도 1만명)

3. 연차별 추진계획

- 1단계 : 교류성과 창출단계 (2006~2008)
 - 마을인프라구축, 교육 인적자원 육성, 농촌자원개발
- 2단계 : 교류성과 확산단계 (2008~2010)
 - 성공사례확산 및 농촌자생력 강화, 기업체 투자 유도
- 3단계 : 국민운동 정착단계 (2010년 이후)
 - 한국형 농촌발전모델정착, 운동혁신을 통한 범국민 지지와 참여 지속화

4. 성과목표 달성도

- 적극적인 홍보 및 사회적 동참분위기 조성으로 자매결연 실적 ('06.12월말 기준) 14,498건으로 목표 대비 31.8% 초과달성
 - 결연형태

구분	기업체	소비자 단체	사회·종 교단체	관공서	농협	기타	합계
자매결연	6,316	1,082	820	1,967	1,523	2,790	14,498
비율(%)	43.5%	7.5%	5.7%	13.6%	10.5%	19.2%	100

○ 추진기간별

* ('04.12월까지) 2,404건 → ('05.12월) 8,677→ ('06.12월) 14,498

○ 시도별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자매결연	14,498	3	297	186	390	206	309	351	1,498
비율(%)	100%	0.02%	2.05%	1.28%	2.69%	1.42%	2.13%	2.42%	10.33%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매결연	963	1,050	1,890	1,219	1,725	2,233	1,923	255
비율(%)	6.64%	7.24%	13.04%	8.41%	11.90%	15.40%	13.27%	1.76%

○ '06년(12월기준) 인적·물적 교류실적 - 1,854억원

* 농수산물직거래 : 974억원, 일손돕기: 341억원, 농촌체험: 204억원 등

※ 중앙부처 1사1촌 자매결연 현황

-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교육인적자원부, 과학기술부 등 30개 기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1사1촌 운동	자매결연체결 실적수	총 자매 결연체결수	건	11,000	14,498	132

(농림부 / 정주지원과)

1. 사업목표

- 농촌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유입촉진 등에 의한 농촌인구유지 및 지역활성화 도모
- '13년까지 도시민 2만명 유입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4 ~ 계속
- 사업지원대상 :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한 전국의 면지역
- 지원내용 :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지원
- 지원규모 : 20~29호 10억원, 30~49호 15억원, 50~74호 20억원, 75~99호 25억원, 100호이상 30억원
- 재원 및 사업주체 : 국고 80%, 지방비 20%,
- 사업주체 : 시·군, 농촌공사

3. 연차별 추진계획

구 분	계	'05까지	'06	'07~'13
사업량(개소)	300	30	25	245
사업비(국고,억원)	2,304	277	260	1,767

4. 성과목표 달성도

- '06년 전원마을조성사업지구의 도시민 입주비율은 84%로서 목표 50%를 초과달성함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전원마을조성 사업	도시민 입주비율	총 도시민 입주비율	%	50	84	168

4-4-3-1(계속)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	--------------------------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및 사회적 붐 조성
- 도시민과 농촌 주민간 상호이해 증진 및 도농교류활성화 도모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이후 (계속)
- 재원형태 : 국고 100%
- 사업내용 : 농림어업 유관기관 합동으로 '여름휴가 농산어촌고향에서 보내기 캠페인' 전개 및 다양한 홍보 추진
 - 도농교류에 대한 사회적 붐 조성 및 새로운 여가·휴가 문화의 정착계기 마련
- 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일반인 대상으로 나의농촌문화체험기 공모전 개최
 - 농촌을 방문하고 이해하며, 농업·농촌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인식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도농교류 농촌사랑 정부포상」의 정례화 및 홍보
 - 1사1촌 운동,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 유공이 있는 기업·단체 및 개인을 선정·포상하여 자긍심 고취 및 도농교류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제고
- 농촌마을 가꾸기 경지대회 개최로 도시민 유치의 기반조성
- 지자체 및 마을주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 농업인과 도시민간 상호교류를 통해 이해증진과 교류 활성화 계기 마련을 위한 농·소·정 협력사업 추진
 - 소비자단체, 여성농업인단체 등 주관으로 도시소비자, 청소년 등의 농업·농촌현장체험 등 추진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국비					지방비 또는 자부담	기 타	합계
	농특세	균특	일반회계	기금등	소계			
2006	1,200	-	-	-	1,200	-	-	1,200
2007	1,922	-	-	-	1,922	-	-	1,922
(증△감)	722	-	-	-	722	-	-	722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구 분	'06목표	'06실적	비고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개수(천명)	1,266	1,343	6.0%초과
-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억원)	140	183	30.7% "

* 다양한 계획홍보 및 합동캠페인을 통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도하고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을 통한 목표치를 초과 달성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객수	총 방문객수	천명	1,266	1,343	106

(농림부 / 농촌지역개발과)

1. 사업목표

○ 사업목표

- 도시지역의 자원과 활력을 농촌에 유입시켜 농외소득의 증대와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농촌을 활성화함으로써 도·농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관광·투자유치 촉진을 위한 기구 설치·운영

* 「농촌투자유치센터」를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04.5월)

○ 사업추진 근거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 제37조 (도·농교류센터 설치·운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교류 확대 및 농산어촌 투자유치 활성화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2. 사업내용

○ 사업기간 : '03년이후 (계속)

○ 사업비('06) : 855백만원 (도농교류센터 운영경비)

○ 추진경위

- '03. 1 : 「농촌투자유치센터」 개소 (한국농촌공사 운영)
- '04. 4 : 「농촌투자유치센터」에서 「도·농교류센터」로 확대·개편 운영
- '04. 5 : 「도·농교류센터」 개소식 및 자매결연식 개최

○ 사업 방향

- 도시민과 도시자본의 농촌유입 촉진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체계적으로 전담 지원
 - 농촌체험관광 홍보·마케팅, 농촌체험마을 사후관리, 교육·훈련, 도시자본 투자유치 정보제공, 제도개선 등 도농교류 및 농촌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

○ 추진체계

- 사업시행주체 : 한국농촌공사 (도농복합추진단 도농교류센터)
- 사업추진절차
 -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시행계획 승인(농림부 → 한국농촌공사) → 사업시행 및 사후보고(한국농촌공사 → 농림부) → 사업비 검정(농림부)

○ 주요 사업내용

-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태 평가, 1인1촌 전문가 컨설팅 추진 등 마을 사후관리
- 도농교류 참여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마케팅 지원
 - 농촌체험행사, 그린투어 포럼, 올해의 도농교류상 시상, 농촌마을가꾸기경진대회, 농촌휴가캠페인, 농산어촌체험박람회 등 다양한 이벤트 추진
- 기업체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 등 1사1촌 운동 추진 지원
-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을 주도해 나갈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프로그램 운영
- 투자유치 대상사업 발굴·지원, 정보제공 등 도시자본의 농촌투자유치 촉진
- 투자유치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지원

3. 연차별 추진계획

○ 연차별 투융자계획(국고)

(단위 : 억원)

구 분	5개년('05~'09) 계획					
	'05	'06	'07	'08	'09	소계
도농교류센터 운영(억원)	3	9	9	9	10	40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구 분	'06목표	'06실적	비고
- 녹색농촌체험마을 방문개수(천명)	1,266	1,343	6.0%초과
- 녹색농촌체험마을 매출액(억원)	140	183	30.7% “
- 1사1촌 자매결연마을 매출액(억원)	545	1,395	156% “

* 다양한 계획홍보 및 합동캠페인을 통한 도시민의 여가수요를 농촌으로 유치하고,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설립 지원을 통한 1사1촌 자매결연 확대 및 우수사례홍보 등을 통하여 목표대비 실적이 크게 초과 달성되었음.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 (A)	실적 (B)	B/A
도농교류센터 운영	자매결연 매출액	1사1촌자매결연 매출액	억원	545	1,395	156

(농림부 / 농촌정책과)

1. 사업목표

-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1사1촌자매결연 및 농산어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도농교류와 관련된 제도적 미비사항을 해소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도농교류활성화 지원가능

2. 사업내용

-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 등 도농교류 사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마련
 - 농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대한 지정제 도입 및 식품위생법 등 타법에 대한 특례근거 마련 등
- 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활성화 지원, 도농교류관련 전문인력 양성, 도농교류지원기구 활동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초·중등 학생들의 농촌체험교육활성화, 도농교류확인서 발급제도 마련, 농촌체험지도사·마을해설사 자격제도 도입 등

3. 연차별 추진계획

- 입법추진주체 : 농림부

- 입법계획 : 법안장관방침('06.12)→관계부처협의(06.12)→입법예고('07.2)→규제 및 법제처 심사('07.3~4)→국회제출('07.4)

4. 성과목표 달성도

- 성과지표의 목표치 대비 달성정도 등

※ 성과지표가 제시되지 않은 과제는 정책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시 및 평가


사 업 명	성과지표	측정기준	단위	'06목표(A)	실적(B)	B/A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측정 불가

〈 참 고 〉

2006년도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점검·평가 결과

2007. 4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

 농 림 부

- 목 차 -

I. 추진배경 및 점검·평가개요 247

II. '06년도 추진실적 평가 249

III. 점검·평가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260

< 참고자료 >

1. 점검·평가 위원 263

2. 사업별 평가결과 264

3. 지방이양사업현황 268

I. 추진배경 및 점검·평가 개요

< 추진배경 >

- 삶의질 기본계획상의 각 부처별 사업들의 효과적 추진과 업무개선을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한 점검·평가체계 구축이 필요

※ 삶의질향상 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실무위원회는 연도별 시행 계획을 점검·평가 할 수 있도록 규정

- 실무위원회는 별도 점검·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 ('05.12.19)

- 아울러, 평가기준, 일정, 방법 등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함

- 점검·평가단은 실무위원회에서 정한 기본방향에 따라 세부적인 평가지침을 정하고 이를 각 부처에 통보 ('06.12)

1. 평가기관

- 관련부처로부터 추천을 받아 농어업인 단체,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점검·평가단 구성 (점검·평가단 위원 명단 : <참고 1>)
- 점검·평가단은 총괄,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의 5개 분과 21명으로 구성 (단장 : 중앙대 하성규 교수)

2. 평가대상 사업

- 15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행한 '06년도 삶의질 향상 시행 계획상의 109개 사업중 108개 사업에 대해서 평가
- ※ 미평가 사업 : 농어촌 도로정비 (지방이양사업, 행자부 총괄)

3. 평가기준 및 방법

□ 사업추진 단계별 평가기준을 설정

- 계획단계 : 사업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절차적 합리성
- 집행단계 : 사업추진체계의 적절성, 중간점검 결과 반영, 자원조달 등
- 성과단계 : 삶의 질 향상 기여도, 성과지표 달성도 등

□ 평가위원은 각 부처에서 작성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검토하여 평가기준과의 부합여부를 판단하여 평가 실시

- 부처별 의견을 듣고, 전체회의에서 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

□ 분야별로 사업을 평가점수 순서에 따라 우수(상위 20%), 보통(60%), 부진(하위 20%)의 등급 부여 [분야별 상대평가]

- 개별사업별로 중요도에 따라 주요사업(사업비 300억원이상, 영향력이 큰 사업 등)과 기타사업으로 구분

4. 평가경과

① 점검·평가지침을 작성, 평가단에서 심의·확정

- 각 부처에 점검·평가지침 통보 ('06.12.29)

② 각 부처에서 소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보고서 작성, 사무국 (농림부 농촌정책국)에 제출 (2월)

③ 사업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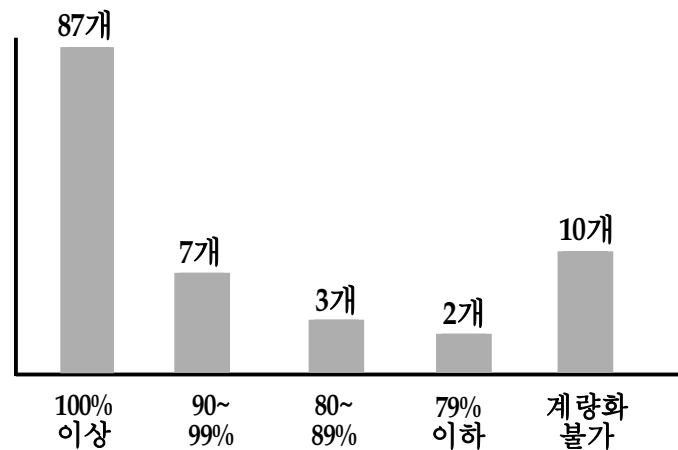
- 사업평가 및 평가보고서 작성 (2~4월)

II. '06년도 추진실적 평가

1. 총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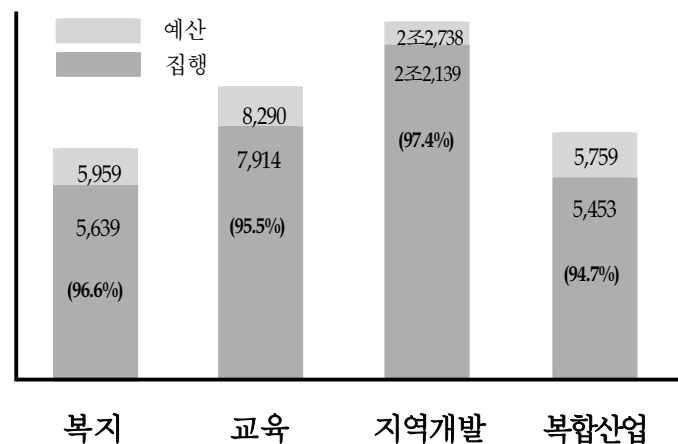
< 실적>

- 성과지표가 제시된 99개 사업 중 **94개 사업(95%)**이 사업목표의 **90%이상**을 달성하는 등 대부분의 사업이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 총 사업비 4조 2,746억원 중 **4조 1,145억원 집행 (96.2%)**

- 복지 : 예산 5,959억원 중 5,639억원 집행 (96.6%)
- 교육 : 예산 8,290억원 중 7,914억원 집행 (95.5%)
- 지역개발 : 예산 2조 2,738억원 중 2조 2,139억원 집행 (97.4%)
- 복합산업 : 예산 5,759억원 중 5,453억원 집행 (94.7%)



< 평 가 >

- 삶의 질 향상대책에 반영된 부처별 다양한 사업들의 잘된 점과 개선할 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향후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사업별 확대, 축소의 방향을 제시
- 108개 개별사업 중 대부분의 사업이 성과목표를 달성하는 등 사업들이 착실하게 진행되었으나
 - 유사한 사업간에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음
 -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조정기능을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부처별 사업을 종합화하고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사업별 평가는 있으나 개별 사업이 구체적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측정이 어려움
 - 분야별로 개별 사업의 삶의 질 영향도를 측정하고, 매년 얼마만큼 삶의 질이 향상되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개발 필요
-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에 따라 평가방법, 평가 항목, 배점 등을 달리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연구사업, 제도개선 사업, 사업 준비단계, 소규모 시범사업 등은 기존의 사업과 비교해서 낮은 평가를 받아 부진으로 인식되는 문제

2. 분야별 평가

① 복지분야 (25개 사업)

< 실적>

-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료 경감률 확대('05 : 40% → '06 : 50) 등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 공공보건기관의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217개소 신증축), 건강관리실
설치(158개소) 등으로 농어촌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에 기여
- 저출산 사회에 대비하여 농어촌 주민의 영유아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영유아양육비 지원 및 보육시설 설치 확대
 -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33천명), 농어촌 만5세아 무상
보육 지원 (36천명)

<평가>

- 대부분의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어 삶의질 향상에 기여
 - 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사업추진이 양호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일정이 지연되거나 계획한
대로 사업을 마무리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일부 연구사업 등의 경우 예산 적정확보 등의 이유로 유사한 사업을
별개의 신규사업으로 나누어 별도로 각각 추진함으로써 효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교육분야 (25개 사업)

< 실적>

- 농어촌 대입특별전형(4%), 우수고교 집중육성(44개교), 소규모학교 학교군 구성운영(20개) 등으로 농어촌 학생의 대학진학기회 확대 및 중등교육 단계에서의 도시 유출 방지
-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41천명), 고교생 학자금 지원(98천명),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융자(25천명) 등으로 교육비 부담 경감
- 방과후 교육활동, 방학캠프 운영지원(119천명)를 통해 농어촌 학생에게 다양한 경험 및 교육기회 부여

<평가>

- 대부분의 사업이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에 많은 기여를 하였으나
 -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이나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사업은 교육과정 평가원과 같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임
- '05년도에 비해 농산어촌 교육개선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이 증가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등의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굴되어 농산어촌형 교육으로 정착되도록 노력 필요

③ 지역개발 평가 (32개 사업)

< 실적>

- 농촌마을 종합개발(56개 권역 착수, 40개 권역 기본계획), 소도읍 육성(66개읍 지원, 14개읍 완료) 등을 통해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 기반조성을 종합적으로 추진
-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상수도 보급률 : 37.7%), 면단위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 35.8%) 등으로 농어촌 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를 점진적으로 개선
- 농어촌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조성(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 99%) 등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평가>

- 유사·중복 사업의 부처간 이관·조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많은 사업에서 자체적인 평가·환류체계가 개선되었으며, 수요자의 정책사업 참여가 의견수렴·만족도 조사·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확대
- 각종 사업에 대한 통합·조정이 미흡하다는 점과 대부분의 사업이 투입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파악이 어렵고, 사회적으로 중요하고 수요가 많은 사업임에도 예산배정이 적은 경우가 있고, 오래된 사업의 경우 시대적 여건과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4] 복합산업 평가 (26개 사업)

< 실적>

- 녹색농촌 체험마을(67개소), 농촌전통테마마을(31개소), 어촌체험마을(18개소) 조성 등을 통해 농산어촌 관광 인프라 구축
- 경관보전직불제(470ha), 생태숲 조성(21개소) 등을 통해 농촌공간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제고
- 1사1촌운동을 통해 민간주도의 도농교류 기반을 구축
 - 자매결연 실적 : 14,498건, 교류액 : 1,854억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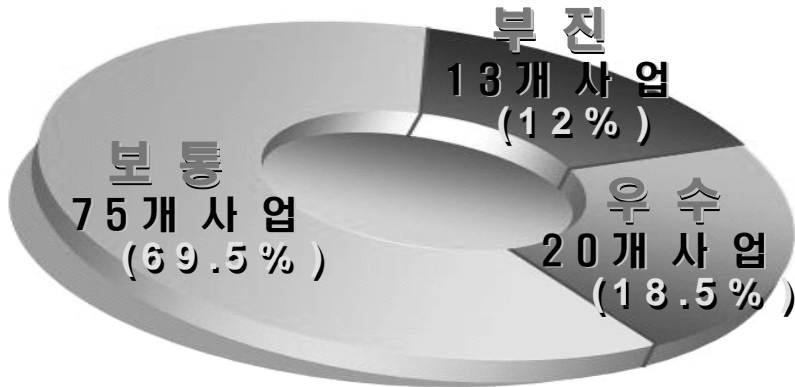
- 자체 평가보고서의 질적 차이가 심하고 제출시기도 상이하여 일관되고 종합적인 평가를 하는데 어려움 존재
- 복합산업 분과 전체로서의 사업 및 평가의 체계화가 필요함
 - 향토산업 시책, 경관 시책, 관광마을 시책, 주택 시책 등 중분류의 내용별 시책에 따라 사업을 통폐합하여 운영하거나 평가자료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경관보전을 위한 신규사업이나 주민의 소득 창출과 직결되는 사업 등 신규로 개발되거나 향후 강화가 필요한 사업영역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획이 필요하다고 보임

3. 개별사업별 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개별사업을 우수, 보통, 부진으로 구분

○ 우수 20개 사업(18.5%), 보통 75개(69.5%), 부진 13개(12%)

[전체]



□ 사업별 평가결과(평가등급 보통은 참고2 참조)

평가등급	분야별	사업명
우수 (20)	복지기반확충 (5)	국민연금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제도, 영유아 양육지원,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교육여건개선 (5)	우수고교 집중육성, 한국농업전문학교개편,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초중고학생 급식비지원, 학교군 구성운영
	지역개발촉진 (5)	농촌지역개발 우수인력육성, 소하천정비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환경친화형농촌주거모델보급, 농촌마을종합 개발사업
	복합산업활성화 (5)	경관보전직불제, 향토문화관광축제,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 1사1촌운동
부진 (13)	복지기반확충 (4)	안전영농구역 조성지원,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여성농업인센터, 취약농가 인력지원
	교육여건개선 (3)	농산어촌커뮤니티센터, 교육정보화인프라 구축, 적정 규모학교
	지역개발촉진 (3)	도서종합개발사업, 생활친화적 문화공간조성사업, 농촌 폐비닐 수거비지원
	복합산업활성화 (3)	자생식물식재 및 생태숲조성, 향토자원 소득화, 도농교류 촉진법 제정

□ 우수사업

- 농어업인 국민연금제도 개선,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 당초 계획대로 수행되었고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 농어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유지함
-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확충
 - 농어촌 보건기관의 시설 및 장비 현대화로 농어촌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
-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 저소득층의 만 5세아 아동의 보육을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보육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비 부담경감 차원에서 농어업인들에게 실질적인 소득대체 효과
- 학교군 구성 운영
 - 규모가 적어 수행할 수 없는 집단활동, 공동활동을 가능하게 하고, 시설과 인력활용을 극대화
- 농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리더십 육성과정, 특화과정, 동기화 과정, 특별과정 등 구체적이며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하게 수립, 사업성과 관리 및 달성도 측면에서도 양호

○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 개별 농가에게 직접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 효과를 올릴 수 있음

○ **소하천 정비사업**

- 지자체의 재정상황, 과년도 집행실적, 재난관리평가 등 제반 항목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기준을 설정함

○ **소도읍육성사업**

- “상향식공모제”, “선택과 집중” 방식, “육성협약제도”의 도입은 최근 각종 농어촌·낙후지역개발사업에서 벤치마킹하고 있음

○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 대상지 선정과정이 비교적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참여가 매우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문가의 참여도 활발한 편임

○ **1사1촌 운동**

- 국민 전체적으로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났고 자매결연 실적도 매우 높음.

○ **경관보전 직불제**

- 기존의 농정 흐름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의미있는 사업으로서, 추진 실적 역시 큰 무리없이 진행됨

-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농촌전통테마마을 및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 지자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고 만족도가 높으며,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참여를 통하여 성과를 가시화

□ 부진사업

-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 사업계획시 농작업 안전 관련 타 사업들과 통합하여 추진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 기존의 농촌정보화사업이나 농산물 전자상거래 사업과의 연계 또는 통합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 지방 사업으로 이양되어 자치단체별 재정여건에 따라 사업 목표가 현저히 미달함
- 취약농가 인력지원
 - 2006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이기는 하나 영농도우미 분야는 목표의 50%를 약간 웃도는 성과를 얻는데 그침

○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사업

- 현재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결과만 받은 상태로 실행계획과 집행, 효과를 평가하기 어려움

○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 폐비닐의 상당량이 수거되지 못하여 토양오염, 경관훼손 등을 야기하고 있으며 수거단가 인상과 사업물량 확대 등을 통해 수거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음

○ 도서종합개발사업

- 어촌종합개발사업과 사업 대상지 및 내용면에서 유사하여 두 사업간의 관계설정이 요구됨

○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 사업이 문화관광부, 전국문화원연합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중앙주도로 추진되며 지자체나 지방 문화원은 소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도농 교류 촉진법 제정

-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사업 추진 목표와 절차, 성과 등의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

Ⅲ. 점검·평가의 문제점 및 향후과제

- ◇ 점검·평가의 지침 개정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 ◇ 여러 부처에 관련되는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반영여부 검토

1. 점검·평가의 문제점

- 자체 점검평가 보고서 위주의 서면평가로 심층평가에 한계
 - 매년 4월 위원회 보고를 위해서는 점검·평가 기간이 촉박하므로 부처에서 작성한 자체 점검평가 보고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나 부처의 자체 점검평가 보고서가 부실한 경우가 많음
- 전년도 평가의 개선요구 사항의 반영 여부를 알 수 있는 평가 항목 부재
 -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조치사항 및 개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하위 20%에 위치하는 사업을 일률적으로 부진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실제 사업의 성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하위 20%를 부진사업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향후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2. 향후 과제

□ 사무국 및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기능 강화

- 삶의질향상위원회의 효과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무국의 기능 강화
- 삶의질향상위원회의 실질적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부처별 사업을 종합화하고 연계시킬 수 있도록 조치

□ 삶의 질 향상 대책 보완

- 현재의 예산으로는 농산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기에 부족하므로 예산 규모를 대폭 확대해야 함
- 도시민 농어촌 유치 지원, 외국인 부인 및 자녀교육 문제, 한·미 FTA 등 새롭게 부각되는 문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신규사업을 발굴하되, 오래되어 농산어촌 현실에 맞지 않게 된 정책들은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음

□ 점검·평가시스템 보완

- 상시 평가 체제가 확립될 필요가 있음
- 각 부처의 사업 담당자들이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위원들에게 사전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대한 점검·평가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의 중요성, 난이도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사업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함
 - 현재는 사업예산 또는 삶의 질 효과에 따라 주요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사업의 난이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함
- 본 사업 이전의 준비단계에 있는 사업, 소규모 연구를 위한 사업, 시범사업, 제도·법령 제정을 위한 사업 등 사업 특성에 적합하게 평가지침 수정이 필요함

◇ 삶의질향상 시행계획 점검·평가단 운영규정 제3조(기능)

- 평가단은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가지침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농림어업인 삶의질향상 대책 점검·평가와 관련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 위원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참고 1 >

점검·평가 위원 명단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직위	성별	분 야	추천부처
단장	하성규	중앙대학교 지역계획학과 교수	남	학 계	농림부
복지	탁명구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남	생산자 단체	농림부
	최경환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	연구기관	농림부
	조재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의료연구실장	남	연구기관	복지부
	홍미령	경희대 교수 노인문제연구소장	여	학계	복지부
	원향례	상지대학교 교수	여	학계	농진청
교육	김성아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사무국장	여	생산자 단체	농림부
	류방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여	연구기관	교육부
	임연기	공주대 교육학과 교수	남	학계	교육부
	최준렬	우석대 교육학과 교수	남	학계	교육부
	강일국	목포대 교육학과 교수	남	학계	해수부
지역 개발	홍준근	농민단체협의회 사무총장	남	생산자 단체	농림부
	김정연	충남발전연구원 실장	남	연구기관	행자부
	박시현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남	연구기관	농림부
	손진식	국민대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남	학계	환경부
	임경수	(주) 이장 대표	남	민간업체	문화부
복합 산업	임정수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총장	남	생산자 단체	해수부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여	연구기관	농림부
	김성진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팀장	남	연구기관	문화부
	최수명	전남대 생물산업공학과 교수	남	학계	농림부
	오현석	지역아카데미 대표	남	민간업체	농진청

< 참고 2 >

사 업 별 평 가 결 과

(복지분야)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1-1-1-0	농어업인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	주요	90.60	95.13	2/2	우수
1-1-2-0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제도 개선	주요	91.60	96.18	1/1	우수
1-1-3-0	농작업 재해보상 지원	기타	89.60	89.60	6/9	보통
1-1-4-0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지원	기타	88.40	88.40	10/12	보통
1-1-5-0	농어업인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기타	90.20	90.20	5/8	보통
1-2-1-1	농산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기타	88.20	88.20	11/13	보통
1-2-1-2	농산어촌 공공보건기관 기반 확충	주요	89.20	93.66	7/4	우수
1-2-1-3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 육성	주요	88.20	92.61	11/6	보통
1-2-2-0	농업인 건강관리실 시설 및 장비확충	기타	87.00	87.00	16/17	보통
1-2-3-1	농작업재해 원인규명 및 농작업환경개선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2-3-2	농작업재해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2-3-3	안전영농구역 조성 지원사업	기타	84.80	84.80	25/25	부진
1-3-1-1	농산어촌 보육시설 확충	주요	85.00	89.25	24/10	보통
1-3-1-2	농산어촌 만5세아 무상보육 지원	주요	88.60	93.03	8/5	우수
1-3-1-3	농어업인의 영유아 양육 지원	주요	90.40	94.92	3/3	우수
1-3-2-0	여성농업인센터 설치확대 및 내실화	기타	85.60	85.60	22/23	부진
1-3-3-1	농가도우미 지원 확대	기타	87.00	87.00	16/17	보통
1-3-3-2	취약농가 인력지원(사고·고령농가 지원)	기타	85.80	85.80	21/22	부진
1-3-5-1	여성농업인 창업 지원	기타	86.40	86.40	18/19	보통
1-3-5-2	생산제품 품질향상 지원	기타	88.60	88.60	8/11	보통
1-3-5-3	전자상거래 우먼팜 유지관리	기타	85.20	85.20	23/24	부진
1-4-1-1	농산어촌 재가노인복지센터 확충	기타	88.20	88.20	11/13	보통
1-4-2-3	노인봉사원 활동프로그램 개발	기타	87.60	87.60	14/15	보통
1-4-2-4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기타	90.40	90.40	3/7	보통
1-4-3-0	경영이양직불제 확대	기타	87.20	87.20	15/16	보통
평균	25개 사업		87.86	89.11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교육분야)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2-1-1-1	농산어촌 우수고교 집중육성	주요	96.0	100	1/1	우수
2-1-1-3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기타	84.0	84.0	19/19	보통
2-1-1-4	한국농업전문학교 개편 운영	주요	95.0	99.8	3/2	우수
2-1-2-1	학교군 구성 운영	기타	96.0	96.0	1/4	우수
2-1-2-6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기타	80.0	80.0	23/24	부진
2-1-3-1	복식수업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기타	88.0	88.0	14/15	보통
2-1-3-2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보급	기타	91.0	91.0	9/11	보통
2-1-3-3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배치	주요	90.5	95.0	11/6	보통
2-1-3-4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기타	92.0	92.0	7/10	보통
2-1-3-5	도시문화체험학습(방학캠프)운영지원	기타	89.0	89.0	13/14	보통
2-1-4-1	농산어촌 공립병설유치원 증설	기타	93.0	93.0	6/9	보통
2-1-4-2	농산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주요	85.0	89.3	17/13	보통
2-2-1-0	농업인 고교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주요	79.0	83.0	24/21	보통
2-2-2-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지원	주요	91.0	95.6	9/5	우수
2-2-2-2	농과계 대학생 학자금 보조 지원	기타	84.0	84.0	19/19	보통
2-2-3-1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주요	92.0	96.6	7/3	우수
2-2-3-2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기타	90.0	90.0	12/12	보통
2-2-3-2	자영 수산계고 급식비 지원	기타	87.0	87.0	15/16	보통
2-2-4-2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지원	기타	94.0	94.0	5/8	보통
2-3-1-1	교육감 추천 교대 신·편입학제 확대	기타	95.0	95.0	3/6	보통
2-3-1-2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제 확대	기타	86.0	86.0	16/17	보통
2-3-2-1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 및 복식수업수당	기타	83.0	83.0	21/21	보통
2-3-2-2	교원 사택 확충 및 노후시설 현대화	기타	83.0	83.0	21/21	보통
2-3-3-2	학교 도서관 및 장서 확충	기타	85.0	85.0	17/18	보통
2-3-4-0	교육정보화 인프라 구축	기타	74.0	74.0	25/25	부진
2-3-6-0	농산어촌 Community Center	기타	50.0	50.0	26/26	부진
평 균	26개 사업		86.63	87.82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지역개발)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 점수	환산 점수	순위*	평가 등급
3-1-1-0	농촌 지역개발 전문인력 육성	주요	93.0	97.6	2/1	우수
3-2-1-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주요	90.0	94.5	7/5	우수
3-2-1-2	어촌종합개발사업	주요	80.0	84.0	26/19	보통
3-2-1-3	산촌종합개발사업	기타	82.0	82.0	21/23	보통
3-2-2-1	소도읍육성사업	주요	92.0	96.6	3/2	우수
3-2-2-2	면소재지 활력증진사업	주요	86.0	90.3	13/9	보통
3-3-1-1	농산어촌 주거환경 개선	주요	83.0	87.2	20/15	보통
3-3-1-2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보급	기타	95.0	95.0	1/4	우수
3-3-2-1	면단위 생활용수 개발	주요	86.0	90.3	13/9	보통
3-3-2-2	마을단위 생활용수 개발	주요	86.0	90.3	13/9	보통
3-3-2-3	면단위 하수도사업	주요	84.0	88.2	16/14	보통
3-3-2-4	소하천 정비사업	주요	92.0	96.6	3/2	우수
3-3-2-5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	주요	81.0	85.0	24/18	보통
3-3-2-6	농촌폐비닐 수거비 지원	기타	79.0	79.0	28/30	부진
3-3-3-2	교통서비스 강화	기타	82.0	82.0	21/23	보통
3-3-3-3	국고여객선 건조	기타	82.0	82.0	21/23	보통
3-3-4-1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	주요	76.0	79.8	31/29	보통
3-3-4-2	오지종합개발사업	주요	77.0	80.8	30/27	보통
3-3-4-3	도서종합개발사업	주요	71.0	74.5	32/32	부진
3-3-5-1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기타	92.0	92.0	3/6	보통
3-3-5-3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기타	91.0	91.0	6/8	보통
3-3-5-4	생활친화적 문화공간 조성사업	기타	79.0	79.0	28/30	부진
3-3-5-5	지방문화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기타	87.0	87.0	10/16	보통
3-3-5-6	테마과학관, 사이언스 샵 건설	기타	81.0	81.0	24/26	보통
3-3-5-7	산림박물관 건립	기타	90.0	90.0	7/12	보통
3-3-6-1	정보화마을 조성	기타	84.0	84.0	16/19	보통
3-3-6-2	초고속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주요	87.0	91.4	10/7	보통
3-3-6-3	정보화인프라 구축	기타	84.0	84.0	18/19	보통
3-3-6-4	디지털 어촌 구축사업	기타	80.0	80.0	26/28	보통
3-3-7-1	농업인 정보화교육	기타	87.0	87.0	10/16	보통
3-3-7-2	농업·농촌정보화 선도자 선정	기타	84.0	84.0	16/19	보통
3-3-7-3	농어업 관련 정보제공 확대	기타	89.0	89.0	9/13	보통
평 균	32개 사업		84.75	86.72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복합산업)

과제 번호	사 업 명	중요도	평가점수	환산점수	순위*	평가등급
4-1-1-1	향토자원의 조사·발굴 및 DB구축	기타	79.0	79.0	18/20	보통
4-1-1-2	향토자원 소득화 사업	기타	75.0	75.0	25/25	부진
4-1-2-0	지역부존자원을 활용한 농공단지 조성	기타	84.0	84.0	13/13	보통
4-1-3-0	농어업인 고용촉진 훈련	기타	80.0	80.0	17/19	보통
4-2-1-1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기타	91.0	91.0	3/3	우수
4-2-1-2	농촌전통테마마을 조성	기타	91.0	91.0	3/3	우수
4-2-1-3	문화역시마을 조성	기타	89.0	89.0	7/8	보통
4-2-1-4	어촌체험마을 조성	기타	84.0	84.0	13/13	보통
4-2-1-5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	기타	83.0	83.0	15/15	보통
4-2-1-6	산림휴양공간 조성 및 수목원 조성	주요	78.0	81.9	22/16	보통
4-2-1-7	문화 및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주요	77.0	80.9	23/18	보통
4-2-2-1	농산어촌 관광박람회 개최	기타	87.0	87.0	9/10	보통
4-2-2-2	농산어촌 체험관광 홍보	기타	85.0	85.0	10/11	보통
4-2-3-0	중앙·지방·민간 네트워크 구축 등	기타	88.0	88.0	8/9	보통
4-2-4-0	향토문화 관광축제 육성	기타	92.0	92.0	1/1	우수
4-3-1-0	경관보전 직불제	기타	92.0	92.0	1/1	우수
4-3-2-2	농촌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기타	85.0	85.0	10/11	보통
4-3-3-0	농산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기타	79.0	79.0	18/20	보통
4-3-4-0	자생식물 식재 및 생태숲 조성	기타	69.0	69.0	26/26	부진
4-3-5-0	경관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기타	79.0	79.0	18/20	보통
4-3-6-1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기타	90.0	90.0	6/6	보통
4-4-1-0	1서촌 운동	기타	91.0	91.0	3/3	우수
4-4-2-0	전원마을 조성	주요	85.0	89.3	10/7	보통
4-4-3-1	도농교류 참여 프로그램 및 마케팅 확대	기타	81.0	81.0	16/17	보통
4-4-3-2	도농교류센터 운영	기타	79.0	79.0	18/20	보통
4-4-4-0	도농교류촉진법 제정	기타	77.0	77.0	23/24	부진
평 균	26개 사업		83.46	83.92		

* 순위는 '평가점수 순위/환산점수 순위'임

< 참고 3 >

지방이양 예산사업 현황

(단위 : 억원)

분 야	사 업 명	사업비 (’06년)	총괄부처
복 지	농어가 도우미 지원 확대	32	농림부
	여성농어업인센터 설치 확대 및 내실화	51	농림부
교 육	농산어촌 실업계고 특성화·내실화	125	교육부
	적정규모 학교 육성 시범지역 지원	6	교육부
	방과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675	교육부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466	교육부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874	농림부
	자영농·수산계고 급식비	20	농림/해수부
	교육정보화 인프라 보급	183	교육부
	지역개발	교통서비스 강화	231
	농어촌 도로정비	3,961	행자부